



www.seoul.go.kr  
제 3204호  
2013. 11. 14.(목)

---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393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

제393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

제3937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 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

제3938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 ..... 38

제3939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1

제394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입법예고]

제2013-1756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4

제2013-176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6

◆ 고 시

제2013-3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 47

제2013-37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녹지,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1

제2013-377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5

제2013-378호 도시관리계획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58

제2013-379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62

제2013-381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43

◆ 공 고

제2013-1758호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162

제2013-175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163

제2013-1763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 163

제2013-1764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164

제2013-1768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65

제2013-176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166

제2013-1770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 167

제2013-1772호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위반업자 처분 공시송달 공고 ..... 169

제2013-177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 170  
 제2013-178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171  
 제2013-178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172  
 제2013-1782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173  
 제2013-178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173

**◆ 구 고 시**

제2013-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실시계획 인가 고시  
 (노원구) ..... 175  
 제2013-1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초구) ..... 184  
 제2013-10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강남구) ..... 185  
 제2013-10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186

**◆ 구 공 고**

제2013-9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중랑구) ... 188  
 제2013-104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성북구) ..... 189  
 제2013-13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강서구) ..... 224  
 제2013-116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225

**◆ 사업소고시**

제2013-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28  
 제2013-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228

**◆ 사업소공고**

제2013-6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마포소방서) ..... 229  
 제2013-17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구로소방서) ..... 229  
 제2013-18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구로소방서) ..... 230  
 제2013-2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 230  
 제2013-2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서초소방서) ..... 230  
 제2013-2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송파소방서) ..... 231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393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3년 11월 14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및 접수)** 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별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 1. 사업별 관련분야 전문가
- 2. 주민대표 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3. 사업별 관련업무 공무원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별 선정 시기,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지)** ① 사업 부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내용 등을 첨부하여 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사업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횟수 제한)**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간지원 사업 : 5년 5회 이내
- 2. 활동지원 사업 : 3년 3회 이내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유사한 사업은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간지원 사업이란 사업 중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중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의 정보공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례전파 등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주민모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1. 모임명
- 2.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3. 활동내용
- 4. 대표자명
- 5. 주요사업 계획 등

**제7조(사업비 등의 집행)** 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 및 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등 표준절차 내용을 법규로 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선정심의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문가,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함(안 제3조)

- 나. 사업 부서장은 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내용 등을 첨부하여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고, 심의회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안 제4조)
- 다.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마을공동체 사례전파 등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은 주민모임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93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13.8.1.)되어 개정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련 당연직위원인 공무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의 의결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공무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의 의결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4항 후단)

나.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규정  
과 공무원 위원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937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 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2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  
호”로 한다.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조례 제5조”를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례 제7조”를  
“조례 제5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비치”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5조제2항”를 “조례 제4  
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월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한  
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조례 제7조제1항”을 “조례 제5조제1항”으로, “별표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정보별 세부 공표대상업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정보통신망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  
조제4호”로 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하고, 제4장(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을 제3장(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조례 제11조”를 “조례 제7조”로 한다.

제5장(제20조)을 제4장(제17조)으로 하고, 제4장(중전의 제5장)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을 “기타 운영사항”으로 하며, 제4장(중전의 제5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을 상·하반기별로 점검·평가하며, 이를 위한 평가항목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를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주요 업무계획	각실국 투자기관 출연기관	연1회	2월	자료첨부 (PDF) 또는 홈페이지링크 (시본청 외)
2 서울특별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 중간단계의 안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료첨부 (PDF)
3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기금) 예산서	예산 담당관	연1회	3월	홈페이지 링크
4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기금) 결산서	재무과	연1회	7월	홈페이지 링크
5 투자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투자기관	연1회	4월	홈페이지 링크
6 투자기관 세입세출 결산서	투자기관	연1회	결산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홈페이지 링크
7 출연기관 세입세출 예산서	출연기관	연1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홈페이지 링크
8 출연기관 세입세출 결산서	출연기관	연1회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홈페이지 링크
9. 재정현황	재정 담당관	연1회	8월	자료첨부 (PDF)
10.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재정 담당관	연1회	8월	홈페이지 링크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1. 서울특별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 총무과 주무부서 및 해당부서	월1회	매월 10일 이내	자료첨부 (PDF) · 홈페이지 링크 (시본청 외)
12.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해당부서	수시	계획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13.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정보공개정책과	연1회	제작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링크
	평가담당관	연1회	제작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링크
14.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과 계약에 따른 예산과목별 집행내역	재무과	월1회	계약체결이 후 익월 10일 이내	홈페이지 링크 또는 자료첨부 (PDF)
15. 행정심판재결 결과	법무담당관	월2회	재결후 3일 이내	자료첨부 (PDF)
16.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세제과	월1회	개최후 7일 이내	홈페이지 링크
17.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공청회개최 일부터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18. 민원처리업무 및 정보공개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시민봉사담당관	수시	제작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정보공개정책과	연1회	제작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9. 학술용역결과	조직담당관	수시	발간후 45일 이내	자료첨부 (PDF)
20. 기타 용역결과	해당실국	수시	종료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2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해당부서	수시	회의개최후 7일 이내	자료첨부 (PDF)
22.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 관련 예산집행 현황	평가담당관	연1회	3월 중	자료첨부 (PDF)
23. 주요 시정제도	기획담당관	연2회	제작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24.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행정과	연1회	1월	자료첨부 (PDF)
25. 주요사업 시정백서	기획담당관	연2회	제작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26.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해당부서	수시	수시	자료첨부 (PDF)

조례 제5조 제2항 관련

1. 복지, 어르신 장애인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자치구 복지시설 현황	복지정책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지원현황	복지정책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희망온돌사업 추진계획	희망복지 지원과	반기별	6월, 10월	자료첨부(PDF)
희망온돌사업인센티브평가	희망복지 지원과	연 1회	5월	자료첨부(PDF)
희망온돌사업 경진대회	희망복지 지원과	연 1회	4월	자료첨부(PDF)
고령친화도시 추진계획	어르신복지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독거노인 지원현황	어르신복지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어르신복지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운영현황	어르신복지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장사시설 수급 계획	어르신복지과	5년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어르신 인구 통계	어르신복지과	반기별	1월, 7월	자료첨부(PDF)
어르신복지시설현황	어르신복지과	반기별	1월, 7월	자료첨부(PDF)
어르신 무료급식	어르신복지과	반기별	1월, 7월	자료첨부(PDF)
고령자 취업알선	어르신복지과	반기별	1월, 7월	자료첨부(PDF)
장애인관련 비영리단체 등록현황	장애인복지 정책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정책과	연 1회	평가결과 확정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장애인 관련 센터 운영현황	장애인자립 지원과	연 1회	결산보고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현황	장애인복지 정책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현황	장애인자립 지원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	장애인자립지원 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정책과	연1회	1월	자료첨부(PDF)
행복플러스 작업장 건립 추진현황	장애인복지 정책과	수시	건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노숙인 자립지원 종합대책 및 추진현황	자활지원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노숙인 일자리 지원현황	자활지원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노숙인 의료지원 및 무료진료소 운영현황	자활지원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노숙인 계절별 종합대책	자활지원과	반기별	7월, 11월	자료첨부(PDF)
노숙인 주거지원 현황	자활지원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노숙인 시설 운영현황	자활지원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자활지원계획	자활지원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지역 자활센터 운영현황	자활지원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2. 여성, 보육, 아동청소년, 외국인다문화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연 1회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여성정책 평가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연 1회	평가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실적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연 1회	확인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여성복지시설 현황 및 이용률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연 1회	2월	자료첨부(PDF)
다문화지원시설 현황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연 1회	2월	자료첨부(PDF)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아동청소년 담당관	연 1회	조사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청소년 시설 현황 및 이용률	아동청소년 담당관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어린이집 현황 및 정·현원 현황	출산육아 담당관	연 1회	조사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출산육아 담당관	연 1회	매년 3월	자료첨부(PDF)

3. 경제 일자리 분야

공포대상 행정정보(공포항목)	공 포 방 법			
	공포기관 및 부서	공포주기	공포시기	공포형태
경제단체 및 산업체 지원현황	경제정책과	연 2회	지원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서울형 특화산업 추진현황	경제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착한가게 지정, 운영현황	민생경제과	수시	지정 및 점검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농축산물의 가격 변동추이 및 현황	민생경제과	수시	수 시	홈페이지 링크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현황	경제정책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소상공인 지원과	1년	3월	자료첨부(PDF)
소비자 지원현황	민생경제과	연 1회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진현황	소상공인 지원과	월 1회	매월 20일	자료첨부(PDF)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투자유치과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외국인투자유치 추진현황	투자유치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DMC 사업 추진현황	투자유치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일자리정책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기술교육원 만족도조사결과	일자리정책과	연 1회	11월	자료첨부(PDF)
노동정책 지원계획	노동정책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사회적 경제 마스터플랜	사회적경제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협동조합 현황	사회적경제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소상공인 지원계획	소상공인 지원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창업종합 지원계획	창업취업 지원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4. 안전 · 소방 · 민방위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표본안전점검 실시결과	도시안전과	연 2회	7월, 1월	자료첨부(PDF)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현황	도시안전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 집행현황	도시안전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도로시설과	수시	안전점검및진단 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로계획과	5년	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도로사업 추진현황	도로계획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도로통계	도로계획과	연 1회	제작완료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도로관리 추진현황	도로관리과	연 1회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련 통계	보도환경 개선과	연 1회	2월	자료첨부(PDF)
교량,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현황	도로시설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교량,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집행현황	도로시설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빗물관리 기본계획	물관리정책과	수시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빗물 보조금 지급현황	물관리정책과	수시	지급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빗물 저류조 설치 및 계획	하천관리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물관리정책과	10년	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하천수질보전대책	물관리정책과	수시	수립 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물관리정책과	수시	한강수계관리 위원회 통보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한강 수질검사 결과	물관리정책과	월 1회	매월 15일	자료첨부(PDF)
토양오염 조사현황	물관리정책과	연 1회	2월	자료첨부(PDF)
지하수 관리계획	물관리정책과	10년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물재생계획과	5년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하수악취 저감대책	물재생계획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하수도 정비 추진현황	물재생계획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하수처리장 운영 통계	물재생시설과	연 1회	2월	자료첨부(PDF)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현황	물재생시설과	반기별	7월, 1월	홈페이지 링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결과	물재생시설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지역별 하천관리 현황	하천관리과	수시	지정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유수지 현황	하천관리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현황	하천관리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하천관리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수해 등 재난대책	하천관리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 화재예방계획	예방과	연 1회	3	자료첨부(PDF)
소방장비 보유현황	안전지원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시민안전체험관 방문객 현황	안전지원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발생현황	재난대응과	월 1회	매월 15일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한강 수난사고 연간 통계	119특수 구조단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을지연습 계획	민방위담당관	연1회	연습 1개월 전	자료첨부(PDF)
민방위 훈련 및 교육 계획	민방위담당관	연1회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5. 주택, 도시계획, 부동산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주택계획	주택정책과	5년	수립후 1개월내	자료첨부(PDF)
주택통계	주택정책과	월 1회	매월 20일이내	자료첨부(PDF)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현황	주택정책과	월 1회	매월 1일	홈페이지
각종 주택제도	주택정책과	수시	신규제도 도입시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주택공급 현황	주택정책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주거복지 추진현황	주택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아파트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현황	공동주택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현황	공동주택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공동주택과	수시	계획변경시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공동주택과	연 1회	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안	공동주택과	수시	개정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임대주택 개발 공급현황	임대주택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한옥보전 및 진흥계획, 밀집지역 지정현황 등	한양도성 도감과	수시	계획수립 및 선정 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건축기획과			
서울건축문화제	건축기획과	연 1회	11월	자료첨부(PDF)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재생과	5년	결정고시후 즉시	자료첨부(PDF)
도시정비사업 통계	주거재생과	분기별	4월,7월, 10월,1월	자료첨부(PDF)
기타 용역결과	주거재생과	연2회	6월,12월	자료첨부(PDF)
도시주거환경정비 추진현황	주거재생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도시재정비 추진현황	재정비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과	5년	기본계획 공고후즉시	자료첨부(PDF)
도시계획 통계	도시계획과	연 1회	8월	자료첨부(PDF)
경관계획	도시계획과	5년	5월	자료첨부(PDF)
사전협상제도	공공개발센터	개정시	지침개정시	자료첨부 (PDF)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및 관리현황	도시계획과	수시	변경시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과	심의확정 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확정 통보 즉시	자료첨부(PDF)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지구단위 계획과	수시	결정고시 후 30일 이내	홈페이지 링크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	지구단위 계획과	수시	주요현황 발생시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도시계획시설 중 특정시설(유통, 공급시설, 학교 등)결정 및 변경결정사항	시설계획과	수시	고시 즉시	자료첨부(PDF)
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현황	도시정비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도시계획과	수시	준공후 1개월	자료첨부(PDF)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도시정비과	수시	지정(변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토지정보지	토지관리과	월 1회	제작완료 후 14일 이내	자료첨부(PDF)
중개업소 관리현황	토지관리과	수시	등록 즉시	홈페이지 링크
중개업소 지도단속현황	토지관리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지적측량 관리현황	토지관리과	연 1회	11월	자료첨부(PDF)
부동산개발업 관리현황	토지관리과	일 1회	매일	홈페이지 링크
개별 공시지가	토지관리과	연 1회	5월	홈페이지링크 <a href="http://klis.seoul.go.kr">http://klis.seoul.go.kr</a>
지적통계	토지관리과	연 1회	1월	홈페이지링크 <a href="http://klis.seoul.go.kr">http://klis.seoul.go.kr</a>
도심관리 및 계획	역사도심 관리과	수시	주요현황 발생시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6. 환경, 공원, 상수도 분야

공포대상 행정정보(공포항목)	공 표 방 법			
	공포기관 및 부서	공포주기	공포시기	공포형태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정책과	5년	5월	자료첨부(PDF)
서울형 녹색산업 지원정책	환경정책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현황	녹색에너지과	연 1회	2월	자료첨부 (PDF)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추진현황	녹색에너지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현황	환경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녹색에너지과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 및 현황	기후대기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종합계획 및 시행현황	기후대기과	연 1회	6월	자료첨부(PDF)
석유소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관련 통계	녹색에너지과	반기별	3월, 9월	자료첨부(PDF)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관련 현황자료	기후대기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대기질 개선 계획, 평가결과 등	기후대기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친환경운전장치 보급 현황	친환경교통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	친환경교통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현황	친환경교통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	친환경교통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쓰레기 발생량	자원순환과	연 1회	6월	자료첨부(PDF)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자원순환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자원회수시설 관련 통계	자원순환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음식폐기물 처리대책 및 관리현황	자원순환과	연 1회	4월	자료첨부(PDF)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현황	자원순환과	수시	심사위원회개최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생활공해대책	생활환경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생활공해 측정결과	생활환경과	상시	측정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청소종합대책	생활환경과	수시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생활환경 관리현황	생활환경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기후대기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원녹지 정책과	계획수립 시	계획 승인 후 즉시	자료첨부(PDF)
공원 방법시설 종합계획	공원녹지 정책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공원혁신 마스터플랜	공원녹지 정책과	연 1회	계획수립 후 15일 이내	자료첨부(PDF)
경의선, 경춘선 공원조성 계획	공원조성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어울림공원 조성현황	공원조성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재조성	공원조성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남산자락별 정비계획	공원조성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녹화재료 지원현황	조경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도시녹화 추진현황	조경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조경과	10년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가로수, 보호수 관리현황	조경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생태 및 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	자연생태과	수시	지정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야생 동식물 보호 세부계획	자연생태과	5년	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사면안전관리 종합계획	산지방재과	1년	수립 및 변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산사태 등 재해관리현황	산지방재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먹는 물 관리현황	상수도 사업본부	월 1회	매월 10일	홈페이지링크
총괄원가계산서	상수도 사업본부	연1회	7월	홈페이지링크
상수도관로 통계	상수도 사업본부	년1회	확정후 2일 이내	자료첨부(PDF)

7. 문화, 관광, 체육, 디자인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서울문화상 수상자 현황	문화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문화시설 건립현황	문화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창작공간 운영현황	문화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서울의 주요축제 추진현황	문화예술과	연 1회	행사종료 후 3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전문예술법인 지정현황	문화예술과	상시	상시	자료첨부(PDF)
근현대 문화유산(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문화정책과	수시	지정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문화복지사업 추진현황	문화예술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패션, 봉제산업 지원현황	문화산업과	연1회	1월	자료첨부(PDF)
창작공간 운영 등 영화산업 지원현황	문화산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문화콘텐츠활성화종합계획	문화산업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애니메이션 사업 추진현황	문화산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서울프로모션플랜(SPP) 관련 추진실적	문화산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	역사문화재과	수시	수시	자료첨부(PDF)
유형문화재 지정 현황	역사문화재과	수시	수시	자료첨부(PDF)
체육 기본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체육진흥과	수시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체육진흥과	연 1회	5월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체육복지 추진현황	체육진흥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종합운영 계획	디자인정책과	연 1회	제작완료 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디자인종합계획	디자인정책과	수시	수립 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디자인센터 운영현황	디자인정책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디자인기업 지원현황	디자인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디자인산업 관련 통계	디자인정책과	격년	1월	홈페이지 링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과	5년	12월	자료첨부(PDF)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개선 사례집	공공디자인과	격년	3월	자료첨부(PDF)
경관사업 추진현황	공공디자인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빛공해 현황분석	공공디자인과	3년	1월	자료첨부(PDF)
광고물 관리현황	공공디자인과	연 1회	11월	자료첨부(PDF)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현황	관광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8. 건강, 식품위생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보건소 및 보건분소 현황	보건의료 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시립·위탁병원평가결과	보건의료 정책과	연 1회	평가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 플랜	보건의료 정책과	수 시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 정책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의약업소 현황	보건의료 정책과	연 1회	2월	자료첨부(PDF)
정신보건시설 운영현황	보건의료 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의료지원형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보건의료 정책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감염병 통계	생활보건과	상시	작성후 즉시	홈페이지링크
금연사업 추진현황	건강증진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계획	건강증진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계획	보건의료 정책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치매사업 관리계획	건강증진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식품안전 종합대책	식품안전과	수시	대책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가공식품 안전 종합대책	식품안전과	연 1회	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유해물질 수거검사 현황	식품안전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축산 식품 안전 종합대책	식품안전과	연 1회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축산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	식품안전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	식품안전과	연 1회	수립 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어린이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	식품안전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현황	식품안전과	연 1회	조사결과 통보후 15일 내	자료첨부(PDF)
농수산물 식품안전 종합대책	식품안전과	연 1회	수립 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식품안전과	매일	익월 초	홈페이지 링크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	식품안전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제 실시	식품안전과	연 1회	2월	자료첨부(PDF)
동물보호	동물보호과	반기별	1,7월	자료첨부(PDF)

9. 교통분야

공포대상 행정정보(공포항목)	공 포 방 법			
	공포기관 및 부서	공포주기	공포시기	공포형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교통정책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혼잡통행료 부과 및 징수현황	교통정책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정책과	5년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도시철도 기본계획	교통정책과	수시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교통정비 기본, 중기계획	교통정책과	개별법에 의함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ITS 증장기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교통정책과	5년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정책과	5년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현황	버스정책과	상시	상시	홈페이지 링크
버스평가 및 지원현황, 차고지현황	버스정책과	연 1회	5월	자료첨부(PDF)
	주차계획과	수시	변경시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택시평가 및 지원현황	택시물류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화물자동차 지원현황	택시물류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공영주차장 위치 및 요금현황	주차계획과	수시	변경시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자전거주차장 현황	보행자전거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자전거이용 설비계획	보행자전거과	5년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자전거이용 지원사업 등	보행자전거과	연 1회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실행계획	보행자전거과	개별법에 의함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지역별 도로교통 소통개선계획	교통운영과	연 1회	수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교통속도 및 교통량	교통운영과	연 1회	책자발간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TOPIS 마스터플랜	교통정보센터	수시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지하철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수시	안전점검및진단 결과보고서 최종결재후1개월이내	홈페이지링크

10. 세금, 재정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서울시 소유 건축물 현황	자산관리과	연 1회	7월	자료첨부(PDF)
민관협력을 통한 MOU체결	세무과 (재정사업단)	반기	6월, 12월	홈페이지 링크

11. 기획, 감사, 교육, 정보화, 마을공동체, 일반행정 분야

공표대상 행정정보(공표항목)	공 표 방 법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	기획담당관	연 1회	감사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재정담당관	연 1회	12월	자료첨부(PDF)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재정담당관	연 1회	10월	자료첨부(PDF)

공포대상 행정정보(공포항목)	공 포 방 법			
	공포기관 및 부서	공포주기	공포시기	공포형태
가입 국제기구 현황	국제교류 담당관	연 1회	12월	자료첨부(PDF)
자매도시 현황	국제교류 담당관	반 기	자료작성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주요사업 평가계획	평가담당관	연 1회	평가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BSC기반 성과관리	평가담당관	연 2회	평가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평가담당관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기획담당관	연 1회	2월	자료첨부 (PDF)
기관별 종합감사 계획 및 결과	감사담당관	수 시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후 1개월이내	홈페이지링크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	민원해소 담당관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교육지원 기본계획	학교지원과	연 1회	수립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장학사업 추진현황	학교지원과	반기별	8월, 2월	자료첨부(PDF)
학교보안관 지원계획 및 운영현황	교육격차 해소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학교보안관 여론조사 결과	교육격차 해소과	연 1회	12월	자료첨부(PDF)
무상급식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	교육격차 해소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광역친환경급식 통합지원센터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평생교육 추진현황	평생교육과	연 1회	3월	자료첨부(PDF)
영어마을 추진계획 및 지원현황	평생교육과	반기별	7월, 1월	자료첨부(PDF)

공포대상 행정정보(공포항목)	공 표 방 법			
	공포기관 및 부서	공포주기	공포시기	공포형태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3월	자료첨부(PDF)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현황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개최 후	자료첨부(PDF)
세계전자정부협의회 운영 현황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1월	자료첨부(PDF)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3월	자료첨부(PDF)
모바일 서비스 운영	정보화기획 담당관	연1회	1월	자료첨부(PDF)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정보시스템 담당관	수시	자료생성시	홈페이지 링크
공간정보현황	공간정보담당관	연1회	1월	자료첨부(PDF)
서울시 앱개발센터 운영현황	공간정보담당관	연 1회	7월	자료첨부(PDF)
서울시 와이파이 구축현황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정보취약계층 교육	데이터센터	연 1회	4월	자료첨부(PDF)
서울창의상 수상목록	사회혁신 담당관	반기별	7월, 12월	자료첨부(PDF)
시민제안 채택건수	사회혁신 담당관	연1회	12월	자료첨부 (PDF)
사업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현황	마을공동체 담당관	연1회	12월	자료첨부 (PDF)
갈등예방 및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조정 담당관	연1회	수립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 (PDF)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담당관	2년	발간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 (PDF)
서울시 청사투어 안내자료	총무과	수시	제작 수정시	자료첨부(PDF)
시청사 에너지 사용현황	총무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송치건수	민생사법 경찰과	연 1회	5월	자료첨부(PDF)

공포대상 행정정보(공포항목)	공 포 방 법			
	공포기관 및 부서	공포주기	공포시기	공포형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행정과	연 1회	4월	자료첨부(PDF)
유희공간 개방현황	행정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링크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정보공개 정책과	분기별	4월, 7월, 10월, 1월	자료첨부(PDF)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인사과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기자설명회	대변인실	수시	즉시	홈페이지링크
보도자료	대변인실	수시	즉시	홈페이지링크
시장 동정	대변인실	수시	즉시	홈페이지 링크
해명/설명자료	대변인실	수시	즉시	홈페이지 링크
시정모니터 과제 결과보고서	뉴미디어 담당관	연 1회	책자 발간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서울시 홍보대사 현황	시민소통 담당관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민원처리실적	시민봉사 담당관	연 1회	1월	자료첨부(PDF)
산업단지 관리계획	마곡사업 담당관	수시	변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PDF)
개발계획 변경사항	마곡조성 담당관	수시	변경후 1개월이내	자료첨부
센터별 입주업체 현황	산업통상 진흥원	수시	신규 입주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링크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개목록

문 서 생 산 일	문 서 제 목	생 산 부 서	문 서 번 호	기 안 자	보 존 기 간

[별지 제2호 서식]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안전상정요청서

수 신 :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 조 : 정보공개정책과장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안전심의를 요청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담당관

1.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정보공개청구	-	
3. 안전 상정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청구 요지 -  <input type="checkbox"/> 검토결과 -	
5. 기 타		

첨부 : 정보(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비공개대상 문서 일체

[별지 제3호 서식]

## 00년 제00차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청구인 이의신청,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사전심의 건』에  
관하여 제0정보공개심의회에서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

- |   |   |   |  |  |       |
|---|---|---|--|--|-------|
| 위 | 원 | 장 |  |  | ( 인 ) |
| 위 |   | 원 |  |  | ( 인 ) |
| 위 |   | 원 |  |  | ( 인 ) |
| 위 |   | 원 |  |  | ( 인 ) |
| 위 |   | 원 |  |  | ( 인 ) |
| 위 |   | 원 |  |  | ( 인 ) |
| 위 |   | 원 |  |  | ( 인 ) |

[별지 제4호 서식]

---

## 00년 제0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 .

0 0 국  
(00000과)

작성자

000 과장 : 000 ☎ - 000팀장 : 000 ☎ 담당 : 000 ☎

**「 00년 제00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 . ( ) : ~ :

◆ 장 소 :

◆ 참 석

- 심의위원 :

- 배 석 :

◆ 안 건 :

-

-

-

-

◆ 심의결과 (안건 순 배열)

- 부분인용, 기각, 인용, 기각, 기각, 부분인용

**【 의안번호 - 】**

제목 :

위원별 발언내용(회의록)

〈000 위원〉

○

○

:

:

**【 의안번호 - 】**

제목 :

위원별 발언내용(회의록)

〈000 위원〉

○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서울시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표목록을 종전 64종에서 327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 나.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의 시기와 절차 및 정보공개책임관을 규정 하는 등 조례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책임관」규정 신설(안 제2조의1)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함
- 나. 327종의 공표항목을 명시하고, 세부 공표업무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별표)
  -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기관 및 부서를 지정
- 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평가에 따른 세부 추진방법을 규정 함(안 제16조)
  -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실시
  - 시장은 매년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공개
- 라. 민원처리온라인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조례 전부개정시('03.8.1) 행정환경 변화로 유사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사용률이 저조한 민원처리온라인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3938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로 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조례 제5조 관련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 시설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7. 손괴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중 “시설의 고장”을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고장(이하 “시설의 고장”이라 한다)”으로, “1만원”을 “5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한도) 제3조 관련 시설의 고장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교통본부장,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안전실장이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신고 전용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장신고등”을 “고장 및 손괴신고 등”으로, “고장사실이 확인된 신고”를 “고장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장·손괴 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조 장치 <b>고장신고</b>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고 건	10,000원	
<b>손괴 원인자 신고</b> (제2조제1항제3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200천원 이상~ 600천원 미만	10,000원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	6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	30,000원
	상복구비	1,000천원 이상	50,000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신호등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로 확대함으로써 동 규칙의 내용이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도로시설물 고장·손괴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관리시설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나. 손괴시설물 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항제7호)
- 다. 신고포상금을 '1만원'에서 '5만원이하'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별표로 둠(안 제3조 및 별표)
- 라.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조장치 고장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
- 마.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교통본부장,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안전실장이 총괄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5조제1항)
- 바. 신고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고인의 신분을 누설할 수 없도록 신고인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3939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이용”을 “이용·관리”로 한다.

제2조 중 “이용”을 “이용·관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 조례 제16조에 따른 청계천 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05년 10월 1일 복원된 청계천의 개선·보완을 시민과 함께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어,개정 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청계천 시민위원회의 세부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개정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 나. 조례 제16조에 따른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안 제4조 신설)

◆ 서울특별시규칙 제394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 12.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업무의 지원

제19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감리업체 지도감독

제21조제4항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같은 항 제27호 및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업체 지도감독
- 22.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23.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 24. 하도급 관련 업무지침 작성 및 시행
- 25.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제22조제5항에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2. 건축물 안전점검·정비계획의 총괄
- 33. 건축물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7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도급 제도개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소관 실·국의 분장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시정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 하도급 집중관리를 위한 관련 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17조, 제19조, 제21조)
  - 하도급제도 총괄부서 조정 : 재무국 재무과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건설하도급 감독업무 기능 명문화 : 도시안전과(건설업체 지도감독), 기술심사담당관(감리업체 지도감독)
- 나. 주택정책실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소관부서 조정(안 제22조)
  - 건축물 안전점검·정비계획 등 관리총괄 : 공동주택과 ⇒ 건축기획과
- 다. 교육협력국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규정 신설(안 제18조)
  -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총괄 및 식자재 구매·공급업무 지원사항 규정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56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 규칙 제정 공포('13.1.15) 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민인권보호관과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친절 의무 규정을 두어 신청인 등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인권침해 신청인의 정의를 '자신 또는 제3자'에서 '피해자 또는 제3자'로 분명하게 규정 함(안 제2조제1호)
- 나. 타 부서에 단순 민원으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민 인권보호관에게 조사의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 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피해가 회복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 라. 신청의 취하 방법을 '구두 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단서)
- 마. 녹음·녹화에 대한 피조사자 등의 동의 규정과 조사자가 지켜야 할 비밀 준수 및 친절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 바. 이의신청 처리 주체가 종전 인권센터에서 조사권한이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례에 맞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배당도 보호관이 하도록 규정(안 제12조)
- 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 등 각종 서식 기재 사항 변경 및 미비점 보완(안 별표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권담당관(전화: 2133-6379, FAX: 2133-0797, E-mail: rdk123@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61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만을 실시하는 용역도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설계의 오류, 누락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만을 실시하는 용역의 경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 (안 제7조제2항제1호 마목)
- 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자에 대한 감점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감점조항 삭제 (안 제22조)
- 다. 건설기술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심의 수수료 추가 (안 별표 제4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8553, FAX : (02)2133-0745
- E-mail : djhp316@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99호('74.7.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228호(2013.7.18.)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광운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66 일대에 위치한 광운대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광운학술정보관 신축 및 복지관 철거계획 취소에 따른 변경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광운대학교)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시설결정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학교	대 학 (광운 대학교)	전 체		66,054	-	66,054		
		1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447-1 일대	44,375	-	44,375	서고시 제99호 ('74.7.15)	
		2캠퍼스	노원구 월계동 466 일대	21,679	-	21,679	서고시 제140호 ('91.5.24)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운대학교	○ 광운스퀘어 → 광운학술정보과학관 ○ 복지관 존치	- 광운스퀘어 : 광운스퀘어(지하4층/지상3층, 연면적:5,478.36㎡) → 광운학술정보관(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27,252.76㎡) - 복 지 관 : 철거후 광운스퀘어 건립 부지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존치하여 기존 복지관으로 이용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토지이용계획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노원구 월계동 447-1일대	전체	계	66,054.00	-	66,054.00	
				건축부지	28,425.75	감) 3,672.39	24,753.36	
				녹지부지	4,215.00	-	4,215.00	
				조경부지	9,046.00	증) 3,438.00	12,484.00	
				도로부지	16,204.25	감) 189.61	16,014.64	
				주차장부지	477.00	-	477.00	
				광장부지	4,895.00	증) 2,108.00	7,003.00	
				운동장부지	2,791.00	감) 1,684.00	1,107.00	

2) 캠퍼스별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토지이용계획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대학)	노원구 월계동 447-1일대	제1 캠퍼스	계	44,375.00	-	44,375.00	
				건축부지	19,675.64	감) 3,672.39	16,003.25	
				녹지부지	-	-	-	
				조경부지	6,276.00	증) 3,438.00	9,714.00	
				도로부지	12,168.36	감) 189.61	11,978.75	
				주차장부지	-	-	-	
				광장부지	3,464.00	증) 2,108.00	5,572.00	
				운동장부지	2,791.00	감) 1,684.00	1,107.00	
변경	학교 (대학)	노원구 월계동 466일대	제2 캠퍼스	계	21,679.00	-	21,679.00	변경 없음
				건축부지	8,750.11	-	8,750.11	
				녹지부지	4,215.00	-	4,215.00	
				조경부지	2,770.00	-	2,770.00	
				도로부지	4,035.89	-	4,035.89	
				주차장부지	477.00	-	477.00	
				광장부지	1,431.00	-	1,431.00	
				운동장부지	-	-	-	

3) 건축범위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이의 범위 (층수)						비 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7층이하		12층이하		
합계	59 이하	59 이하	43 이하	38 이하	150 (156) 이하	150 (156) 이하	149 이하	155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7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1캠퍼스	-	-	45 이하	37 이하	-	-	132 이하	142 이하	-	-	7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2캠퍼스	59 이하	59 이하	41 이하	41 이하	150 (156) 이하	150 (156) 이하	184 이하	184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7층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 ( )안은 기존 시설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학교로 편입(결정)하여 용적률 150%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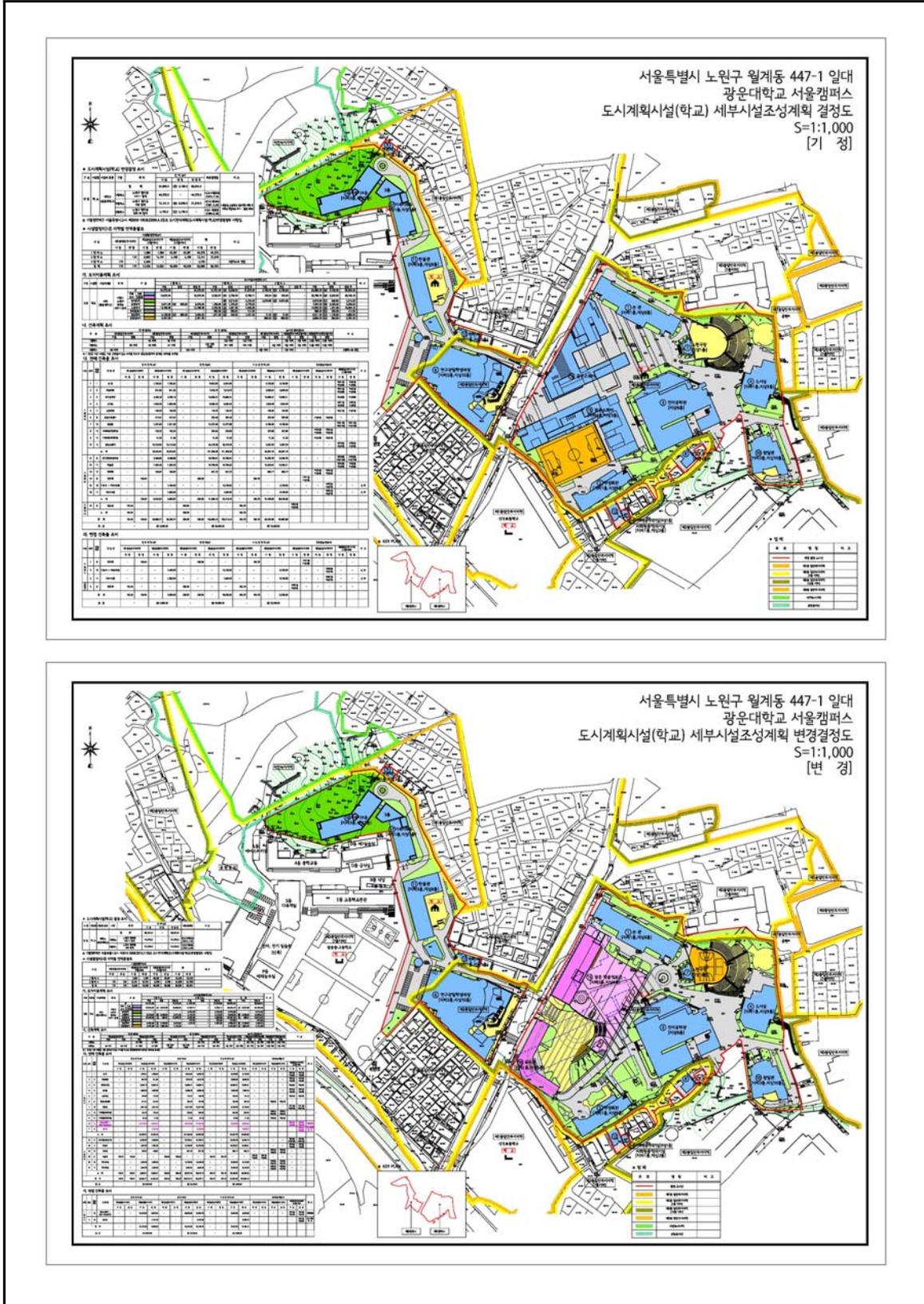
다. 건축물 계획 변경 조서

구분	건물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 이하)		연면적 (㎡ 이하)		지상층 연면적 (㎡ 이하)		건물층수 (층 이하)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 경	15	광운스퀘어⇒ 광운학술정보관	10,472.62	5,618.74	45,478.36	27,252.76	9,367.93	8,632.58	지하4층, 지상3층	지하3층, 지상4층	계획 변경
철거계획취소	18	복지관	-	1,181.49	-	5,483.29	-	5,096.15	-	지하1층, 지상5층	계획 변경

4.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1), 노원구 도시관리과(전화 2116-386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녹지,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녹지,도로)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성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서울특별시공고 제135호(1973.7.2.)]된 망원유수지상에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레저공간 마련을 위해 공간적 범위 결정을 통해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수지	유수시설	마포구 망원동 450-3	54,409.9	-	54,409.9	서울시 공고 제135호 (1973.7.2.)	전체유수지 (54,409.9㎡)중 일부구간(4,000㎡) 공간적 범위결정

나.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수지 (유수시설)	마포구 망원동 450-3	면적 (㎡)	-	4,000	4,000	-	일부(4,000㎡)구간에 대한 공간적범위 결정 ※유수지 상부 비시설 설치는 세부내용, 결정도면 및 공간적범위결정도 참조
			높이 (m)	-	평균해수면 기준+8.8이하	평균해수면 기준+8.8이하		

○ 공간적 범위결정에 따른 비시설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결정(변경) 사유
설치하고자 하는 비시설 (체육센터)	○ 유수지 상부 비시설 · 용도 : 체육센터 · 면적 : 4,000㎡ · 건폐율/용적률 : 60%이하/150%이하 · 층수(높이) : 4층이하 ※ 평균해수면기준 8.8m이상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레저공간 마련을 위해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함

다.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녹지 (완충녹지)	마포구 망원동 451-1 일대	15,176.0	감)1,329.0	13,847.0	서울시공고 제135호 (1973.7.2)	-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40	15	특수 도로	11	마포구 망원동 452-2(중로3-49)	마포구 망원동 450-3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68	마포구 망원동 452-2(대로2-134)	마포구 망원동 452-2(소로1-1)	일반도로	서울시공고 제135호 (1973.7.2)	-
변경	중로	3	49	12	국지 도로	168	마포구 망원동 452-2(대로2-134)	마포구 망원동 452-2(소로1-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6	8	국지 도로	11	마포구 망원동 452-2(중로3-49)	마포구 망원동 450-3	일반도로	-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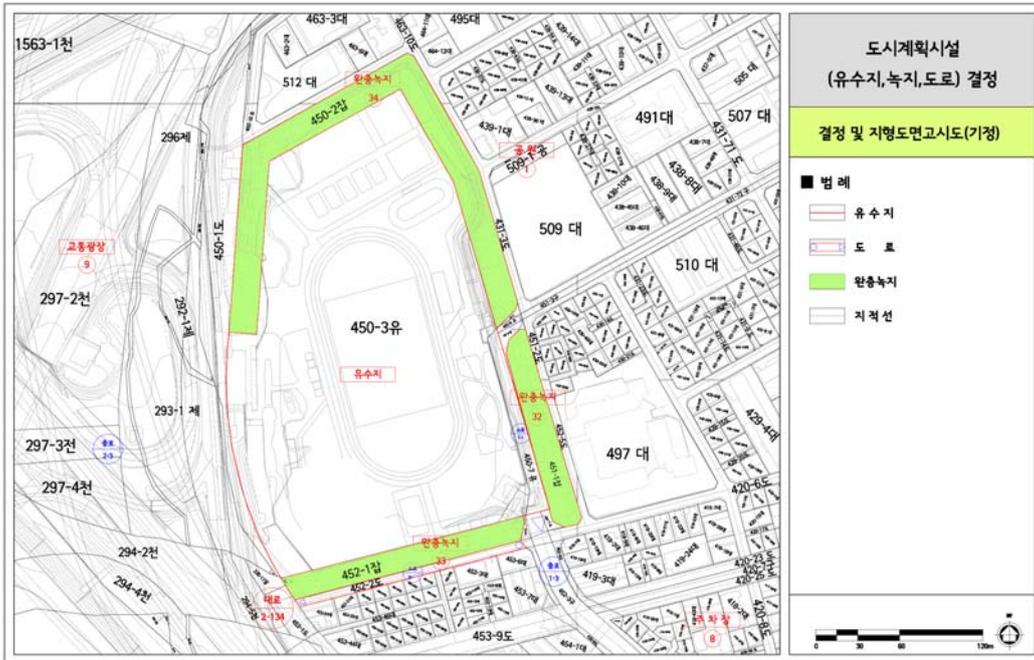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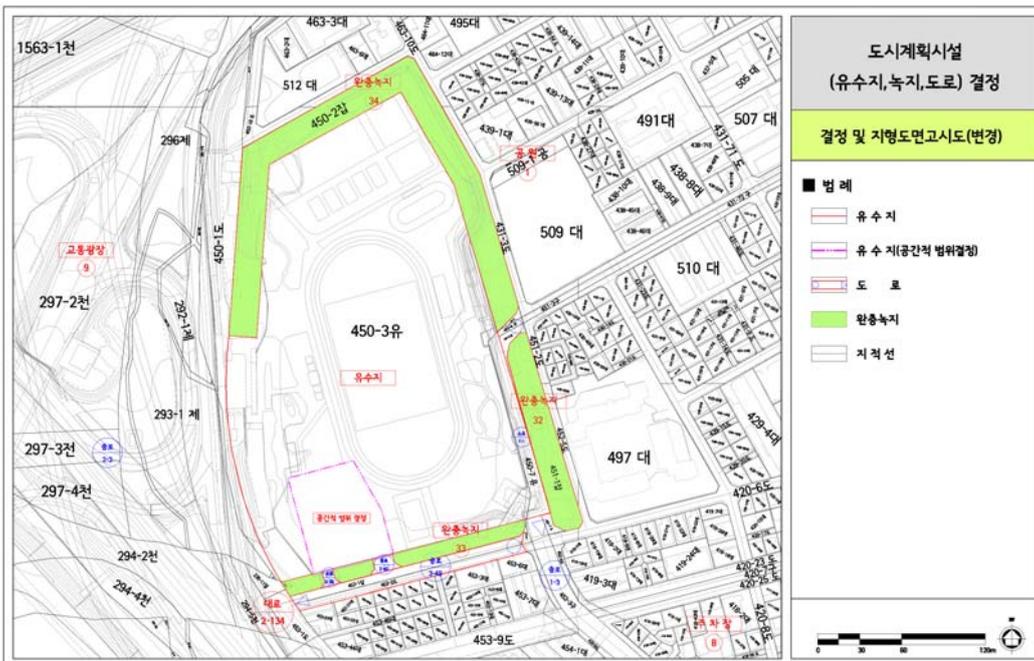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02-2133-8408)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02-3153-935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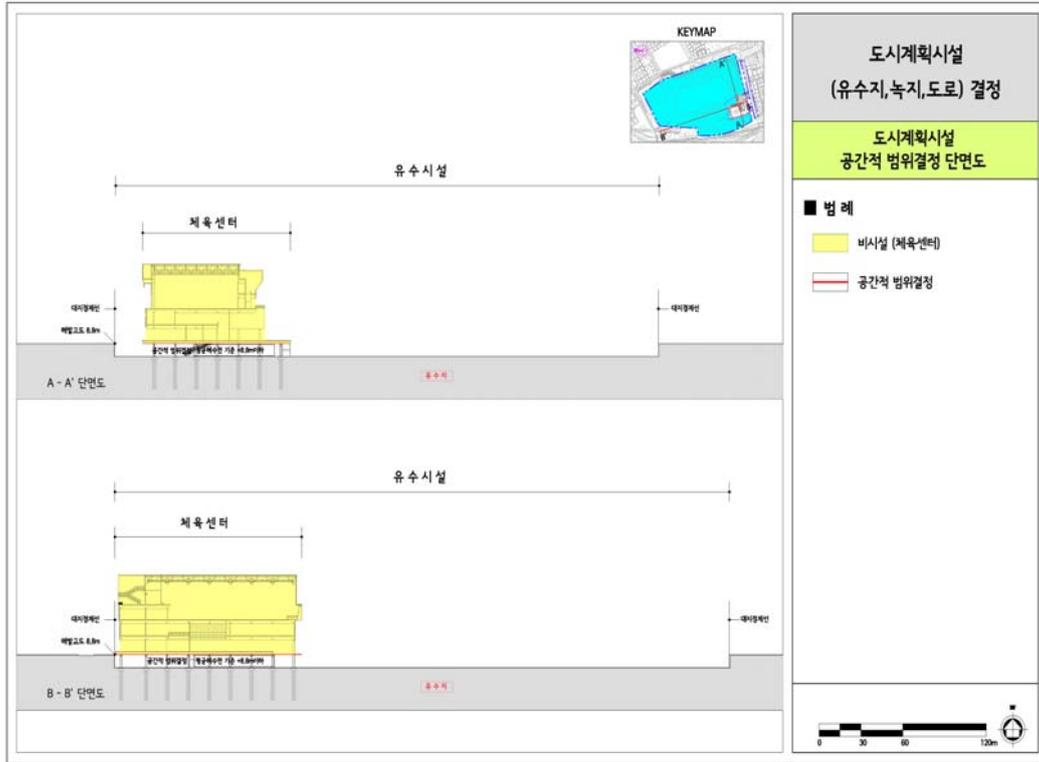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 공간적 범위 결정도 ] (단면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7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7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출입구 신설(1개소) 및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천왕역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7호선)	도시철도 (천왕정거장)	구로구 오류동 174일대	4,797	증)391	5,188	1993.03.24 (서울시고시 제1993-77호)	-광장,도로 중복결정  - 정거장 엘리베이터 신설 311㎡  - 출입구#1의 E/S 신설 81㎡

※ 2013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13.10. 2)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조건내용

- 1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시 보행자를 위해 충분한 보도폭을 확보할 것
- 비상시 대피경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할 것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지도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5),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S = 1:1,000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소속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시설계획과
직위	-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	입체공간 계획팀장
직명	지방시설 서기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계약 다	지방시설 사무관
성명	김미선	이정호	최현희	강대만	정희원
확인인					

도시계획시설(철도 : 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철도 (7호선)	도시철도 (천왕정거장)	구로구 오류동 174일대	4,797	중)391	5,188	1993.03.24 (서고시1993-77)	광장 도로 중복결정

■ 범례 : 기정 ————— 변경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8호

**도시관리계획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04호(2006.11.3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2호(2009.11.26)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강동구 천호동 401-5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결정(변경) 취지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동구 천호동 401-5번지 일대 3개획지의 공동개발에 따른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천호동 362-60번지 일원	363,887	-	363,887	2006.11.30 (서울시 고시 제2006-404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 다.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없음)
  - 라. 획지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E12	㉠	천호동 397-402,401-4,12	336.8	획지선 지정	
		㉡	천호동 397-28,355,392,401-11	302.1	획지선 지정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E12	㉑	천호동 397-30,89,401-5,10	1,052.1	획지선 지정	
변경	E12	㉑	천호동 397-28,30,89,355,392,402 천호동 401-4,5,10,11,12	1,691.0	획지선 지정	
기정	E12		천호동 397-29,E12-㉑획지	87.9	공동개발권장	
변경	E12		천호동 397-29	87.9	단독개발	

※ AutoCad 구적면적이며, 향후 측량결과 변경 가능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 ㉑, ㉒, ㉓을 하나의 획지로 변경</li> <li>• 천호동 397-29번지 공동개발 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의 획지를 공동개발하여 자율적 정비를 유도</li> </ul>

2. 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결정(변경)조서

-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2)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 3) 높이 계획(변경)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기 정	변 경	
E12가구 ㉑획지 (천호동 401-5번지외 10필지)	구천면길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30m이하	30m이하 (9층이하)
	이면부	사선제한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획지㉑의 건축물 규모를 최고높이계획 범위내에서 상향(7층→9층)	•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균형발전사업지구내 건축 물의 층수를 최고높이계획 이내에서 계획.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공동주차 출입구 및 주차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대지간 공동조성 (397-355와 397-29필지간, 397-30와 397-32필지간)</li> <li>• 최소폭원 6m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차 출입구 해제</li> <li>• 구천면로변 주차출입구 지정 (397-32, 397-29, 397-355) -최소폭원 6m이상</li> </ul>	구천면로변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공동주차 출입구 일부해제 및 주차출입구 지정	E12가구 401-5번지일대 획지계획의 변경 및 개발시기의 차이로 397-29번지와 공동주차출입구 조성이 어려워 주차출입구를 별도 계획함.

다. 경관 및 환경 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인센티브 항목(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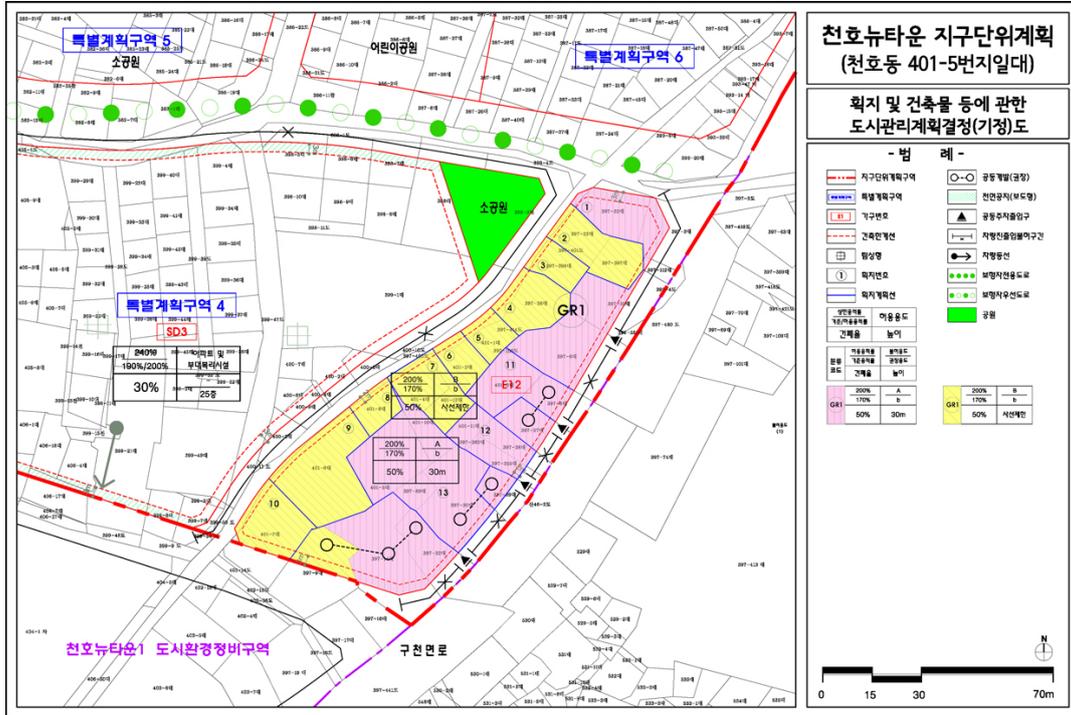
3. 관계도면 : 첨부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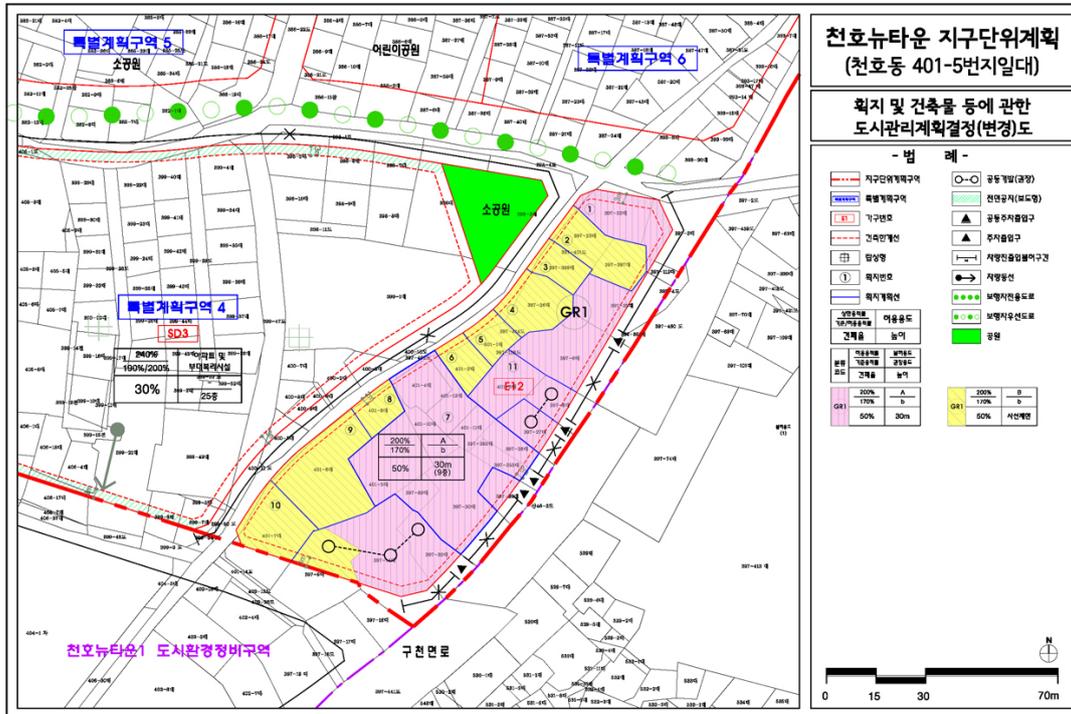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5. 고시관련 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2133-7224)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4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2010.2.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2010.9.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2011.9.22)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2011.12.29)로 1지구, 2지구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2011.12.29)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2012.10.11)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2013.7.25.)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향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665,086	-	3,665,086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 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라.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이종수
- 2)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 1) 사업시행 기간 :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 2) 시 행 방 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지구분할 : 변경없음

- 1) 경계 내용

(단위 : m<sup>2</sup>)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지구분할	1,065,632	1,902,535	696,919

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가) 기정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합 계	3,665,086	1,065,632	1,902,535	696,919	100.0		
주거용지	소 계	595,162	595,162	-	-	16.2	
	단독주택용지	4,111	4,111	-	-	0.1	
	공동주택용지	591,051	591,051	-	-	16.1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14	10,341	72,473	-	2.3	
업무용지	업 무 용지	305,999	-	305,999	-	8.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730,887	-	730,887	-	20.0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81,326	-	81,326	-	2.2	
도시 기반시설용지	소 계	1,790,440	421,311	685,494	683,635	48.8	
	도 로	648,511 (1,727)	157,722	459,959	30,830 (1,727)	17.7	
	보행자도로	972	417	555	-	0.0	
	철도용지	16,729	-	7,329	9,400	0.5	
	의 료 시 설	33,360	-	33,360	-	0.9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도시 기반시설용지	공 공 청 사	59,764	58,703	1,061	-	1.6	
	학 교	84,404	63,205	21,199	-	2.3	
	보육시설	990	-	990	-	0.0	
	사회복지시설	1,700	1,700	-	-	0.0	
	광 장	12,979	-	12,979	-	0.4	
	근 린 공 원	545,311	41,880	-	503,431	14.9	
	어린이공원	15,552	15,552	-	-	0.4	
	문화공원	20,382	-	20,382	-	0.6	
	경 관 녹 지	1,858	692	928	238	0.1	
	연 결 녹 지	177,559	70,956	106,603	-	4.8	
	주 차 장	25,620	5,471	20,149	-	0.7	
	열공급설비	24,140	-	-	24,140	0.7	
	전기공급설비	4,679	2,645	-	2,034	0.1	
	환경기초시설	-	-	-	-	0.0	
	방 수 설 비	8,548	2,368	-	6,180	0.2	
	유수지	107,382	-	-	107,382	2.9	
	저류지	(50,000)	-	-	(50,000)	(1.4)	
기타시설용지	소계	78,458	38,818	26,356	13,284	2.2	
	주유소	3,200	1,600	1,600	-	0.1	
	가스충전소	4,000	-	2,000	2,000	0.1	
	종교시설	2,947	2,947	-	-	0.1	
	편익시설	58,306	34,271	12,751	11,284	1.6	
	택시차고지	10,005	-	10,005	-	0.3	

※ 저류지는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도로 일부는(중로2-35, 소로2-3) 유수지 및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 ) 면적은 중복 결정된 면적임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95,162	595,162	12,030	12,030	33,684	33,684	-	-
단독주택용지	4,111	4,111	15	15	42	42	-	-
공동주택용지	591,051	591,051	12,015	12,015	33,642	33,642	-	-

3) 기반시설계획

가) 본 고시 조서 중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변경) 내용,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에 따른다.

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변경없음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차.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카.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공람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곡조성담당관 (☎ 02) 2133-1546)
- 강서구청 마곡개발과 (☎ 02) 2600-5289)
- 서울특별시 SH공사 마곡사업처 (☎ 02) 3410-7389)

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 변경없음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1) 마곡 도시개발사업

나.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1)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 및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육성하는 특화도시로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북아 관문도시 조성
- 2)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융합산업의 전초지로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 조성
- 3) 친환경,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는 미래의 녹색도시 조성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향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665,086	-	3,665,086	

라. 시행자 : 변경없음

1)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이종수

마. 시행기간 : 변경없음

1) 2007년 12월 28일~2014년 12월 31일

바. 시행방식 : 변경없음

1) 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 지구분할 : 변경없음

1) 경계내용

(단위 : m<sup>2</sup>)

구 분	1지구	2지구	3지구
사업지구분할	1,065,632	1,902,535	696,919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합 계	3,665,086	1,065,632	1,902,535	696,919		
주거 지역	소계	1,264,060	1,042,714	221,346	-	
	제1종일반주거지역	9,247	9,24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779,143	706,950	72,193	-	
	준주거지역	475,670	326,517	149,153	-	
일 반 상 업 지 역	559,599	22,918	536,681	-		
준 공 업 지 역	1,110,805	-	1,110,805	-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730,622	-	33,703	696,919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지구	광로 3-19호선 일반 미관지구	방화동319-16~공항동9-3 (방화동 238-1학 일원)	36,240 (12,564)	1,510 (995)	양측12 (편측12)	서고 제1982-164호 (1982.4.22)	
기정	2지구	양천길 일반 미관지구	가양동265~가양사거리 (가양동 178-2대 일원)	4,510 (4,510)	380 (380)	편측12 (편측12)	서고 제2003-161호 (2003.6.20)	

※ ( )는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사항임

나) 고도지구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고도지구 (마곡동 387-10답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29,129,000 (1,065,632)	서고제120호 (1977.4.22)	( )는 구역내 사항임
기정	2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고도지구 (가양동 367-1대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29,129,000 (1,902,535)	서고제120호 (1977.4.22)	
기정	3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지구 최고고도	(최고) 강서구, 양천구 일부지역 고도지구 (마곡동 32-18유 일원)	①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② 원추표면 (해발 57.86m)	29,129,000 (641,499) 12,804,000 (55,420)	서고제120호 (1977.4.22)	

다) 공항시설보호지구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지구	-	김포국제공항주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 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065,632)	서고제120호 (1977.4.22)
기정	2지구	-	김포국제공항주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 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1,902,535)	
기정	3지구	-	김포국제공항주변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 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 (696,919)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665,086	-	3,665,086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총계		기정	-	114(6)	31,521	651,124	33(4)	6,931	158,139	83(6)	23,452	460,428	3(1)	1,138	32,557
계		기정	-	3(1)	1,850	98,151	2	618	32,428	1(1)	1,232	65,723	-	-	-
광로	3류	기정	45~50	3(1)	1,850	98,151	2	618	32,428	1(1)	1,232	65,723	-	-	-
계		기정	-	6(2)	5,052	169,967	1(1)	703	23,302	6(2)	3,435	115,835	1(1)	914	30,830
일반	1류	기정	36	1	1,427	54,504	-	-	-	1	1,427	54,504	-	-	-
	2류	기정	30~53	3(2)	1,877	65,930	1(1)	703	23,302	3(2)	260	11,798	1(1)	914	30,830
	3류	기정	25~31	2	1,748	49,533	-	-	-	2	1,748	49,533	-	-	-
계		기정	-	84(3)	22,485	366,136	21(3)	4,960	96,498	65(3)	17,448	268,469	1	77	1,169
도로	1류	기정	20~23	13(3)	6,092	130,311	7(3)	2,542	57,709	9(3)	3,550	72,602	-	-	-
	2류	기정	15~18	28	6,845	117,506	9	1,818	31,676	18	4,950	84,661	1	77	1,169
	3류	기정	12~14	43	9,548	118,319	5	600	7,113	38	8,948	111,206	-	-	-
계		기정	-	18	2,005	15,898	7	567	5,494	10	1,291	9,846	1	147	558
소로	1류	기정	10	5	726	7,553	3	377	3,894	2	349	3,659	-	-	-
	2류	기정	8~10	9	1,100	7,263	3	163	1,472	5	790	5,233	1	147	558
	3류	기정	4~6.5	4	179	1,082	1	27	128	3	152	954	-	-	-
계		기정	-	1	46	555	-	-	-	1	46	555	-	-	-
보행자 전용도 로	3류	기정	12	1	46	555	-	-	-	1	46	555	-	-	-
	계		기정	-	2	83	417	2	83	417	-	-	-	-	-
	소로	3류	기정	5	2	83	417	2	83	417	-	-	-	-	-

※ ( ) : 지구간 중복노선수

(나) 도로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광	3	16	45~50	주간선 도로	제2한강교남단 (공항동6-12)	김포공항 (가양동 972)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8,890 (1,850)	8,890 (618)	8,890 (1,232)	-	서고제603호 (1978.11.15)	( )사업 구역내
기정	광	3	19	40	주간선 도로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35,306	35,306	-	-		사업 구역외
기정	대	1	1	36	주간선 도로	광3-16 가양동 663	양천길 마곡동 229-4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1,427	-	1,42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2	2	31~53	보조간선 도로	대1-1 마곡동 278-6	방화로 방화동 217-222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963	703	26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2	38	30	보조간선 도로	내발산동 644-2 (가양동 709)	고척동 76-148 (가양동 1130)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7,250	-	7,250	-	71. 4. 7	사업 구역외
기정	대	2	41	30~35	보조간선 도로	양화교-광16 (마곡동 55-5)	개화동시계 (마곡동 272-22)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6,500 (914)	-	-	6,500 (914)	서고제1984-333호 (1984.6.5)	
기정	대	3	1	25~31	보조간선 도로	광3-16 내발산동 198-5	내발산동 181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419	-	41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대	3	2	28	보조간선 도로	광3-16 가양동 876-1	양천길 가양동 272-30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1,329	-	1,32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	20	집분산 도로	양천길 마곡동 224-7	대2-2 마곡동 363-7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643	-	64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7	20	집분산 도로	광3-16 공항동 968-2	대2-2 방화동 224-2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790	790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8	20	집분산 도로	광3-16 가양동 533-8	대2-2 마곡동 363-5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743	-	74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1	20	집분산 도로	방화로 공항동 2-105	중1-7 공항동 4-178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353	353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2	20	집분산 도로	중1-7 공항동940-14	중1-8 가양동 470-3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266	266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3	20	집분산 도로	대1-1 가양동 573	중1-8 가양동 475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243	-	24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 보도시설 3 포함
기정	중	1	16	20	집분산 도로	대2-38 가양동 1126	대3-2 가양동 386-1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446	-	44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7	20~23	집분산 도로	방화로 공항동 833-3	광3-16 공항동1036-1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661	661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18	20	집분산 도로	광3-16 공항동1313-2	소1-6 공항동 1252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645	472	17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35	18(3)	집분산 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384-1	중2-15 내발산동 358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226	226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2	36	18(3)	집분산 도로	중2-15 내발산동 358	대3-1 내발산동 181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271	-	27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 )사업 구역내
기정	중	1	29	20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81	중2-16 공항동 163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166	-	16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30	20	집분산 도로	대1-1 가양동 577	대3-2 가양동414-1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536	-	53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1	31	20	보조간선 도로	대1-1 가양동 598	대3-2 가양동 401-2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541	-	54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1	32	22	집분산 도로	우측지구계 가양동 1130	중2-28 가양동 1124	일반 도로	마곡구 역내	59	-	5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중	2	2	18	집분산 도로	대2-2 방화동 225	중3-45 방화동 186-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91	291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3	18	집분산 도로	중2-2 방화동 235-3	방화동 208-27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40	240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4	18	집분산 도로	중1-1 마곡동 365-8	마곡동 353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97	97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5	18	집분산 도로	방화로 방화동 산75-9	중1-7 방화동 217-1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93	193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8	15	집분산 도로	중1-7 방화동 224-7	방화뉴타운 방화동 217-20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95	95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5	18	집분산 도로	광3-16 내발산동 228-6	내발산동 358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426	-	42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6	18	집분산 도로	광3-16 내발산동 91-5	내발산동 16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412	-	41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7	18	집분산 도로	방화로 공항동 36-23	중1-17 공항동 1133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314	31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8	18	집분산 도로	중1-17 공항동 1136	중1-18 공항동 132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71	271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19	18	집분산 도로	중1-18 내발산동 1327	발산택지개발지구 외발산동 338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43	-	24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0	18	집분산 도로	발산택지개발지구 내발산동 335	중2-15 내발산동 340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33	-	233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1	18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194-3	중2-15 내발산동 326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76	-	27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2	18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92	중2-16 내발산동 158-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66	-	16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23	18	집분산 도로	중1-1 마곡동 365-8	중3-12 마곡동 365-18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96	-	9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4	18	집분산 도로	대1-1 마곡동 286	중3-12 마곡동 365-1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31	-	131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5	16	집분산 도로	대1-1 가양동 660	중2-26 가양동 763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45	-	24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6	18	집분산 도로	광3-16 가양동 839-1	중1-30 가양동 74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10	-	21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7	16	집분산 도로	대3-2 가양동 415-3	중2-26 가양동 76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75	-	27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8	16	집분산 도로	대3-2 가양동 416	중1-32 가양동 112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376	-	37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29	16	집분산 도로	중2-28 가양동 934	중3-36 가양동 933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53	-	53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0	16	집분산 도로	중1-16 가양동 382-3	중2-28 가양동 948-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85	-	8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1	16	집분산 도로	중1-16 가양동 381-6	중2-32 가양동 367-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66	-	26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2	18	보조간선 도로	강서로 가양동 1086	대3-2 가양동 39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481	-	481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2	33	16	집분산 도로	양천길 가양동 283-1	중2-32 가양동 367-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705	-	70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2	34	18	집분산 도로	중2-2 방화동 237-1	중3-47 방화동 239-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91	91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2	35	15	집분산 도로	대2-41 마곡동 55-3	열공급설비 마곡동 56-2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77	-	-	77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근린공원1 중복결정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중	3	1	12	집분산 도로	중1-11 공향동 2-12	방화뉴타운 공향동 4-48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30	30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2	13	집분산 도로	중2-16 내발산동 162	소2-2 내발산동 153-1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16	-	116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8	10	국지 도로	대2-2 방화동 209-2	방화동 208-2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52	52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4	12	집분산 도로	중2-16 내발산동 160-4	소2-2 내발산동 155-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30	-	13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중	3	5	14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81	내발산동 179-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67	-	67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중	3	10	12	집분산 도로	대1-1 마곡동 302	중1-1 마곡동 320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38	-	23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1	12	집분산 도로	대1-1 마곡동 302	중3-14 마곡동 245-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94	-	19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2	12	집분산 도로	대2-2 마곡동 367-3	중3-10 마곡동 299-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560	-	56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3	12	집분산 도로	중3-17 마곡동 269-3	중3-11 마곡동 245-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400	-	40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4	12	집분산 도로	대1-1 마곡동 279-3	대2-41 마곡동 52-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769	-	76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5	12	집분산 도로	중1-1 마곡동 315-2	중3-12 마곡동 312-6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95	-	9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6	12	집분산 도로	대1-1 마곡동 301-2	중3-12 마곡동 312-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32	-	13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7	12	집분산 도로	대1-1 마곡동 268-2	중3-14 마곡동 272-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95	-	19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18	12	집분산 도로	대1-1 가양동 572답	중1-8 마곡동 387-18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42	-	24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지하공간 보도시설 2 포함
기정	중	3	19	12	집분산 도로	대3-2 가양동 293	중2-33 가양동 287-3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66	-	16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0	12	집분산 도로	중2-33 가양동 287-3	중2-32 가양동 1075-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679	-	67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1	12	집분산 도로	중2-20 가양동 172-34대	중3-23 가양동 172-3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55	-	15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2	12	집분산 도로	대3-2 가양동 306-2대	중2-33 가양동 296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94	-	19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3	12	집분산 도로	중2-23 가양동 296-4	중3-20 가양동 165-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34	-	23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4	12	집분산 도로	중3-28 가양동 361-2	중3-23 가양동 288-6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13	-	213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5	12	집분산 도로	중3-28 가양동 358	중3-23 가양동 288-7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89	-	18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6	12	집분산 도로	동축구역계 가양동 166-1	중3-20 가양동 166-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45	-	4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구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중	3	27	12	집분산 도로	대3-2 가양동 349-3	중2-33 가양동 356-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69	-	16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8	12	집분산 도로	중2-33 가양동 356-2	중3-20 가양동 1070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65	-	26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29	12	집분산 도로	중2-32 가양동 367-4	중3-28 가양동 364-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80	-	18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0	12	집분산 도로	중2-32 가양동 367-4	중3-28 가양동 361-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80	-	18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1	12	집분산 도로	중1-16 가양동 950	중2-32 가양동 367-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66	-	26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2	12	집분산 도로	중1-16 가양동 958	중2-32 가양동 367-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65	-	26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3	12	집분산 도로	중1-16 가양동 1121	중2-32 가양동1075-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65	-	26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4	12	집분산 도로	중1-16 가양동 1124	중1-32 가양동 112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02	-	10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5	12	집분산 도로	대3-2 가양동 875	중2-26 가양동 790-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73	-	273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6	12	집분산 도로	대3-2 가양동 917	소3-2 가양동 968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365	-	36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7	12	집분산 도로	발산택지지구 내발산동 331-18	중1-18 공항동 131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34	-	23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8	12	집분산 도로	발산택지지구 내발산동 331-29	중2-15 내발산동 325-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37	-	237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39	12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96-2	중2-15 내발산동 228-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74	-	27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0	12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200-3	중2-16 내발산동 92-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68	-	16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1	12	집분산 도로	중2-15 내발산동 345-3	중3-42 내발산동 344-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45	-	4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2	12	집분산 도로	중2-21 내발산동 226-4	남측구역계 내발산동 359-1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59	-	25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3	12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87	중3-42 내발산동 344-2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18	-	21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4	12	집분산 도로	대3-1 내발산동 187	중2-16 내발산동 160-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70	-	17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중	3	45	12	집분산 도로	중2-2 방화동 186-32	북측구역계 방화동 257-2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58	258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46	12	집분산 도로	중2-2 방화동 233-2	동측구역계 방화동 240-4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245	245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47	12	집분산 도로	중2-34 방화동 239-5	중3-46 방화동 241-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51	51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48	12	집분산 도로	중3-46 방화동 241-5	학교2 방화동 241-5	일반 도로	마곡구역내	16	16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구분	규 모				기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연장(m)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소	1	1	10	국지 도로	양천길 마곡동 222-30	마곡동 222-20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27	-	2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2	10	국지 도로	중1-1 마곡동 317	양천길 마곡동222-41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322	-	32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6	10	국지 도로	중1-18 공향동 1252	중1-17 공향동 1207-3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137	137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1	7	10	국지 도로	중1-7 방화동 223-2	중2-5 방화동 217-36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188	188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	8 (5)	국지 도로	광3-16 내발산동 81-10	내발산동 153-15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414	-	414	-	-	( )사업 구역내
기정	소	2	3	8 (5)	국지 도로	마곡동 5-13	마곡동 9-1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370 (147)	-	-	370 (147)	1988. 6. 4	( )사업 구역내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기정	소	2	21	8	국지 도로	중1-1 마곡동 322-1	소1-2 마곡동 325-1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160	-	16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2	8	국지 도로	중1-1 마곡동 319-1	소1-2 마곡동 323-5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127	-	127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3	8~10	국지 도로	소1-2 마곡동 325-8	소1-1 마곡동 222-12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89	-	8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2	25	9	국지 도로	소로1-8 방화동 208-13	소로3-6 방화동 211-3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94	94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2	26	9	국지 도로	소로1-8 방화동 360-4	소로3-17 방화동 360-4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37	37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소	3	2	6.5	국지 도로	광3-16 가양동 1454-10	중로1-32 가양동 1454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94	-	94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2	27	8	국지 도로	대2-2 361-6	360-1대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32	32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소	3	4	4	국지 도로	소1-1 가양동222-12	가양동 221-7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32	-	3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5	6	국지 도로	소2-23 마곡동 325-9	마곡동 327-96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26	-	2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소	3	6	6	국지 도로	대2-2 방화동 211-3	소로2-25 방화동 211-3	일반 도로	마곡구역 내	27	27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중	3	1	12	특수 도로	동축구역계 가양동 1070	중3-20 가양동 1070	보행자 도로	마곡구역 내	46	-	46	-	-	
기정	소	3	1	5	특수 도로	대2-2 방화동 217-190	소1-7 방화동 217-190	보행자 도로	마곡구역 내	30	30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소	3	2	5	특수 도로	중2-34 방화동 239-5	경관녹지10 방화동 240-7	보행자 도로	마곡구역 내	53	53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2) 도로(지하도로)  
(가) 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모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폭원(m)	기능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281.8	-	-	-	15,036	-	15,036	-	-	
기정	1	18~102	특수 도로	249.80	가양동367-6 일원	가양동375-5 일원	지하공공보 도시설	14,652	-	14,65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광장1, 연륙5과 중복결정
기정	2	12	특수 도로	12	가양동386-3 일원	가양동471-1 일원	지하공공보 도시설	144	-	14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중3-18과 중복결정
기정	3	12	특수 도로	20	가양동562일 원	가양동561 일원	지하공공보 도시설	240	-	24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중1-13과 중복결정

(3)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25,620	5,471	20,149	-	-	
기정	1	주차장	마곡동 354 일원	2,835	2,835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주차장	방화동 217-196 일원	2,636	2,636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주차장	마곡동 251-2 일원	1,163	-	1,163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4	주차장	가양동 165-1 일원	2,206	-	2,206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5	주차장	가양동 365-3 일원	2,064	-	2,064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6	주차장	가양동 967-4 일원	2,344	-	2,344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7	주차장	가양동 462 일원	7,584	-	7,58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8	주차장	가양동 797 일원	3,445	-	3,44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9	주차장	내발산동 92-3 일원	1,343	-	1,343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4) 철도  
(가)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159 (강서구 마곡동42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 과해동143-1)	강서구:마곡동, 가양동,공향동, 방화동,과해동	23,417 (2,484)	350,000.61 (44,343)	23,417 (765)	350,000.61 (10,815)	23,417 (394)	350,000.61 (7,269)	23,417 (1,325)	350,000.61 (26,259)	건고제233호 (1997.7.11)	( )는 마곡지구 내구간임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과해동 83-1호	강남구 역삼동 800-1호	김포공항,당산역 여의도역,노량진 역,동작역,고속버 스터미널역	26,185 (1,905)	325,289 (30,210)	26,185 (565)	325,289 (8,612)	26,185 (585)	325,289 (6,991)	26,185 (755)	325,289 (14,607)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4정거장 (신방화역)	강서구 방화동 217번지일대			-	9,145 (5,628)	-	9,145 (5,628)	-	-	-	-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5정거장 (마곡나루역)	강서구 마곡동367번지			-	18,767 (18,767)	-	-	-	18,767 (9,182)	-	18,767 (9,585)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2	철도	906정거장 (양천향교역)	강서구 가양동158번지 일대			-	8,476 (6)	-	-	-	8,476 (6)	-	-	서고제2002-5 (2002.1.9)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개화동 306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일대		47,400 (1,891)	- (24,130)	47,400 (862)	- (7,176)	47,400 (1,029)	- (16,954)	-	-	건고제695호 ('90.10.13)	
기정	3	철도	마곡정거장 (마곡역)	강서구 가양동 531일대			-	9,951	-	-	-	9,951	-	-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발산정거장 (발산역)	강서구 가양동 968일대			-	5,531 (3,134)	-	-	-	5,531 (3,134)	-	-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공향동 1293일대			-	124	-	124	-	-	-	-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527일대			-	209	-	-	-	209	-	-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783일대			-	248	-	-	-	248	-	-	건고제92-148	
기정	3	철도	환기구	강서구 가양동 965일대			-	209	-	-	-	209	-	-	건고제92-148	

(나) 철도 입체적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1-1	일반철도 (인천공항철도 본선)	강서구 공향동 6-12	강서구 마곡동 372-16일원	길이 폭 높이	2,079m 11~63m 해발고도 최저-1.8~ 최고14.1m이하	699m 11~63m 해발고도 최저-1.8~ 최고14.1m이하	402m 11~31m 해발고도 최저-11.2~ 최고13.5m이하	978m 11~21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3.8m이하	서고제2008-498 (2008.12.30)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포함
기정	2-1	도시철도 (지하철9호선 본선)	강서구 방화동 217-156	강서구 가양동 179-6번지 일대	길이 폭 높이	2,143m 11~37m 해발고도 최저-5.2~최고11.7m 이하	639m 12m 해발고도 최저-5.2~ 최고11.7m이하	928m 11~34m 해발고도 최저-4.7~ 최고11.7m이하	576m 11~37m 해발고도 최저8.5~ 최고11.2m이하	서고제2008-498 (2008.12.30)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포함
기정	3-1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가양동 957-1일원	강서구 가양동 530-5일원	길이 폭 높이	-	-	-	-	서고제2008-498 (2008.12.30)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포함
기정	3-2	도시철도 (제5호선 본선 방화-고덕)	강서구 공향동 6-12일원	강서구 내발산동 81-10일대	길이 폭 높이	1,153m 12m~34m 해발고도 최저1.5~ 최고12.8m이하	-	1,153m 12m~34m 해발고도 최저1.5~ 최고12.8m이하	-	서고제2008-498 (2008.12.30)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포함

나) 도시공간시설

(1) 광장

(가)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12,979	-	12,979	-	-	
기정	1	광장	마곡동 368-3 일원	12,979	-	12,97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 보도시설 1 포함	

(2) 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계	-	-	581,245	57,432	20,382	503,431	-	
기정	계	근린공원	-	545,311	41,880	-	503,431		
기정	1	근린공원	마곡동 255-1 일원	503,431	-	-	503,431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열공급설비 진입도로 및 유수지2 포함	
기정	2	근린공원	방화동 210-1 일원	17,283	17,283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근린공원	공항동 1220 일원	24,597	24,597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계	어린이공원	-	15,552	15,552	-	-		
기정	3	어린이공원	마곡동 316-1 일원	1,494	1,49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어린이공원	공항동 484 일원	2,014	2,01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어린이공원	공항동 4 일원	511	511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어린이공원	마곡동 397-1 일원	2,864	2,86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어린이공원	공항동 6-18 일원	2,658	2,658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8	어린이공원	공항동 705 일원	1,945	1,945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	어린이공원	외발산동 69-1 일원	2,000	2,000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어린이공원	내발산동 384-2 일원	2,066	2,066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계	문화공원	-	20,382	-	20,382	-		
기정	1	문화공원	내발산동 226-4 일원	3,838	-	3,83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	문화공원	가양동 765 일원	8,298	-	8,29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	문화공원	가양동 379-4 일원	2,574	-	2,57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	문화공원	마곡동 295-1 일원	3,090	-	3,09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5	문화공원	가양동 172-20 일원	2,582	-	2,58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3) 녹지  
(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179,417	71,648	107,531	238		
기정	계	연결녹지	-	177,559	70,956	106,603	-		
기정	1	연결녹지	공항동 1147-1 일원	6,902	6,902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2	연결녹지	공항동 1057 일원	8,904	8,90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연결녹지	공항동 976-1 일원	15,688	15,688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연결녹지	마곡동 382-2 일원	22,414	22,41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연결녹지	마곡동 374-1 일원	23,297	-	23,297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지하공공 보도시설 1 포함	
기정	6	연결녹지	가양동 409-6 일원	6,217	-	6,217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7	연결녹지	가양동 327-3 일원	5,518	-	5,51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8	연결녹지	가양동 294 일원	7,117	-	7,117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9	연결녹지	가양동 292-1 일원	2,565	-	2,56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0	연결녹지	가양동 182-1 일원	2,196	-	2,19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1	연결녹지	가양동 169 일원	1,721	-	1,721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2	연결녹지	가양동 166 일원	500	-	50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3	연결녹지	가양동 320-9 일원	2,462	-	2,46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4	연결녹지	가양동 363-3 일원	2,123	-	2,123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5	연결녹지	가양동 381-7 일원	3,582	-	3,58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6	연결녹지	가양동 962 일원	1,021	-	1,021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7	연결녹지	가양동 389-4 일원	2,028	-	2,02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8	연결녹지	가양동 378-2 일원	725	-	72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9	연결녹지	가양동 1108 일원	1,119	-	1,11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0	연결녹지	가양동 1043 일원	525	-	52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1	연결녹지	가양동 528 일원	3,778	-	3,77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2	연결녹지	가양동 808-1 일원	6,394	-	6,39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3	연결녹지	가양동 790-1 일원	895	-	89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4	연결녹지	가양동 415-6 일원	5,020	-	5,02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5	연결녹지	가양동 383-7 일원	3,811	-	3,811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6	연결녹지	가양동 948-1 일원	514	-	51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7	연결녹지	가양동 965-2 일원	2,268	-	2,268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8	연결녹지	가양동 967-3 일원	2,617	-	2,617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9	연결녹지	가양동 841 일원	526	-	526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30	연결녹지	내발산동 228-5 일원	561	-	561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1	연결녹지	내발산동 341 일원	1,685	-	1,68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2	연결녹지	내발산동 358-2 일원	1,555	-	1,55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3	연결녹지	외발산동 72 일원	9,064	9,06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4	연결녹지	내발산동 354-1 일원	4,722	4,722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5	연결녹지	내발산동 220 일원	2,044	-	2,04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36	연결녹지	내발산동 175 일원	1,645	-	1,645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7	연결녹지	공향동 516 일원	2,062	2,062	-	-	서고제2011-418호 (2011.12.29)	
기정	38	연결녹지	마곡동 323-5 일원	1,642	-	1,642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9	연결녹지	마곡동 327-98 일원	1,189	-	1,189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0	연결녹지	마곡동 324-14 일원	1,307	-	1,307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1	연결녹지	마곡동 323-5 일원	2,884	-	2,884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2	연결녹지	마곡동 308-5 일원	1,135	-	1,13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3	연결녹지	마곡동 298-3 일원	785	-	785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4	연결녹지	마곡동 244 일원	420	-	420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45	연결녹지	마곡동 252-1 일원	792	-	792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6	연결녹지	마곡동 253-6 일원	420	-	420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47	연결녹지	방화동 211-3 일원	883	883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48	연결녹지	방화동 209-2 일원	317	317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계	경관녹지	-	1,858	692	928	238	-	
기정	1	경관녹지	방화동 211-3 일원	79	79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2	경관녹지	마곡동 222-15 일원	369	-	36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경관녹지	방화동 241-5 일원	133	133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4	경관녹지	방화동 241-5 일원	480	480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5	경관녹지	내발산동 153-7 일원	559	-	559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경관녹지	가양동 259-28 일원	238	-	-	238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가) 열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24,140	-	-	24,140		
기정	1	열공급설비	마곡동 72일원	24,140	-	-	24,140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2) 전기공급설비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4,679	2,645	-	2,034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가양동 259-4일원	2,034	-	-	2,034	서고제1988-15호 (1988. 1. 9)	
기정	2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공항동 1250일원	2,645	2,645	-	-	서고제2011-418호 (2011.12.29)	

(3) 공동구  
 (가) 공동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km)	면적 (㎡)								
기정	총 계		-	-	-	2.66	23,553	1.16	9,307	1.50	14,246	-	-		
기정	1	공동구	공항동1151 일원	방화동225-1 일원	중로1-7, 중로1-17	1.16	9,307	1.16	9,307	-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2	공동구	가양동 265 일원	가양동 386-1 일원	대로3-2	1.05	9,933	-	-	1.05	9,933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3	공동구	가양동 415-3 일원	내발산동 187 일원	대로3-1, 대로3-2	0.45	4,312	-	-	0.45	4,312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	59,764	58,703	1,061	-		
기정	1	공공청사	유비쿼터스도 시 통합운영센터	공항동 1148 일원	528	528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2	공공청사	파출소	마곡동 362-3일원	759	759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3	공공청사	주민센터	방화동 257-7일원	947	947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공공청사	우체국	마곡동 363-1일원	1,061	1,061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공공청사	강서세무서	공항동 944일원	4,828	4,828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6	공공청사	출입국 관리소	공항동 972-3일원	16,885	16,885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공공청사	강서구청	가양동 478일원	18,942	18,942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8	공공청사	강서경찰서	방화동 257-7 일원	12,202	12,202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9	공공청사	파출소	공항동 1252-1일원	744	74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0	공공청사	주민센터	공항동 1249일원	744	74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1	공공청사	우체국	공항동 1222일원	1,063	1,063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12	공공청사	-	내발산동 181일원	1,061	-	1,061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2) 학교

(가)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	84,404	63,205	21,199	-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방화동 253-3 일원	10,921	10,921	-	-	서고제196호 (1982.5.14.)	세민 정보고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방화동 238-1 일원	16,752	16,752	-	-	서고제504호 (1988.6.4.)	송화초
기정	3	학교	중학교	방화동 207-1 일원	10,483	10,483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공항동 399 일원	11,554	11,554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5	학교	유치원	방화동 241-5 일원	1,500	1,500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공항동 1324 일원	11,995	11,995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내발산동 153-7 일원	11,282	-	11,282	-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시 (90.10.18)	가곡초
기정	8	학교	대학교	내발산동 156 일원	9,917	-	9,917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3)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1,700	1,700	-	-		
기정	1	사회복지시설	방화동 210-4일원	1,700	1,700	-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위치변경

마) 방재시설  
(1) 방수설비  
(가) 방수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8,548	2,368	-	6,180		
기정	1	방수설비	방화동 706-1일원	2,368	2,368	-	-	서고제1993-186호 (1993.6.18)	
기정	2	방수설비	마곡동 45-8일원	6,180	-	-	6,180	서고제2010-339호 (2010.9.30)	

(2) 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157,382	-	-	157,382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마곡동 32-18일원	107,382	-	-	107,382	서고제506호 (88.6.4)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마곡동 70-2일원	50,000	-	-	50,000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가)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정	총 계	-	-	33,360	-	33,360	-		
기정	1	종합의료 시설	내발산동 157일원	33,360	-	33,360	-	서고제2008-498호 (2008.12.30)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간선하수도)  
 (가) 하수도(간선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합계		1지구		2지구		3지구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기정	총 계	-	-	-	15,272	160,517	4,501	47,557	8,409	52,533	2,362	60,427		
기정	1	하수도	공항동 1147-1일원	마곡동 20-3일원	2,213	73,429	759	25,178	351	11,685	1,103	36,566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2	하수도	방화동 217-156일원	마곡동 396-1일원	881	6,612	881	6,612	-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3	하수도	내발산동 624일원	가양동 514일원	765	7,435	-	-	765	7,435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4	하수도	공항동 707-2일원	공항동 1147일원	451	4,767	451	4,767	-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5	하수도	공항동 303-4일원	공항동 1147-1일원	321	3,239	321	3,239	-	-	-	-	서고제2010-339호 (2010.9.30)	
기정	6	하수도	외발산동 67-1일원	공항동 1334일원	470	2,286	470	2,286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7	하수도	외발산동 56-2일원	가양동 598일원	1,081	3,563	101	210	980	3,353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8	하수도	가양동 494일원	가양동 494일원	262	550	-	-	262	550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9	하수도	공항동 1134일원	공항동 973일원	357	852	357	852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10	하수도	방화동 217-8일원	공항동 940일원	337	729	337	729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11	하수도	가양동 494일원	마곡동 69-20일원	1,915	34,995	-	-	935	12,975	980	22,020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2	하수도	가양동 475일원	가양동 576일원	261	677	-	-	261	677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3	하수도	방화동 186-2일원	방화동 225-1일원	314	673	314	673	-	-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14	하수도	마곡동 278-6일원	마곡동 294-1일원	436	915	-	-	436	915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15	하수도	내발산동 162일원	가양동 401-5일원	1,679	6,545	-	-	1,679	6,545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6	하수도	가양동 1070일원	가양동 350일원	465	1,109	-	-	465	1,109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7	하수도	가양동 967-4일원	가양동 350일원	505	1,291	-	-	505	1,291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18	하수도	마곡동 382-3일원	마곡동 240-1일원	1,522	5,860	-	-	1,392	5,093	130	767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19	하수도	공항동 2-105일원	가양동 458일원	510	3,011	510	3,011	-	-	-	-	서고제2012-270호 (2012.10.11)	
기정	20	하수도	가양동 350일원	가양동 679일원	170	1,228	-	-	21	154	149	1,074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기정	21	하수도	가양동 306-2일원	가양동 350일원	357	751	-	-	357	751	-	-	서고제2013-248호 (2013.07.25)	

- 5)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마곡 도시개발구역내 획지계획 폐지(필지계획으로 대체 계획)

(1) 단독주택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R1	1,592	기정	R1	1,592	
	기정	R2	424	기정	R2	424	
	기정	R3	1,536	기정	R3	1,536	
	기정	R4	559	기정	R4	559	
	계		4,111	기정	-	4,111	
2지구	-		-	-	-	-	
3지구	-		-	-	-	-	

(2) 공동주택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A1	12,988	기정	A1	12,988	
	기정	A2	23,228	기정	A2	23,228	
	기정	A3	20,523	기정	A3	20,523	
	기정	A4	24,975	기정	A4	24,975	
	기정	A5	27,708	기정	A5	27,708	
	기정	A6	75,041	기정	A6	75,041	
	기정	AC7	56,336	기정	AC7	56,336	
	기정	A8	28,671	기정	A8	28,671	
	기정	AC9	69,122	기정	AC9	69,122	
	기정	AC10-1	23,212	기정	AC10-1	23,212	
	기정	AC10-2	23,057	기정	AC10-2	23,057	
	기정	AC11	14,864	기정	AC11	14,864	
	기정	AC12	15,263	기정	AC12	15,263	
	기정	A13	58,827	기정	A13	58,827	
	기정	A14	62,517	기정	A14	62,517	
	기정	A15	54,719	기정	A15	54,719	
계		591,051	기정	-	591,051		
2지구	-		-	-	-	-	
3지구	-		-	-	-	-	

(3) 상업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B1	3005	기정	B1	3,005
	기정	B2	4,713	기정	B2-1	2,344
				기정	B2-2	2,369
	기정	B3	10,341	기정	B3	2,623
	계	10,341	기정	-	10,341	
2지구	기정	B4	17,063	기정	B4-1	4,076
				기정	B4-2	4,259
				기정	B4-3	8,728
	기정	B5	6,830	기정	B5-1	3,610
				기정	B5-2	3,220
	기정	B6	6,233	기정	B6	6,233
	기정	B7	20,368	기정	B7-1	2,041
				기정	B7-2	3,093
				기정	B7-3	4,179
				기정	B7-4	5,810
				기정	B7-5	1,776
				기정	B7-6	1,780
				기정	B7-7	1,689
	기정	B8	10,493	기정	B8-1	1,601
				기정	B8-2	1,635
				기정	B8-3	1,914
				기정	B8-4	1,609
				기정	B8-5	1,789
				기정	B8-6	1,945
	기정	B9	4,327	기정	B9-1	1,480
기정				B9-2	2,847	
기정	B10	3,251	기정	B10-1	1,765	
			기정	B10-2	1,486	
기정	B11	3,908	기정	B11-1	1,963	
			기정	B11-2	1,945	
	계	72,473	기정	-	72,473	
3지구	-	-	-	-	-	

(4) 업무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		-	-			
2지구	기정	C1	10,392	기정	C1-1	1,755	
				기정	C1-2	1,676	
				기정	C1-3	1,766	
				기정	C1-4	1,757	
				기정	C1-5	1,675	
				기정	C1-6	1,763	
	기정	C2	13,875	기정	C2-1	2,296	
				기정	C2-2	2,328	
				기정	C2-3	2,316	
				기정	C2-4	2,312	
				기정	C2-5	2,328	
				기정	C2-6	2,295	
	기정	C3	14,271	기정	C3-1	2,389	
				기정	C3-2	2,351	
				기정	C3-3	2,399	
				기정	C3-4	2,393	
				기정	C3-5	2,355	
				기정	C3-6	2,384	
	기정	C4	9,799	기정	C4-1	1,110	
				기정	C4-2	1,131	
				기정	C4-3	1,101	
기정				C4-4	1,332		
기정				C4-5	1,530		
기정				C4-6	1,752		
기정				C4-7	1,843		
기정	C5	8,777	기정	C5-1	1,833		
			기정	C5-2	1,703		
			기정	C5-3	1,698		
			기정	C5-4	1,705		
			기정	C5-5	1,838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C6	9,463	기정	C6-1	2,059	
				기정	C6-2	2,013	
				기정	C6-3	2,675	
				기정	C6-4	2,716	
	기정	C7	9,327	기정	C7-1	2,335	
				기정	C7-2	2,272	
				기정	C7-3	2,309	
				기정	C7-4	2,411	
	기정	C8	10,299	기정	C8-1	2,946	
				기정	C8-2	2,569	
				기정	C8-3	2,296	
				기정	C8-4	2,488	
	기정	C9	11,470	기정	C9-1	2,626	
				기정	C9-2	2,680	
				기정	C9-3	2,013	
				기정	C9-4	2,033	
				기정	C9-5	2,118	
	기정	C10	11,041	기정	C10-1	2,278	
				기정	C10-2	2,283	
				기정	C10-3	2,082	
				기정	C10-4	2,069	
				기정	C10-5	2,329	
	기정	C11	8,709	기정	C11-1	2,928	
				기정	C11-2	2,859	
기정				C11-3	2,922		
기정	C12	20,827	기정	C12-1	1,366		
			기정	C12-2	1,290		
			기정	C12-3	1,290		
			기정	C12-4	1,290		
			기정	C12-5	1,281		
			기정	C12-6	1,281		
			기정	C12-7	1,282		
			기정	C12-8	1,258		
			기정	C12-9	1,390		
			기정	C12-10	1,315		
			기정	C12-11	1,310		
			기정	C12-12	1,306		
			기정	C12-13	1,292		
기정	C12-14	1,287					
기정	C12-15	1,283					
기정	C12-16	1,30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C13	19,943	기정	C13-1	1,240	
				기정	C13-2	1,204	
				기정	C13-3	1,204	
				기정	C13-4	1,204	
				기정	C13-5	1,264	
				기정	C13-6	1,264	
				기정	C13-7	1,265	
				기정	C13-8	1,485	
				기정	C13-9	1,172	
				기정	C13-10	1,184	
				기정	C13-11	1,180	
				기정	C13-12	1,175	
				기정	C13-13	1,230	
				기정	C13-14	1,225	
				기정	C13-15	1,221	
	기정	C14	6,997	기정	C14-1	791	
				기정	C14-2	1,281	
				기정	C14-3	1,227	
				기정	C14-4	1,227	
				기정	C14-5	1,226	
				기정	C14-6	1,245	
	기정	C15	7,956	기정	C15-1	1,467	
				기정	C15-2	1,351	
				기정	C15-3	1,272	
				기정	C15-4	1,267	
				기정	C15-5	1,269	
				기정	C15-6	1,330	
	기정	C16	5,700	기정	C16-1	1,155	
기정				C16-2	1,140		
기정				C16-3	1,137		
기정				C16-4	1,132		
기정				C16-5	1,136		
기정	C17	5,226	기정	C17-1	1,345		
			기정	C17-2	1,285		
			기정	C17-3	1,259		
			기정	C17-4	1,337		
2지구	기정	CP1	31,980	기정	CP1-1	14,554	
				기정	CP1-2	17,426	
	기정	CP2	20,812	기정	CP2-1	6,357	
				기정	CP2-2	14,455	
	기정	CP3	30,085	기정	CP3-1	15,238	
				기정	CP3-2	14,847	
	기정	CP4	39,050	기정	CP4-1	19,796	
				기정	CP4-2	19,254	
	계		305,999	기정	-	305,999	
3지구	-	-	-	-	-	-	

(5) 산업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1	15,385	기정	D1-1	1,663
				기정	D1-2	4,401
				기정	D1-3	4,503
				기정	D1-4	4,818
	기정	D2	11,868	기정	D2-1	3,010
				기정	D2-2	2,924
				기정	D2-3	3,010
				기정	D2-4	2,924
	기정	D3	15,639	기정	D3-1	4,434
				기정	D3-2	3,826
				기정	D3-3	7,379
	기정	D4	13,078	기정	D4-1	2,150
				기정	D4-2	2,163
				기정	D4-3	2,226
				기정	D4-4	2,150
				기정	D4-5	2,163
				기정	D4-6	2,226
	기정	D5	17,105	기정	D5-1	2,500
				기정	D5-2	3,120
				기정	D5-3	3,386
				기정	D5-4	8,099
	기정	D6	15,005	기정	D6-1	4,389
				기정	D6-2	4,837
				기정	D6-3	5,779
	기정	D7	16,209	기정	D7-1	3,906
				기정	D7-2	3,482
				기정	D7-3	8,821
	기정	D8	8,318	기정	D8-1	1,402
기정				D8-2	1,403	
기정				D8-3	1,404	
기정				D8-4	1,370	
기정				D8-5	1,370	
기정				D8-6	1,369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9	30,512	기정	D9-1	7,853	
				기정	D9-2	7,490	
				기정	D9-3	7,485	
				기정	D9-4	4,079	
				기정	D9-5	3,605	
	기정	D10	16,089	기정	D10-1	1,197	
				기정	D10-2	1,072	
				기정	D10-3	1,073	
				기정	D10-4	1,074	
				기정	D10-5	1,074	
				기정	D10-6	1,075	
				기정	D10-7	1,076	
				기정	D10-8	1,128	
				기정	D10-10	1,041	
				기정	D10-11	1,040	
				기정	D10-12	1,039	
				기정	D10-13	1,039	
	기정	D11	14,511	기정	D11-1	4,560	
				기정	D11-2	4,637	
				기정	D11-3	2,938	
기정				D11-4	2,37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12	10,528	기정	D12-1	5,470	
				기정	D12-2	5,058	
	기정	D13	15,018	기정	D13-1	6,514	
				기정	D13-2	8,504	
	기정	D14	7,665	기정	D14-1	1,313	
				기정	D14-2	1,277	
				기정	D14-3	2,500	
				기정	D14-4	1,298	
				기정	D14-5	1,277	
	기정	D15	9,317	기정	D15-1	2,206	
				기정	D15-2	2,565	
				기정	D15-3	2,083	
				기정	D15-4	2,463	
	기정	D16	49,722	기정	D16-1	8,796	
				기정	D16-2	8,495	
				기정	D16-3	9,114	
				기정	D16-4	4,915	
				기정	D16-5	4,946	
				기정	D16-6	4,951	
				기정	D16-7	4,339	
				기정	D16-8	4,166	
	기정	D17	15,036	기정	D17-1	1,235	
				기정	D17-2	1,251	
				기정	D17-3	1,250	
				기정	D17-4	1,196	
				기정	D17-5	1,070	
				기정	D17-6	1,184	
				기정	D17-7	951	
				기정	D17-8	1,045	
				기정	D17-9	1,061	
				기정	D17-10	1,061	
				기정	D17-11	929	
				기정	D17-12	799	
				기정	D17-13	1,054	
				기정	D17-14	950	
	기정	D18	21,765	기정	D18-1	2,257	
				기정	D18-2	2,761	
				기정	D18-3	2,933	
				기정	D18-4	2,931	
				기정	D18-5	2,271	
기정				D18-6	2,797		
기정				D18-7	2,900		
기정				D18-8	2,915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19	18,250	기정	D19-1	6,770
				기정	D19-2	4,098
				기정	D19-3	3,664
				기정	D19-4	3,718
	기정	D20	8,722	기정	D20-2	1,045
				기정	D20-3	1,045
				기정	D20-4	1,046
				기정	D20-5	1,225
				기정	D20-7	1,045
				기정	D20-8	1,045
				기정	D20-9	1,046
				기정	D20-10	1,225
	기정	D21	22,312	기정	D21-1	2,966
				기정	D21-2	2,982
				기정	D21-3	2,982
				기정	D21-4	2,967
				기정	D21-5	2,979
				기정	D21-6	2,747
				기정	D21-7	2,487
				기정	D21-8	2,202
	기정	D22	21,618	기정	D22-1	6,688
				기정	D22-2	6,571
				기정	D22-3	4,286
				기정	D22-4	4,073
	기정	D23	7,848	기정	D23-1	1,387
				기정	D23-2	1,268
				기정	D23-3	1,269
				기정	D23-4	1,387
				기정	D23-5	1,268
				기정	D23-6	1,269
	기정	D24	13,290	기정	D24-1	2,028
				기정	D24-2	2,045
기정				D24-3	2,065	
기정				D24-4	2,597	
기정				D24-5	2,385	
기정				D24-6	2,170	
기정	D25	20,895	기정	D25-1	6,659	
			기정	D25-2	6,309	
			기정	D25-3	4,072	
			기정	D25-4	3,855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26	4,542	기정	D26-1	1,146	
				기정	D26-2	1,122	
				기정	D26-3	1,145	
				기정	D26-4	1,129	
	기정	D27	10,239	기정	D27-1	1,662	
				기정	D27-2	1,662	
				기정	D27-3	1,720	
				기정	D27-4	1,937	
				기정	D27-5	1,732	
				기정	D27-6	1,526	
	기정	D28	17,007	기정	D28-1	9,900	
				기정	D28-2	3,528	
				기정	D28-3	3,579	
	기정	D29	7,520	기정	D29-1	3,025	
				기정	D29-2	2,233	
				기정	D29-3	2,262	
	기정	D30	4,906	기정	D30-1	2,468	
				기정	D30-2	2,438	
	기정	D31	5,591	기정	D31-1	2,991	
				기정	D31-2	2,600	
	기정	D32	16,209	기정	D32-1	2,507	
				기정	D32-2	1,240	
				기정	D32-3	1,377	
				기정	D32-4	1,371	
				기정	D32-5	1,364	
				기정	D32-6	1,453	
				기정	D32-7	1,479	
				기정	D32-8	1,388	
				기정	D32-9	1,389	
				기정	D32-10	1,389	
				기정	D32-11	1,252	
	기정	D33	12,477	기정	D33-1	1,335	
기정				D33-2	1,374		
기정				D33-3	1,368		
기정				D33-4	1,361		
기정				D33-6	1,397		
기정				D33-7	1,422		
기정				D33-8	1,422		
기정				D33-9	1,422		
			기정	D33-10	1,376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34	28,933	기정	D34-1	3,508	
				기정	D34-2	3,510	
				기정	D34-3	3,510	
				기정	D34-4	3,378	
				기정	D34-5	3,260	
				기정	D34-6	3,459	
				기정	D34-7	3,948	
				기정	D34-8	4,360	
	기정	D35	21,147	기정	D35-1	2,684	
				기정	D35-2	2,706	
				기정	D35-3	2,703	
				기정	D35-4	2,643	
				기정	D35-5	2,569	
				기정	D35-6	2,615	
				기정	D35-7	2,618	
				기정	D35-8	2,609	
	기정	D36	20,539	기정	D36-1	3,600	
				기정	D36-2	3,879	
				기정	D36-3	6,665	
				기정	D36-4	6,395	
	기정	D37	14,900	기정	D37-1	5,105	
				기정	D37-2	4,840	
				기정	D37-3	4,955	
	기정	D38	5,884	기정	D38	5,884	
	기정	DP1	11,714	기정	DP1	11,714	
	기정	DP2	68,216	기정	DP2	68,216	
	기정	DP3	65,358	기정	DP3	65,358	
		계	730,887	기정	-	730,887	
3지구	-	-	-	-	-		

(6) 지원시설용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s1	7,310	기정	Ds1-1	1,482	
				기정	Ds1-2	1,400	
				기정	Ds1-3	1,487	
				기정	Ds1-4	1,470	
				기정	Ds1-5	1,471	
	기정	Ds2	10,439	기정	Ds2-1	1,506	
				기정	Ds2-2	1,506	
				기정	Ds2-3	1,602	
				기정	Ds2-4	1,435	
				기정	Ds2-5	1,435	
				기정	Ds2-6	1,433	
				기정	Ds2-7	1,522	
	기정	Ds3	7,326	기정	Ds3-1	3,772	
				기정	Ds3-2	3,554	
	기정	Ds4	6,923	기정	Ds4-1	3,419	
				기정	Ds4-2	3,504	
	기정	Ds5	4,553	기정	Ds5-1	1,224	
				기정	Ds5-2	1,013	
				기정	Ds5-3	1,147	
				기정	Ds5-4	1,169	
기정	Ds6	5,513	기정	Ds6-1	1,237		
			기정	Ds6-2	1,171		
			기정	Ds6-3	1,073		
			기정	Ds6-4	1,012		
			기정	Ds6-5	1,020		
기정	Ds7	949	기정	Ds7	949		
기정	Ds8	1,783	기정	Ds8	1,783		
기정	Ds9	1,916	기정	Ds9	1,916		
기정	Ds10	2,515	기정	Ds10	2,515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2지구	기정	Ds11	4,688	기정	Ds11-1	945	
				기정	Ds11-2	934	
				기정	Ds11-3	934	
				기정	Ds11-4	934	
				기정	Ds11-5	941	
	기정	Ds12	3,101	기정	Ds12-1	767	
				기정	Ds12-2	776	
				기정	Ds12-3	776	
				기정	Ds12-4	782	
	기정	Ds13	3,632	기정	Ds13	3,632	
	기정	Ds14	6,474	기정	Ds14-1	918	
				기정	Ds14-2	934	
				기정	Ds14-3	934	
				기정	Ds14-4	972	
				기정	Ds14-5	968	
				기정	Ds14-6	830	
				기정	Ds14-7	918	
	기정	Ds15	5,894	기정	Ds15-1	969	
				기정	Ds15-2	984	
				기정	Ds15-3	984	
				기정	Ds15-4	984	
				기정	Ds15-5	985	
				기정	Ds15-6	988	
	기정	Ds16	4,276	기정	Ds16-1	857	
				기정	Ds16-2	858	
				기정	Ds16-3	858	
				기정	Ds16-4	858	
				기정	Ds16-5	845	
기정	Ds17	4,034	기정	Ds17-1	799		
			기정	Ds17-2	812		
			기정	Ds17-3	812		
			기정	Ds17-4	812		
			기정	Ds17-5	799		
	계	81,326	기정	-	81,326		
3지구	-	-	-	-	-		

(7) 종합의료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		-	-		-	
2지구	기정	E1	33,360	기정	E1	33,360	
	계		33,360	기정	-	33,360	
3지구	-		-	-	-	-	

(8) 공공청사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기정	F1	528	기정	F1	528	유비쿼터스 도시 통합운영센터
	기정	F2	759	기정	F2	759	파출소
	기정	F3	947	기정	F3	947	동사무소
	기정	F4	1,061	기정	F4	1,061	우체국
	기정	F5	4,828	기정	F5	4,828	강서세무서
	기정	F6	16,885	기정	F6	16,885	출입국관리소
	기정	F7	18,942	기정	F7	18,942	강서구청
	기정	F8	12,202	기정	F8	12,202	강서경찰서
	기정	F9	744	기정	F9	744	파출소
	기정	F10	744	기정	F10	744	동사무소
	기정	F11	1,063	기정	F11	1,063	우체국
	계		58,703	기정	-	58,703	
2지구	기정	F12	1,061	기정	F12	1,061	
	계		1,061	기정	-	1,061	
3지구	-		-	-	-	-	

(9) 학교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G1	10,921	기정	G1	10,921	고등학교
	기정	G2	16,752	기정	G2	16,752	초등학교
	기정	G3	10,483	기정	G3	10,483	중학교
	기정	G4	11,554	기정	G4	11,554	초등학교
	기정	G5	1,500	기정	G5	1,500	유치원
	기정	G6	11,995	기정	G6	11,995	초등학교
	계		63,205	기정	-	63,205	
2지구	기정	G7	11,282	기정	G7	11,282	초등학교
	기정	G8	9,917	기정	G8	9,917	대학교
	계		21,199	기정	-	21,199	
3지구	-		-	-	-		

(10) 사회복지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H1	1,700	기정	H1	1,700	
	계		1,700	기정	-	1,700	
2지구	-		-	-	-	-	
3지구	-		-	-	-	-	

(11) 주차장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I1	2,835	기정	I1	2,835	
	기정	I2	2,636	기정	I2	2,636	
	계		5,471	기정	-	5,471	
2지구	기정	I3	1,163	기정	I3	1,163	
	기정	I4	2,206	기정	I4	2,206	
	기정	I5	2,064	기정	I5	2,064	
	기정	I6	2,344	기정	I6	2,344	
	기정	I7	7,584	기정	I7-1	1,500	
				기정	I7-2	6,084	
	기정	I8	3,445	기정	I8	3,445	
	기정	I9	1,343	기정	I9	1,343	
계		20,149	기정	-	20,149		
3지구	-		-	-	-		

(12) 열공급설비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		-	-	-	-	
2지구	-		-	-	-	-	
3지구	기정	J1	24,140	기정	J1	24,140	
	계		24,140	기정	-	24,140	

(13) 전기공급설비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기정	K2	2,645	기정	K2		
	계		2,645	기정	-		
2지구	-		-	-			
3지구	기정	K1	2,034	기정	K1		
	계		2,034	기정	-		

(14) 방수설비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기정	M1	2,368	기정	M1	2,368	
	계		2,368	기정	-	2,368	
2지구	-		-	-	-	-	
3지구	기정	M2	6,180	기정	M2	6,180	
	계		6,180	기정	-	6,180	

(15) 종교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기정	N1	667	기정	N1	667	
	기정	N2	650	기정	N2	650	
	기정	N3	979	기정	N3	979	
	기정	N4	651	기정	N4	651	
	계		2,947	기정	-	2,947	
2지구	-		-	-		-	
3지구	-		-	-		-	

(1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P1	800	기정	P1	800	주유소
	기정	P2	800	기정	P2	800	
	계		1,600	기정	-	1,600	
2지구	기정	P3	800	기정	P3	800	
	기정	P4	800	기정	P4	800	
	계		1,600	기정	-	1,600	
3지구	-		-	-	-	-	
1지구	-		-	-	-	-	
2지구	기정	Q2	2,000	기정	Q2	2,000	가스충전소
	계		2,000	기정	-	2,000	
3지구	기정	Q1	2,000	기정	Q1	2,000	
	계		2,000	기정	-	2,000	

(17) 편익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1지구	기정	S1	13,390	기정	S1	13,390	
	기정	S2	6,709	기정	S2	6,709	
	기정	S3	6,473	기정	S3	6,473	
	기정	S4	2,422	기정	S4	2,422	
	기정	S6	5,277	기정	S6	5,277	
	계		34,271	기정	-	34,271	
2지구	기정	S7	7,873	기정	S7-1	2,689	
				기정	S7-2	2,592	
				기정	S7-3	2,592	
	기정	S8	4,878	기정	S8-1	2,429	
				기정	S8-2	2,449	
계		12,751	기정	-	12,751		
3지구	기정	S5	11,284	기정	S5	11,284	
	계		11,284	기정	-	11,284	

(18) 택시차고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		-	-		-	
2지구	기정	T1	5,021	기정	T1-1	1,386	
				기정	T1-2	1,307	
				기정	T1-3	1,449	
				기정	T1-4	879	
	기정	T2	4,984	기정	T2-1	1,527	
				기정	T2-2	1,400	
				기정	T2-3	2,057	
계		10,005	기정	-	10,005		
3지구	-		-	-	-		

(19) 보육시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필 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1지구	-		-	-		-	
2지구	기정	V1	330	기정	V1	330	
	기정	V2	330	기정	V2	330	
	기정	V3	330	기정	V3	330	
	계		990	기정	-	990	
3지구	-		-	-	-	-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	R1~R4	1지구	R1~R4
		2지구	-
		3지구	-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	R1~R4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다가구 : 3가구이내)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이하
		배치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소1-8, 소2-25, 소2-26, 소3-6) : 1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47, 연결녹지48) : 1m</li> <li>- 경관녹지변(경관녹지1) : 1m</li> <li>- 구역경계변 : 1m</li> </ul> </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주)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층수 산정시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산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A6, A8, A13~ A15	1지구	A1~A6, A8, A13~A15
		2지구	-
		3지구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li> <li>•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A6, A8, A13~ A15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건폐율은 &lt;별표1&gt;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용적률은 &lt;별표1&gt;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li> </ul>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lt;별표1&gt;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한다.</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li> <li>중정형아파트 권장구간 : A1, A2, A3, A6, A8, A13~A15</li> <li>통경 구간 -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6, A13~A15 : 10m</li> </ul> </li> <li>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 A3, A5, A6, A13 : 20m</li> <li>- A14~A15 : 10m</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광3-19, 대2-2, 중2-17, 중2-19, 중2-20) : 5m</li> <li>- 도로변(광3-19 대1-1, 중1-1, 중1-7, 중1-11, 중1-17, 중1-18, 중2-2, 중2-3, 중2-4, 중2-5, 중2-8, 중2-15, 중2-34)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4 : 3m, 연결녹지37: 5m)</li> <li>- 공원변(근린공원2, 어린이공원4, 어린이공원6) : 3m</li> <li>- 학교변((학교2) : 5m, (학교3, 학교4) : 3m)</li> </ul> </li> <li>외곽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2 : 5m이내</li> <li>- A4, A5, A8 : 5m</li> <li>- A13 : 10m, 5m</li> </ul> </li> <li>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1 : 5m이내</li> <li>- A13~A15 : 5m</li> </ul> </li> </ul>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통형구조를 권장한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C	AC7, AC9~ AC12	1지구	AC7, AC9~AC12
		2지구	-
		3지구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한함)</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li> <li>• 판매시설(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li> <li>• 교육연구시설</li> <li>• 노유자시설</li> <li>•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업무시설</li> </ul> 주) 주거와 주거외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상업용도의 비율이 10%이상으로 한다 ※ 상업용도 :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준주거지역(AC지역)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한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와 주거외 용도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3층(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까지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탐상형 권장구간 : AC9, AC10-1, AC10-2, AC11, AC12</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C	AC7, AC9~ AC12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광3-19, 광3-16, 대2-2, 중2-17, 중2-18) : 5m</li> <li>- 도로변(중1-7, 중1-8, 중1-11, 중1-17, 중1-18) : 3m</li> <li>- 연결녹지선, 공원변(연결녹지2, 연결녹지4, 근린공원2) : 3m</li> </ul> </li> <li>공공보행통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7 : 10m</li> <li>- AC10-1, AC10-2 : 5m</li> <li>- AC9 : 15m</li> </ul> </li> <li>공개공지 : AC9</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통형구조를 권장한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별표 1 > 공동주택용지의 규모·가구수·건폐율·용적률·세대수 <기정>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합계	591,051	12,015		-	-
A1	12,988	소 계	237	230	50
		60㎡ 이하	130		
		60㎡ 초과 ~85㎡ 이하	107		
		85㎡ 초과	-		
A2	23,228	소 계	408	230	50
		60㎡ 이하	183		
		60㎡ 초과 ~85㎡ 이하	129		
		85㎡ 초과	96		
A3	20,523	소 계	315	230	50
		60㎡ 이하	153		
		60㎡ 초과 ~85㎡ 이하	72		
		85㎡ 초과	90		

도면표시	면적(m <sup>2</sup> )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A4	24,975	소 계	420	230	50
		60m <sup>2</sup> 이하	258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78		
		85m <sup>2</sup> 초과	84		
A5	27,708	소 계	439	230	50
		60m <sup>2</sup> 이하	103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137		
		85m <sup>2</sup> 초과	199		
A6	75,041	소 계	1,466	230	50
		60m <sup>2</sup> 이하	675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588		
		85m <sup>2</sup> 초과	203		
AC7	56,336	소 계	1,004	300	60
		60m <sup>2</sup> 이하	191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325		
		85m <sup>2</sup> 초과	488		
A8	28,671	소 계	531	230	50
		60m <sup>2</sup> 이하	345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186		
		85m <sup>2</sup> 초과	-		
AC9	69,122	소 계	1,547	300	60
		60m <sup>2</sup> 이하	-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1,547		
		85m <sup>2</sup> 초과	-		
AC10-1	23,212	소 계	550	300	60
		60m <sup>2</sup> 이하	492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58		
		85m <sup>2</sup> 초과	-		
AC10-2	23,057	소 계	577	300	60
		60m <sup>2</sup> 이하	534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43		
		85m <sup>2</sup> 초과	-		
AC11	14,864	소 계	347	300	60
		60m <sup>2</sup> 이하	295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52		
		85m <sup>2</sup> 초과	-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AC12	15,263	소 계	363	300	60
		60㎡ 이하	319		
		60㎡ 초과 ~85㎡ 이하	44		
		85㎡ 초과	-		
A13	58,827	소 계	1,370	230	50
		60㎡ 이하	999		
		60㎡ 초과 ~85㎡ 이하	371		
		85㎡ 초과	-		
A14	62,517	소 계	1,270	230	50
		60㎡ 이하	582		
		60㎡ 초과 ~85㎡ 이하	600		
		85㎡ 초과	88		
A15	54,719	소 계	1,171	230	50
		60㎡ 이하	729		
		60㎡ 초과 ~85㎡ 이하	378		
		85㎡ 초과	64		

주)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별표 1 > 공동주택용지의 규모·가구수·건폐율·용적률·세대수 <변경>

도면표시	면 적(㎡)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합계	591,051	12,015		-	-
A1	12,988	소 계	237	230	50
		60㎡ 이하	130		
		60㎡ 초과 ~85㎡ 이하	107		
		85㎡ 초과	-		
A2	23,228	소 계	408	230	50
		60㎡ 이하	183		
		60㎡ 초과 ~85㎡ 이하	129		
		85㎡ 초과	96		
A3	20,523	소 계	315	230	50
		60㎡ 이하	153		
		60㎡ 초과 ~85㎡ 이하	72		
		85㎡ 초과	90		

도면표시	면 적(m <sup>2</sup> )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A4	24,975	소 계	420	230	50
		60m <sup>2</sup> 이하	258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78		
		85m <sup>2</sup> 초과	84		
A5	27,708	소 계	439	230	50
		60m <sup>2</sup> 이하	103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137		
		85m <sup>2</sup> 초과	199		
A6	75,041	소 계	1,466	230	50
		60m <sup>2</sup> 이하	675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588		
		85m <sup>2</sup> 초과	203		
AC7	56,336	소 계	1,004	300	60
		60m <sup>2</sup> 이하	191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325		
		85m <sup>2</sup> 초과	488		
A8	28,671	소 계	531	230	50
		60m <sup>2</sup> 이하	345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186		
		85m <sup>2</sup> 초과	-		
AC9	69,122	소 계	1,597	300	60
		60m <sup>2</sup> 이하	1,000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597		
		85m <sup>2</sup> 초과	-		
AC10-1	23,212	소 계	550	300	60
		60m <sup>2</sup> 이하	492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58		
		85m <sup>2</sup> 초과	-		
AC10-2	23,057	소 계	577	300	60
		60m <sup>2</sup> 이하	534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43		
		85m <sup>2</sup> 초과	-		

도면표시	면적(m <sup>2</sup> )	건설호수(호)		용적률(%)	건폐율(%)
AC11	14,864	소 계	347	300	60
		60m <sup>2</sup> 이하	295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52		
		85m <sup>2</sup> 초과	-		
AC12	15,263	소 계	363	300	60
		60m <sup>2</sup> 이하	319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44		
		85m <sup>2</sup> 초과	-		
A13	58,827	소 계	1,320	230	50
		60m <sup>2</sup> 이하	500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820		
		85m <sup>2</sup> 초과	-		
A14	62,517	소 계	1,270	230	50
		60m <sup>2</sup> 이하	582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600		
		85m <sup>2</sup> 초과	88		
A15	54,719	소 계	1,171	230	50
		60m <sup>2</sup> 이하	729		
		60m <sup>2</sup> 초과 ~85m <sup>2</sup> 이하	378		
		85m <sup>2</sup> 초과	64		

주)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D DP	D1~D38 DP1~DP3	1지구	-
		2지구	D1~D38, DP1~DP3
		3지구	-
		지정용도	• 『마곡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층배치구간(D2-2, D2-4, D3-2, D4-1, D4-4, D5-1, D7-3, D8-3, D8-6, D9-1, D10-1, D13-2, D22-2, D22-4, D23-3, D23-6, D24-3, D24-6, D25-1, D25-3, D27-1, D27-4, D31, DP2, DP3): 10m</li> <li>부속시설은 가로변·연결녹지 변 및 공공보행통로 변에 배치한다.</li> <li>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li> <li>산업시설용지 내 보행활성화 용도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8조”를 따른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대1-1, 대3-2, 대2-41, 대3-1, 중2-16, 중2-21, 중2-22, 중3-43, 중3-44): 5m</li> <li>- 도로변(중1-1, 중1-16, 중1-30, 중1-31, 중2-25, 중2-26, 중2-28, 중2-30, 중2-31, 중2-32, 중2-33, 중3-10, 중3-11, 중3-12, 중3-13, 중3-14, 중3-15, 중3-16, 중3-17, 중3-19, 중3-20, 중3-21, 중3-22, 중3-23, 중3-24, 중3-25, 중3-27, 중3-28, 중3-29, 중3-30, 중3-31, 중3-32, 중3-33, 중3-39, 중3-40, 중3-42)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6, 연결녹지7~연결녹지9, 연결녹지16~연결녹지19, 연결녹지24~연결녹지26, 연결녹지42~연결녹지43, 연결녹지45) : 3m</li> <li>- 공원변(문화공원1, 문화공원2, 문화공원3, 문화공원4, 문화공원5) : 3m</li> <li>- 공공보행통로변(D7-3, D9-1, DP2, DP3) : 3m</li> <li>- 공공보행통로변(D9-2, D9-3, D10-4, D10-5, D10-12, D10-13, D32-2, D32-3, D32-10, D32-11)</li> <li>- 인접대지경계(V1, V2, V3) : 3m</li> </ul> </li> <li>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12, D35-4, D35-5, D37-3 : 5m</li> </ul> </li> <li>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7-3 : 12m</li> <li>- D9-2, D9-3, D10-4, D10-5, D10-12, D10-13, D32-2, D32-3, D32-10, D32-11 : 3m</li> <li>- DP2, DP3 : 6m</li> </ul> </li> <li>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3-3, D5-4, D7-3, D9-1, D9-2, D9-3, D12-1, D16-3, D19-1, D22-1, D22-2, D25-1, D25-2, D28-1, D36-4, D37-1, DP1, DP2, DP3</li> </ul> </li> <li>저층부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1-4, D3-3, D5-4, D6-1, D7-1, D7-3, D9-1, D9-2, D9-3, D9-4, D11-1 : 5m</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li>DP2-DP3의 건축물 배치 시 종로2-26과 연접한 연결녹지축에서 중앙공원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단, 연결녹지6의 위치이동 등 변경 시 중앙공원으로의 시각적 개방감 및 보행연계성을 고려한 건축물을 배치한다.</li> </ul>

(4) 상업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	B1~B11	1지구	B1~B3
		2지구	B4~B11
		3지구	-
		허용용도 B1~B3 (주거지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미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li> <li>판매시설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단, 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li> <li>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교육연구시설</li> <li>노유자시설</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li> </ul>
		B4~B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허용도 이외의 용도</li> </ul>
		B1~B3 (주거지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불허용도 B4~B7, B9, (역세권 및 간선가로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 공동주택</li> <li>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미술소, 옥외골프연습장</li> <li>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li> <li>종교시설</li> <li>판매시설(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li> <li>운수시설</li> <li>수련시설</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li> <li>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 제외)</li> <li>공장, 창고시설</li> <li>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자동차관련시설</li> <li>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	B1~B11	불허용도	B4~B7, B9, (역세권 및 간선가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위락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B8, B10, B11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공동주택</li>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li> <li>• 판매시설(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li> <li>• 공장</li> <li>•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li> <li>• 저층 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8-1, B8-4 : 10m</li> </ul> </li> <li>• 지하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3 : 9호선 마곡나루역과 연결</li> </ul> </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대1-1, 광3-19, 대2-2, 대2-38, 대2-41): 5m</li> <li>- 도로변(대2-2, 중1-7, 중1-16, 중1-32, 중2-5, 중2-24, 중2-25, 중2-26, 중2-28, 중2-29, 중2-33, 중3-12, 중3-20, 중3-34, 중3-36, 소3-2)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10, 연결녹지12, 연결녹지16, 연결녹지22, 연결녹지27) : 3m</li> <li>- 공공보행통로변(B7-2, B7-3)</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B	B1~B11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층부 건축한계선 - B6, B10 : 6m</li> <li>공개공지 - B4-2, B4-3, B5-1, B6, B7-3~B7-7, B9</li> <li>저층부 건축지정선 - B4-2, B4-3, B6 : 5m</li> <li>- B10-1 : 3m</li> <li>공공보행통로 - B7-2, B7-3 : 3m</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p>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p> <p>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p>			

(5) 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C	C1~C17	1지구	-		
		2지구	C1~C17		
		3지구	-		
		지정용도	전층	C3, C6~C11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C2, C4, C5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호텔
				C1, C12~C17	•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1층	C4~C13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시행지침 “제1편 제3장 제8조”)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C	C1~C17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공동주택</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li> <li>• 종교시설</li> <li>• 판매시설(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에 한함)</li> <li>• 운수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li> <li>•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C1, C12~C17 제외)</li> <li>•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li> <li>• 위락시설</li> <li>• 공장,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li> <li>•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C1~C11	600%이하	
			C12~C17	400%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대2-2, 대3-2, 대2-38, 대3-1, 중2-16, 중2-19, 중2-20) : 5m</li> <li>- 도로변(대1-1, 중1-1, 중2-15, 중1-16, 중1-18, 중2-23, 중2-24, 중2-29, 중2-32, 중3-1, 중3-12, 중3-15, 중3-16, 중3-20, 중3-26, 중3-33, 중3-35, 중3-36, 중3-37, 중3-38, 중3-39, 중3-40)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20, 연결녹지23) : 3m</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C	C1~C17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층부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4~C7, C8-1, C8-4, C9~C11 : 6m</li> <li>- C8-2, C8-3 : 3~6m</li> </ul> </li> <li>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4-3, C4-4, C6-2, C6-3, C7-3, C7-4, C8-2, C8-3, C9-2, C9-3, C10-2, C10-3, C12-4, C12-5, C12-12, C12-13, C13-4, C13-5, C13-12, C13-13 : 3m</li> </ul> </li> <li>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3, C2-6, C3-3, C3-6, C4-3, C4-4, C4-7, C5-1, C6-2, C6-3, C6-4, C7-1, C7-3, C7-4, C8, C9-1, C9-2, C9-3, C9-5, C10-2, C10-3, C10-5, C11-1, C11-3, C12-4, C12-5, C12-8, C12-12, C12-13, C12-16, C13-1, C13-4, C13-5, C13-9, C13-12, C13-13, C14-6, C15-1, C15-6, C16-1, C17-4</li> </ul> </li> <li>저층부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2-3, C2-6, C3-3, C3-6 : 5m</li> </ul> </li> <li>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6~C11(C8-3제외) : 5m</li> <li>- C4, C5, C6-2, C6-3, C7-3, C7-4, C8-2, C8-3, C9-2, C9-3, C10-2, C10-3, C12-4, C12-5, C12-12, C12-13, C13-4, C13-5, C13-12, C13-13 : 3m</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p>주) 지정용도로 쓰이는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2개 이상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합이 50% 이상일 경우도 인정하며, 호텔·전시장·컨벤션 등 복합개발 시에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p> <p>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p> <p>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p>			
(6)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S	DS1~DS17	1지구	-
		2지구	DS1~DS17
		3지구	-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S	DS1~ DS17	지정용도	1층	DS1, DS2 DS5, DS6 DS8, DS9 DS11, DS12 DS14~DS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 가로활성화 용도(시행지침 “제1편 제3장 제8조”)</li> </ul>
			주거 복합 시설	DS3, DS4, DS10, DS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에 한함)</li>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li> <li>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한함)</li> </ul>
		DS5~DS7, DS11, DS12, DS14~DS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li> </ul>	
		상업 복합 시설		DS8, DS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li> <li>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li> <li>교육연구시설(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li> <li>노유자시설(『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한함)</li> <li>방송통신시설</li> </ul>
				DS8, DS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li> <li>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li> <li>교육연구시설(학교 및 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하는 연구시설 제외)</li> <li>노유자시설(『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에 한함)</li> <li>방송통신시설</li> </ul>
		허용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DS1, DS2
DS	DS1~ DS17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DS1~DS2	50%이하
			DS3~DS17	60%이하
		용적률	DS1~DS2	150%이하
			DS5~DS7 DS11, DS12 DS14~DS17	300%이하
			DS3, DS4 DS8~DS10 DS13	400%이하
		높이	DS1, DS2	3층이하
			DS11, DS12 DS14~DS17	5층이하
			DS3~DS10 DS13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대1-1, 중2-21, 중3-41, 대2-41, 대3-2) : 5m</li> <li>- 도로변(중1-16, 중3-23, 중2-25, 중2-26, 중2-27, 중2-28, 중2-32, 중3-14, 중3-21, 중3-25, 중3-28, 중3-30, 중3-32, 중3-35, 중3-39, 중3-42)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11, 연결녹지15, 연결녹지23, 연결녹지24, 연결녹지25, 연결녹지29, 연결녹지30, 연결녹지44, 연결녹지46) : 3m</li> <li>- 공원변(근린공원1, 문화공원1) : 3m</li> <li>- 공공보행통로변(DS2-3, DS2-4)</li> </ul> </li> <li>고층부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8, DS9 : 6m</li> </ul> </li> <li>저층부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3-1 : 5m</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S	DS1~DS17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1, DS2, DS8, DS9 : 5m</li> <li>- DS5, DS6, DS11, DS12, DS14~DS17 : 3m</li> </ul> </li> <li>저층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13 : 10m</li> </ul> </li> <li>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2-3, DS2-4 : 3m</li> </ul> </li> <li>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3-1</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p>주) 지원시설용지(DS3, DS4, DS10, DS13)에서 거주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은 50% 이상을 권장한다.                      ※ 거주용도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공동주택(기숙사·임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숙박시설(『관광진흥법』상 호텔에 한함)                      주) 지원시설용지에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라 용적률 250% 이하(임대주택 건축시 300%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p>			

(7)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 종합의료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	E1	1지구	-
		2지구	E1
		3지구	-
		지정용도	-
		허용용도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광3-16, 소2-2) : 5m</li> </ul> </li> <li>• 공공조경 : E1 : 5m</li> <li>• 공개공지 : 도로변(광3-16)</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나) 공공청사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F	F1~F4, F8~F12	1지구	F1~F4, F8~F11	
		2지구	F12	
		3지구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F1~F4, F9~F12	5층이하
			F8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하고 있는 용지의 공공건축물은 건축선을 일치할 수 있는 건축형태를 권장한다.</li> <li>• 인접하는 공공청사는 2개 이상 단위로 공동주차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중2-18) : 5m</li> <li>- 도로변(광3-19, 대2-2, 중1-1, 중1-17, 중2-36, 중3-5, 중3-45, 중1-18) : 3m</li> <li>- 도로변(소2-27) : 1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1) : 3m</li> <li>- 구역경계 변 : 1m</li> </ul> </li> <li>• 공공조경 : 도로변(중2-18) : 5m</li> </ul>	
		1지구	F5~F7	
	2지구	-		
	3지구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F5~F7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하고 있는 용지의 공공건축물은 건축선을 일치할 수 있는 건축형태를 권장한다.</li> <li>• 인접하는 공공청사는 2개 이상 단위로 공동주차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간의 확보를 권장한다.</li> <li>• 공개공지변으로 개방된 외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li> <li>•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중1-7, 중1-12, 중1-8)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3) : 3m</li> </ul> </li> <li>• 공개공지(F5~F6)</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다) 학교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G	G1~G8	1지구	G1~G6	
		2지구	G7~G8	
		3지구	-	
		건폐율	G1~G4, G6~G8	50%이하
			G5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li> <li>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li> <li>건축한계선으로 형성된 전면공지는 '보도 부속형'으로 조성한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광3-19, 대2-2, 중3-4, 소2-2) : 5m</li> <li>- 도로변(중1-7, 중1-12, 중1-18, 중2-3, 중3-46, 중3-47, 소3-2)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1, 연결녹지4) : 3m</li> <li>- 경관녹지변(경관녹지5) : 5m</li> <li>- 경관녹지변(경관녹지3, 경관녹지4) : 3m</li> <li>- 공원변(어린이공원6) : 3m</li> <li>- 인접대지경계(A1, A3, F3, S1) : 3m</li> </ul> </li> <li>공공조경 : G4, G6, G7, G8 : 5m</li> <li>외곽녹지 : G3 : 3m</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주) G5(유치원용지)는 유아교육을 위한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적절한 건폐율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함.				

(라) 사회복지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H	H1	1지구	H1	
		2지구	-	
		3지구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대2-2) : 5m</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ul>	

(마)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I	11~19	1지구	11~12		
		2지구	13~19		
		3지구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li> <li>•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외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li> <li>- 종교시설</li> <li>-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단, 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li> <li>- 운수시설</li> <li>-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업무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li> </ul> </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1,13~15,19	400%이하	
			12, 16~18	600%이하	
		높이	11,13~15,19	5층이하	
			12, 17~18	8층이하	
			16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2층, 최상층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li> <li>• 저층 배치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 14 : 10m</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I	11~19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중2-16) : 5m</li> <li>- 도로변(중1-1, 중1-8, 중1-12, 중2-4, 중2-5, 중2-25, 중2-33, 중3-14, 중3-20, 중3-28, 중3-29, 중3-36, 중3-40)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4, 연결녹지11, 연결녹지22, 연결녹지28, 연결녹지45) : 3m</li> <li>- 구역경계 변 : 3m</li> </ul> </li> <li>• 고층부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6 : 6m</li> </ul> </li> <li>• 저층부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6 : 5m</li> </ul> </li> <li>• 공공조경(l7) : 3m</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동차 불빛에 의한 인접 대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이 위치하지 않는 2,3층 이상의 상층부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li> <li>•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바) 열공급설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J	J1	1지구	-
		2지구	-
		3지구	J1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이	4층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변(근린공원1) : 3m</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공원변으로 설비시설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시설 또는 차폐조경 등을 설치한다.</li>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에 따른다.</li> </ul>

(사) 전기공급설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K	K1 K2	1지구	K2		
		2지구	-		
		3지구	K1		
		건폐율	K1	20%이하	
			K2	50%이하	
		용적률	K1	50%이하	
			K2	200%이하	
		높이	K1	4층이하	
			K2	5층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li> <li>- 도로변(중1-18) : 3m</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에 따른다.</li> </ul>				

(아) 방수설비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M	M1 M2	1지구	M1		
		2지구	-		
		3지구	M2		
		건폐율	M1	50%이하	
			M2	20%이하	
		용적률	M1	100%이하	
			M2	50%이하	
		높이	2층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에 따른다.</li> </ul>		

(8) 기타시설 용지  
(가)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N	N1~N4	1지구	N1, N2, N3, N4
		2지구	-
		3지구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li> <li>종교시설(종교집회장에 한함)</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li> </ul>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중1-1, 중1-11, 중1-17, 중3-46) : 3m</li> <li>- 도로변(중3-1) : 1m</li> <li>- 구역경계 변 : 3m(N3)</li> <li>- 구역경계 변 : 1m(N2)</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ul>		

(나) 편익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	S1~S8	1지구	S1~S4, S6
		2지구	S7, S8
		3지구	S5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	S1~S8	허용 용도	S1~S4, S6~S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설 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li> <li>판매시설(상점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li> <li>의료시설 중 병원</li> <li>교육연구시설</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업무시설</li> </ul>
			S5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설 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제외)</li> <li>의료시설 중 병원</li> <li>교육연구시설</li> <li>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S1~S4, S6~S8	50%이하
			S5	20%이하
		용적률	S1~S4, S6~S8	250%이하
			S5	50%이하
		높이	S3, S6	7층이하
			S4	6층이하
			S5	4층이하
S1, S2, S7~S8	최고고도지구(해발57.86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지하층 형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5장 제19조”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	S1~S8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광3-19, 대2-41, 대3-2, 중2-17) : 5m</li> <li>- 도로변(대2-2, 중1-1, 중1-11, 중2-2, 중2-34, 중3-45, 중3-46, 중3-47, 소2-22, 소2-27) : 3m</li> <li>- 연결녹지변(연결녹지40, 연결녹지41, 연결녹지48) : 3m</li> <li>- 인접대지경계(T2, R2, R4, G1, F1, F3) : 3m</li> <li>- 공원변(근린공원1) : 3m</li> <li>- 구역경계 변 : 3m(S3)</li> <li>- 구역경계 변 : 1m(S4)</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주)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성인용품판매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용도 불허 주)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P (주유소)	P1~P4	1지구	P1, P2
		2지구	P3, P4
		3지구	-
		허용용도	• 주유소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호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3층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광3-19, 대2-41, 대2-2, 대2-38, 중1-11, 중3-1, 중3-26, 소1-2) : 3m</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Q (가스 충전소)	Q1, Q2	1지구	-
		2지구	Q2
		3지구	Q1
		허용용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이	3층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에 따른다.

(라) 택시차고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T	T1 T2	1지구	-
		2지구	T1, T2
		3지구	-
		허용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대2-41, 중1-1, 소1-2, 소2-21) : 3m - 연결녹지변(연결녹지40) : 3m - 인접대지경계(S7) : 3m
		형태 및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마) 보육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V	V1~V3	1지구	-
		2지구	V1~V3
		3지구	-
		허용용도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5층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

(9)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자문

- (가) 마곡지구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자문단, 총괄건축가(MA))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나) 1만㎡이상의 필지는 단지·건축 세부조성계획(Master Plan) 수립과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하며, 1만㎡미만의 필지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업자 등의 신청에 의해 건축계획에 대한 총괄건축가(MA)의 수시 협의 및 자문할 수 있다.
- (라) 마곡자문기구의 자문은 2012년 10월 11일(서고시 제2012-270호) 고시된 이후 건축물 등의 인가허가·승인되는 마곡지구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마) 기타 사업자(건축주)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을 신청하고 마곡자문기구 자문결과 등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 (가)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및 건축물 등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다만,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의 계획 및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은 마곡자문기구의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

- (가) 국내 최저 에너지소비형 도시,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하여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여 계획한다.

(나)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12) 기타사항

· 상기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I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I	CP1	31,980	

(나) 가구 및 필지 구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필지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 I	CP1	CP1-1	14,554	
		CP1-2	17,426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공동주택</li> <li>• 종교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li> <li>•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li> <li>•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li> <li>• 위락시설</li> <li>• 공장,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 57.86m) 이하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배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층 기준바닥레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1 :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li> </ul> </li> <li>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중1-8) : 3m</li> <li>공공보행통로변(CP1-1, CP1-2) : 5m</li> </ul>	
	저층부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대2-2) : 5m</li> <li>연결녹지변(연결녹지5) : 3m</li> <li>광장변(광장1) : 3m</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1-1, CP1-2 : 5m</li> </ul>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1-1과 CP1-2 연계</li> </ul>	
	지하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1-1과 지하공공보도1 연계</li> <li>CP1-2와 지하공공보도1 연계</li> </ul>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대로2-2, 중로1-8) 및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위치지정</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장(광장1) 및 주거지(AC7)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li> </ul>	

(2) 특별계획구역 II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 II	CP2	20,812	

(나) 가구 및 필지 구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필지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 II	CP2	CP2-1	6,357	
		CP2-2	14,455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시행지침 제3장 제8조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공동주택</li> <li>• 종교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li> <li>•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li> <li>•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li> <li>• 위락시설</li> <li>• 공장,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60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 57.86m) 이하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배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층 기준바닥레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2 : 지하1층 : EL+0.0</li> </ul> </li> <li>지하1층 층고(9.0m)내에서 건축물 지하보행로 및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형성 구간을 제외하고 중층형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다.</li> <li>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대1-1) : 5m</li> <li>도로변(중3-18) : 3m</li> </ul>	
	저층부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녹지변(연결녹지5) : 3m</li> </ul>	
	저층부 건축지정선 (1층 전면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공공보행통로변 : 5m, 10m</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2-2 : 10m</li> </ul>	
	지하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2-1, CP2-2 : 12m</li> </ul>	
	지하공동개발(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2-1, CP2-2</li> </ul>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대로1-1)와 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녹지(연결녹지5)변으로 위치지정</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공지 및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li> </ul>	
지하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지하공공보도(1, 2)와 연계하여 조성</li> </ul>	

(3) 특별계획구역Ⅲ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Ⅲ	CP3	30,085	

(나) 가구 및 필지 구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필지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Ⅲ	CP3	CP3-1	15,238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의 필지로 분할가능
		CP3-2	14,84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의 필지로 분할가능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시행지침 제3장 제8조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공동주택</li> <li>• 종교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li> <li>•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li> <li>•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li> <li>• 위락시설</li> <li>• 공장,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 57.86m) 이하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배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층 기준바닥레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3 : 지하1층 : EL+0.0</li> </ul> </li> <li>지하1층 층고(9.0m)내에서 건축물 지하보행로 및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형성 구간을 제외하고 중층형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다.</li> <li>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대1-1) : 5m</li> <li>도로변(중1-8, 중1-13, 중3-18) : 3m</li> </ul>	
	저층부 건축지정선 (1층 전면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공공보행통로변 : 5m, 10m</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3-2 : 10m</li> </ul>	
	지하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3-1 : 12m</li> </ul>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3-2와 지하공공보행통로 연계</li> <li>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시 개별필지 내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조성</li> </ul>	
	지하공동개발(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3-1, CP3-2</li> </ul>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대지내 공지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대로1-1)변으로 위치지정</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li> </ul>	
지하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보행통로 및 지하공공보도(2, 3)과 연계하여 조성</li> </ul>	

(4)특별계획구역Ⅳ  
(가) 구역결정에 관한 계획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Ⅳ	CP4	39,050	

(나)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

구역명	가구번호	필지		비고
		위치	면적(㎡)	
특별계획구역Ⅳ	CP4	CP4-1	19,796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2개의 필지로 분할가능
		CP4-2	19,254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용도	지정용도	•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시행지침 제3장 제8조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공동주택</li> <li>• 종교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수련시설</li> <li>•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li> <li>•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li> <li>•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제외)</li> <li>• 위락시설</li> <li>• 공장,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li>• 장례식장</li> </ul>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해발 57.86m) 이하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배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층 기준바닥레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4 : 지하1층 : EL+0.0</li> </ul> </li> <li>지하1층 층고(9.0m)내에서 건축물 지하보행로 및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형성 구간을 제외하고 중층형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다.</li> <li>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변(대1-1) : 5m</li> <li>도로변(중1-8, 중1-13) : 3m</li> <li>연결녹지변(연결녹지21) : 3m</li> </ul>	
	저층부 건축지정선 (1층 전면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공공보행통로변 : 5m, 10m</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4-2 : 10m</li> </ul>	
	지하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4-1 : 12m</li> </ul>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4-2와 지하공공보행통로 연계</li> <li>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시 개별필지 내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조성</li> </ul>	
	지하연결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4-1과 5호선 마곡역 연계</li> <li>CP4-1, CP4-2 : CP4-1의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각 필지 내 5호선 마곡역 출입구를 1개소씩 설치하되, 지하철 이용동선이 최단거리가 되도록 조성한다.</li> </ul>	
	지하공동개발(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P4-1, CP4-2</li> </ul>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6장 제20조”를 따른다.</li> <li>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0장”을 따른다.</li> <li>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2조 제9항”을 따른다.</li> </ul>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대지내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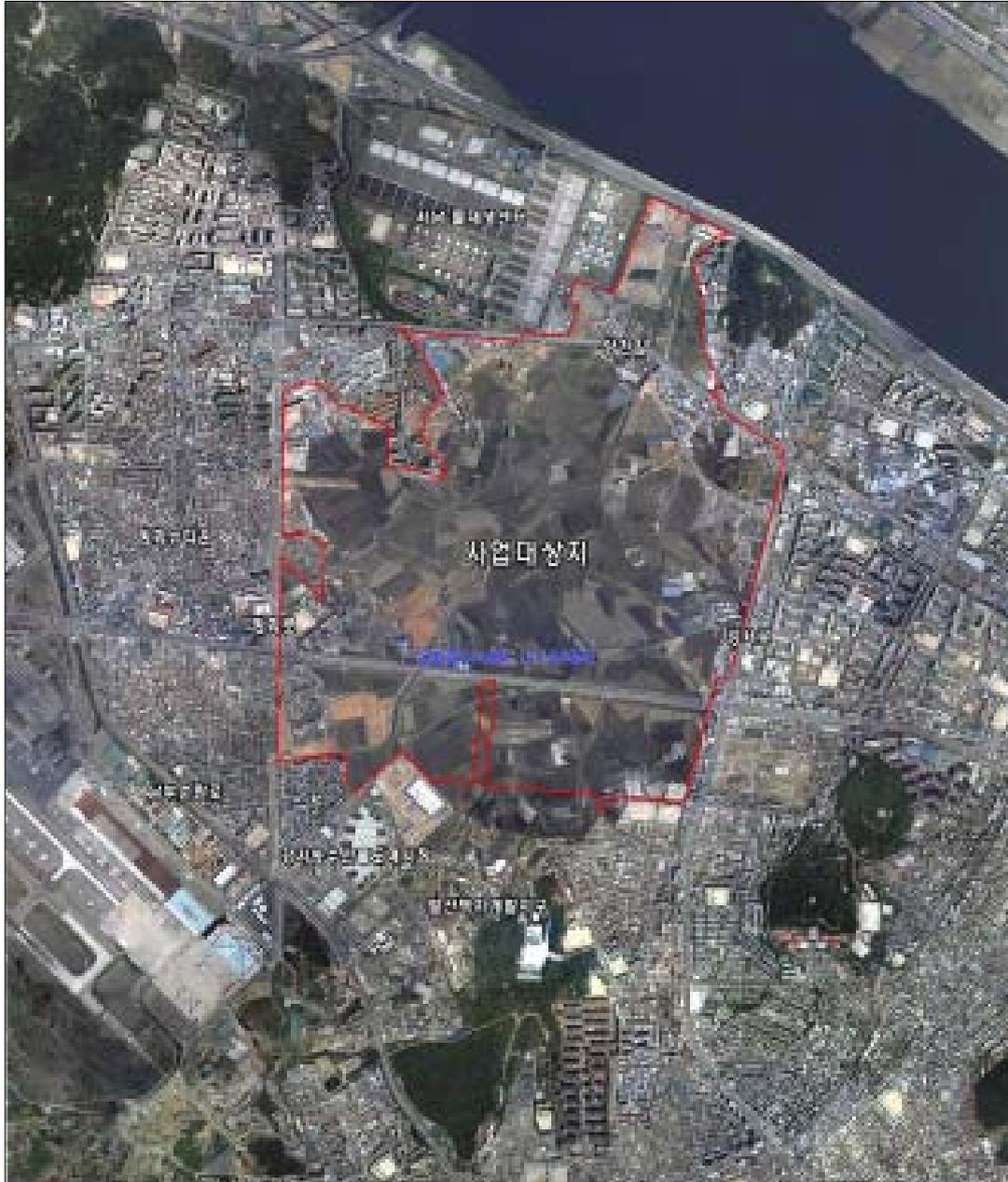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대로1-1)변으로 위치지정</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li> </ul>	
지하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보행통로·지하연결통로 및 지하공공보도3과 연계하여 조성</li> </ul>	

- (5)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 승인권자(인가권자)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정절차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다.
  - (6)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자문
    - (가) 마곡지구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구성한 마곡자문기구(자문단, 총괄건축가(MA))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나)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과 건축허가(또는 건축심의) 신청이전 3개월 전후에 각각 자문을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계획에 대한 총괄건축가(MA)의 수시 협의 및 자문할 수 있다.
    - (라) 기타 사업자(건축주)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을 신청하고 마곡자문기구 자문결과 등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7)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 (가)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및 건축물 등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한다. 다만,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이전의 건축물의 계획 및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은 마곡자문기구의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 (8) 에너지사용계획
    - (가) 국내 최저 에너지소비형 도시, 저탄소 배출의 친환경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하여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여 계획한다.
    - (나)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9) 기타사항
    - 상기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 변경없음
- 차.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변경없음
- 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협의사항 이행}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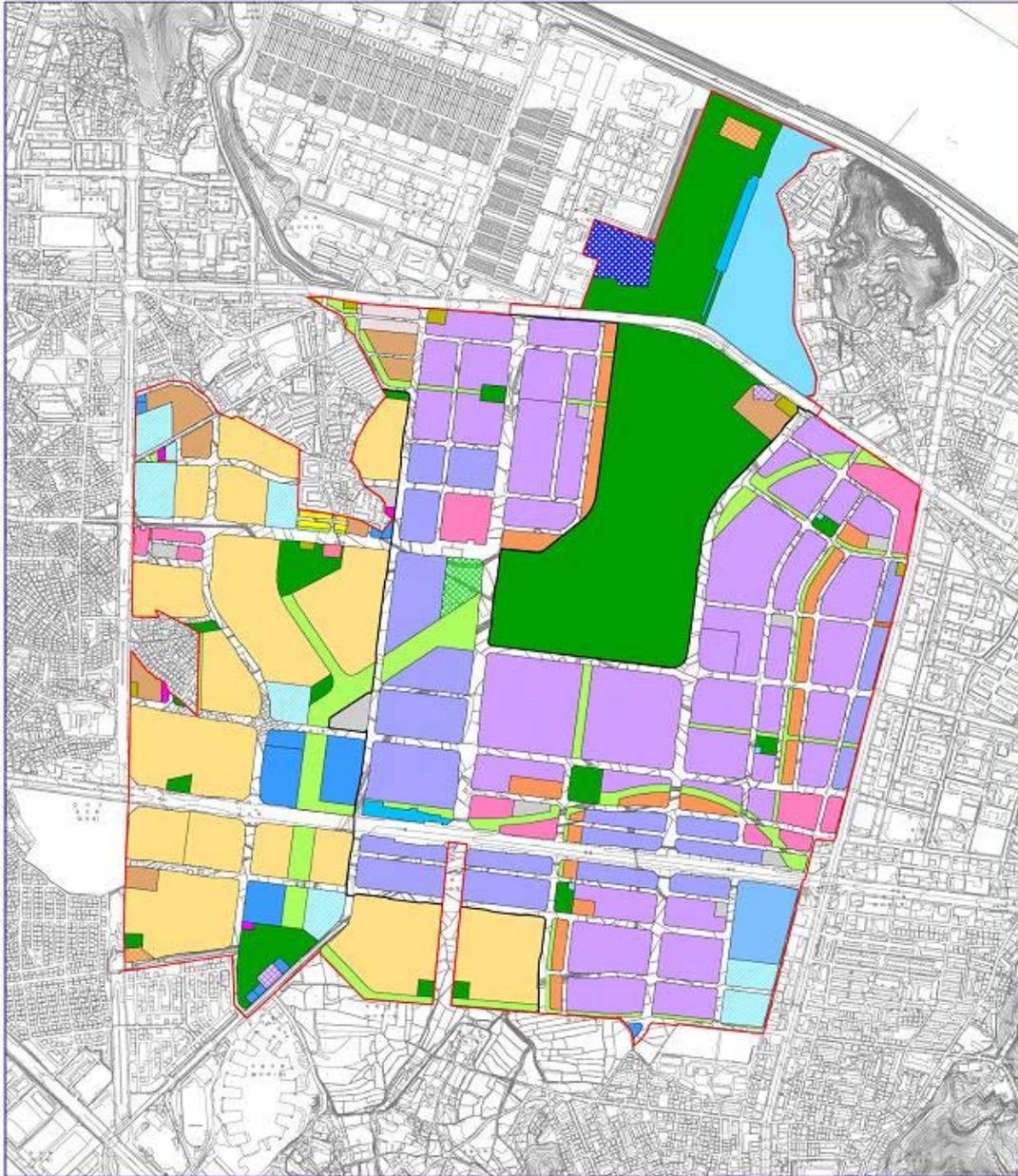
위 치 도



항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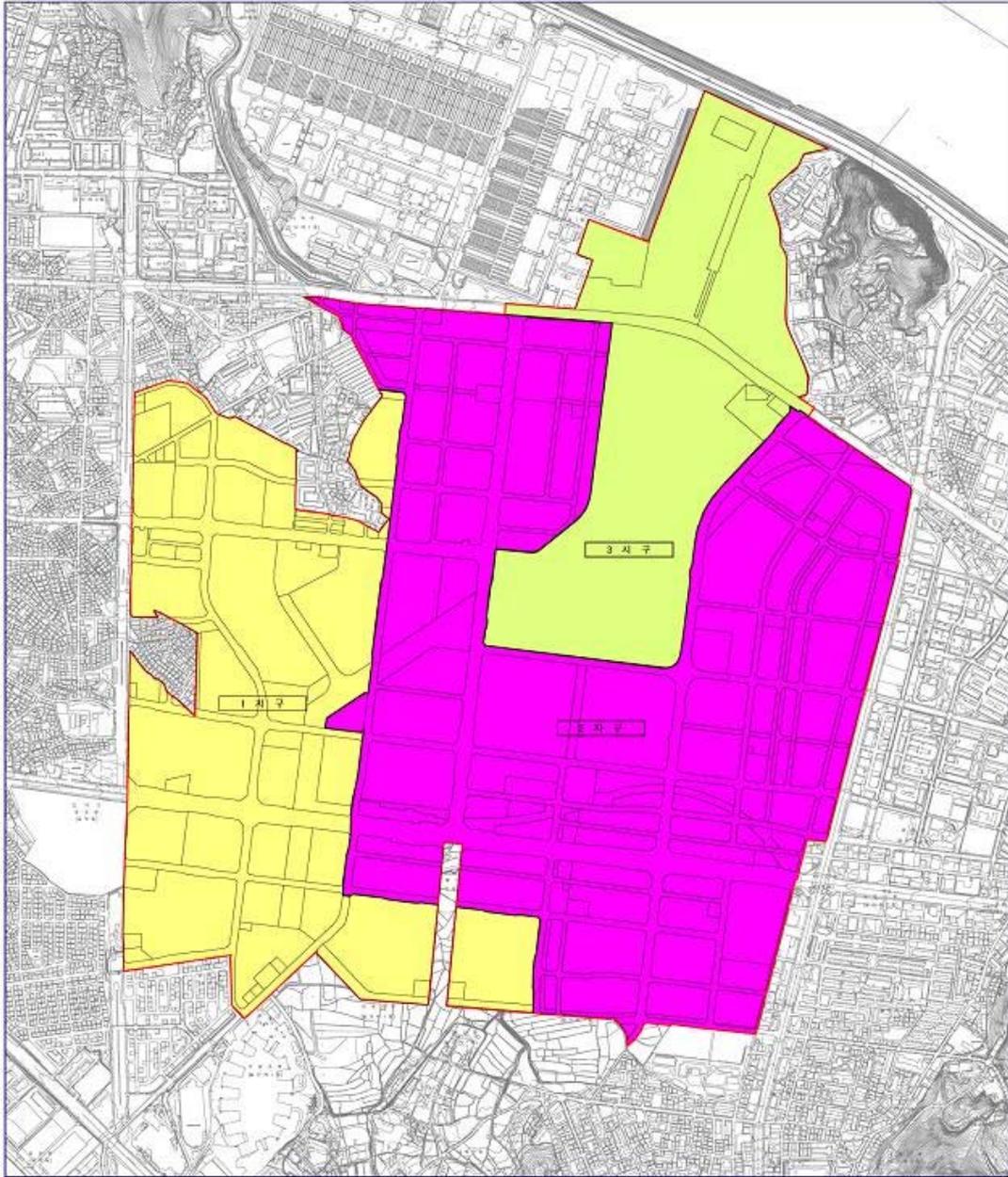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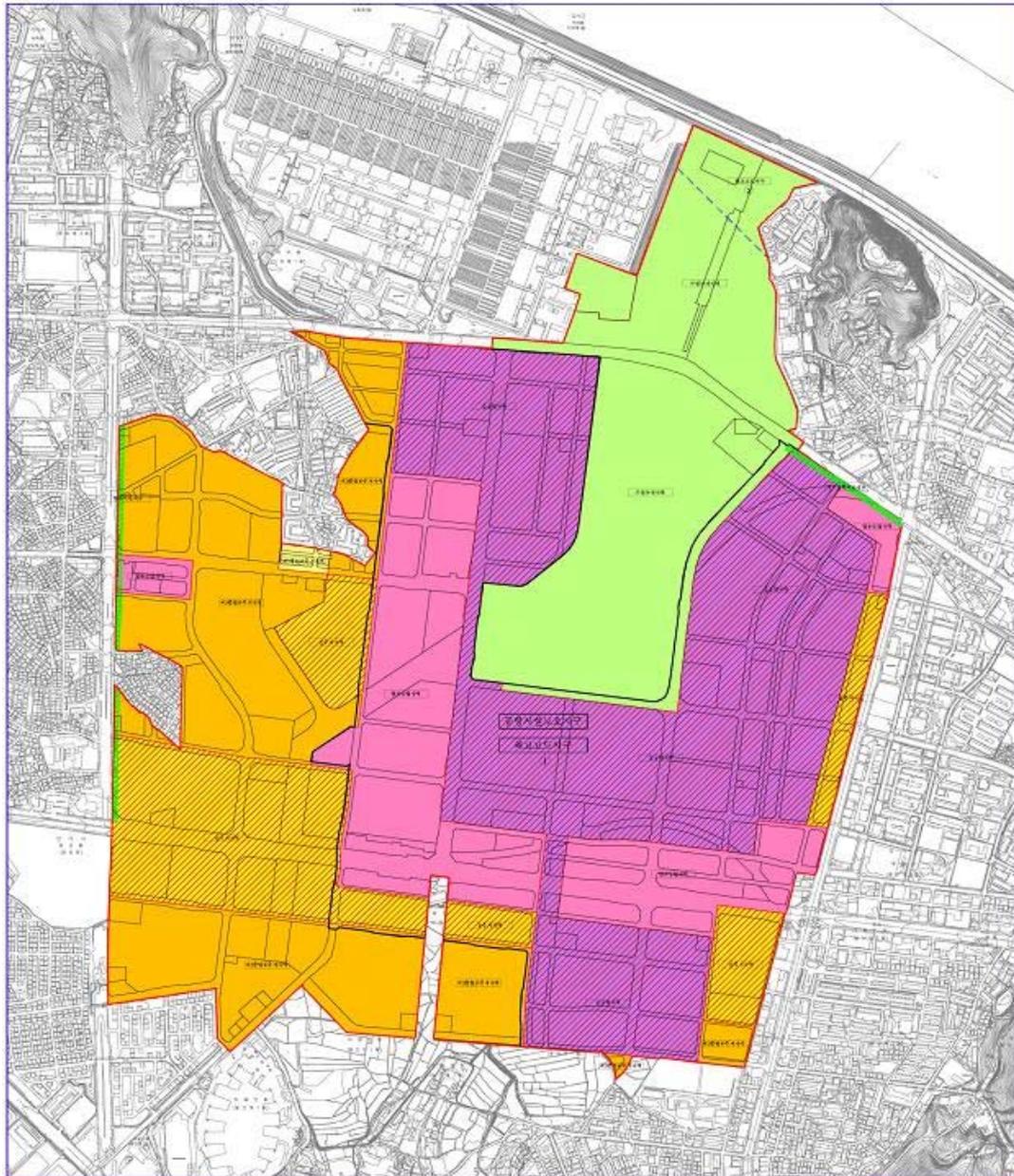
<p>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p> <p>개발계획(변경)도</p>	<p>아파트용지</p> <p>상업용지</p> <p>업무용지</p> <p>편익시설</p>	<p>근대주택용지</p> <p>공공청사</p> <p>중합문화시설</p> <p>우치장</p>	<p>공원</p> <p>체육</p> <p>지원시설</p>	<p>학교</p> <p>창수설비</p> <p>연구복합용지</p> <p>택시차고지</p>	<p>전기공급설비</p> <p>부유소</p> <p>보행자편용도로</p> <p>가스중력소</p>	<p>종교시설</p> <p>시외택지시설</p> <p>호수원천장</p>	<p>체육용지</p> <p>관광단지</p> <p>유목지</p>	<p><b>S = 1 : 5,000</b></p> <p>북 N</p>
	<p>문화시설</p> <p>우치장</p> <p>지원시설</p> <p>택시차고지</p> <p>영장</p>	<p>전기공급설비</p> <p>부유소</p> <p>보행자편용도로</p> <p>호수원천장</p> <p>유목지</p> <p>가스중력소</p> <p>지구온실온</p>	<p>종교시설</p> <p>시외택지시설</p> <p>호수원천장</p>	<p>체육용지</p> <p>관광단지</p> <p>유목지</p>	<p><b>S = 1 : 5,000</b></p> <p>북 N</p>			

지구분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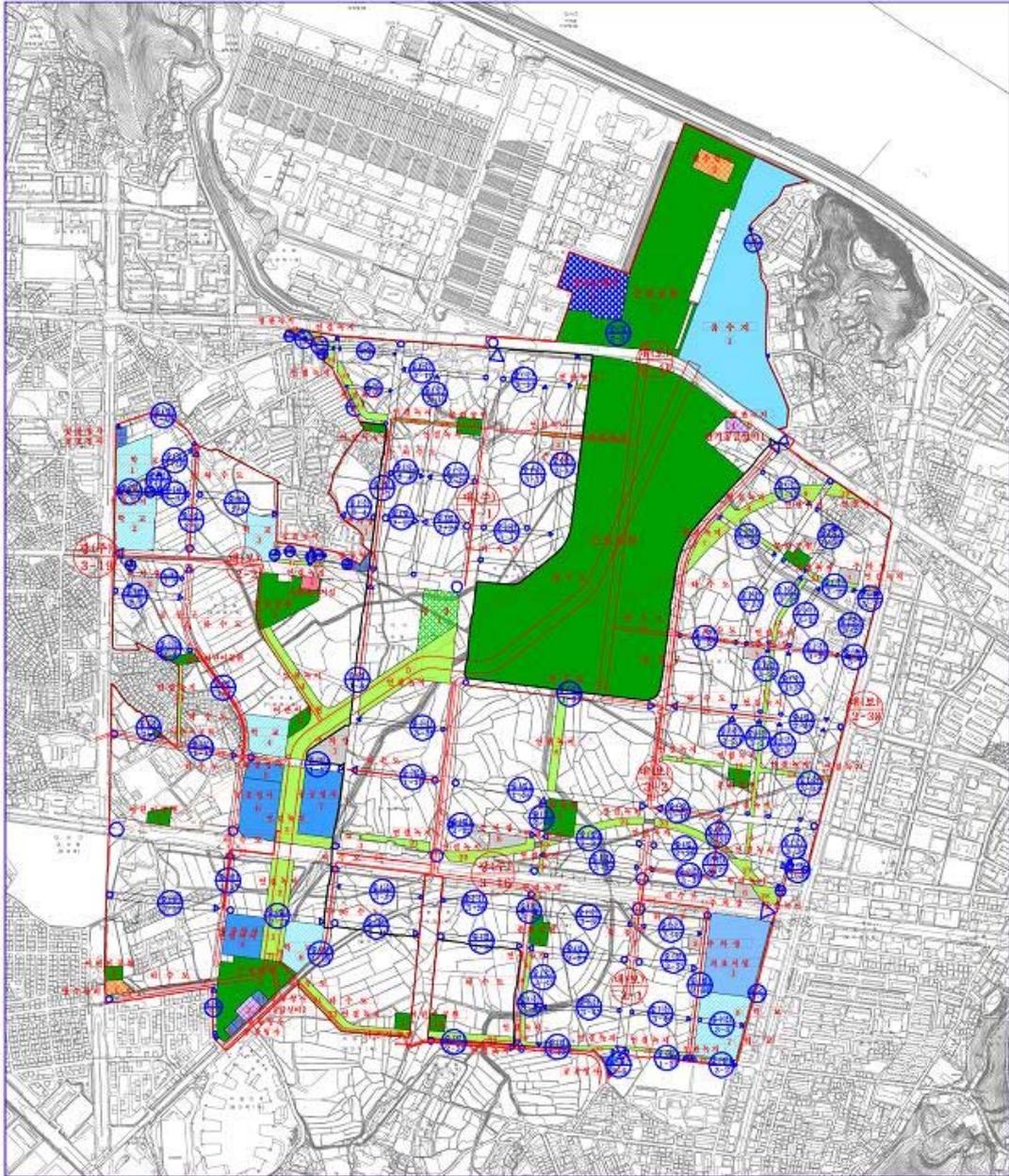
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	1 지구	2 지구	3 지구	S = 1 : 5,000
	지구분할(변경)도			

용도지역도



<p>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p> <p>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p>	<p>제1종일반주거지역</p>	<p>제2종일반주거지역</p>	<p>제3종일반주거지역</p>	<p>준주거지역</p>	<p>S = 1 : 5,000</p>
	<p>일반상업지역</p>	<p>준공업지역</p>	<p>자연녹지지역</p>	<p>일반미관지구</p>	
	<p>역사문화미관지구</p>	<p>최고고도지구</p>			

도시 계획 시설도



<p>마곡구역도시 개발사업</p> <p>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총괄도</p>	<p>공원</p> <p>오류시설</p> <p>전기공급설비</p> <p>도로</p> <p>중도</p> <p>소도</p> <p>보행자도로</p> <p>지구분할선</p>	<p>복지</p> <p>주차장</p> <p>철도</p> <p>수도</p> <p>보행자도로</p> <p>지구분할선</p>	<p>광장</p> <p>복지시설</p> <p>체육시설</p> <p>마수도</p> <p>보행자도로</p> <p>지구분할선</p>	<p>학교</p> <p>방수설비</p> <p>광명구</p> <p>광로</p> <p>대로</p>	<p>공공청사</p> <p>공공광지</p> <p>열공급설비</p> <p>유수지</p> <p>열공급설비</p>	<p>S = 1 : 5,000</p> <p>N</p>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1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결정(변경)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를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관련제도의 제·개정 및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308,236	증)3,247	311,483 (276,987)	1987.2.4	- 홍대주변권역 부분 재정비 - 기존 구역계로 분리된 단일 건축대지(3,215㎡) 포함 - 구역경계부 시설선 변경대지 구역포함(32㎡)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홍대주변 일대	311,483 (276,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3,247㎡)</li> <li>- 기존 구역계로 분리된 단일 건축대지포함 : 증)3,215㎡</li> <li>- 구역경계부 시설선(철도) 변경에 따른 구역경계조정 : 증)32㎡</li> <li>○ 부분재정비 대상(276,987㎡)</li> <li>- 홍대주변 양화로변 일대 부분 재정비</li> </ul>
		아현재정비 촉진지구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현재정비 촉진지구내 (34,496㎡)</li> </ul>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내임

㉔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76,987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973	4.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1,198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219	42.7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65,142	23.5	
	근린상업지역	81,455	29.4	

나. 용도지구 : 변경없음

1) 미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수색로	중심지 미관지구	동교동~수색동 (동교동147-12~동교동147-2)	103,920 (1,522)	4,330 (106)	양측 12	서고164호 ' 82.4.22	
기정	-	신촌로	중심지 미관지구	의주로2가~제2한강교 (동교동183-1~서교동395-46)	224,000 (61,859)	6,000 (1,708)	양측 15~20	서고438호 ' 80.12.31	
기정	-	서교로	일 반 미관지구	성산동451~동교동160 (동교동161-9~동교동160-5)	52,800 (1,656)	2,200 (70)	양측 12	서고2002-44호 ' 02.2.19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2)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신촌로타리~합정동간 (동교동183-1~서교동395-46)	58,080 (18,256)	건고727호 63.12.13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3)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143,105)	서고2010-21호 10.1.28	디자인산업 출판산업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13,520 (2,475)	438,546 (82,005)	3	3,240 (532)	62,146 (9,871)	3	10,280 (1,943)	376,400 (72,134)	-	-	-
광로	1	6,800 (1,801)	272,000 (68,079)	-	-	-	1	6,800 (1,801)	272,000 (68,079)	-	-	-
대로	1	1,500 (96)	45,000 (2,919)	-	-	-	1	1,500 (96)	45,000 (2,919)	-	-	-
중로	4	5,220 (578)	121,546 (11,007)	3	3,240 (532)	62,146 (9,871)	1	1,980 (46)	59,400 (1,136)	-	-	-
소로	-	-	-	-	-	-	-	-	-	-	-	-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58	40	주간선 도로	6,800 (1,801)	북아현동(광로42) (동교동183-1)	합정동(광장29) (서교동395-46)	일반 도로	건고214호 '78.8.2	신촌로 양화로
기정	대로	2	7	30	보조간선 도로	1,500 (96)	서교동 (서교동353-1)	성산동 (서교동35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66.6.21	서교로
기정	중로	1	18	20	집산도로	1,550 (55)	동교동	하수동강변 (상수동310-1)	일반 도로	건고177호 '62.12.8	와우산길
기정	중로	1	19	20	집산도로	350	서교동	서교동	일반 도로	서고838호 '87.11.25	서교로 (홍대앞길)
기정	중로	1	20	20	집산도로	1,340 (127)	서교동 (서교동374-10)	성산동 (서교동374-11)	일반 도로	건고2493호 '66.6.21	잔다리길
기정	중로	2	141	15 (15~45)	보조간선 도로	1,980 (46)	창천동104 (서교동350-2)	하수동1445-5 (상수동318-4)	일반 도로	건고2493호 '66.6.21	어울마당 길일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마포구 서교동 348-1번지 일대	13,960 (690)	-	13,960 (690)	서고 제2009-213호 2009.5.28	도로중복결정 (종로 2-141 지하부분)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나. 도시공간시설결정 : 변경없음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근린공원	마포구 연남동448-4~ 동교동190-1	34,359.7 (859)	-	34,359.7 (859)	서고 2011-401호 2011.12.29	경의선 상부공원

주) ( )는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대상지역 내임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최대 개발규모	근린상업지역	3,000㎡	3,000㎡	◦적용예외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 필지 및 기개발지, 공동개발(지 정 및 권장)계획필지 제외
	준주거지역	2,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	1,500㎡	

주) 1.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대지는 현재의 필지 및 기 공동개발 되어 있는 일단의 대지를 최대개발규모로 함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적용

나. 가구 및 획지계획

: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도서와 같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1) 불허용도

구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li> </ul>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li> </ul>	준주거지역 이면부 및 일반 주거지역
변경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기존주유소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li> <l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li> <li>■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li> </ul>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블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제외)</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li> <l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사행성게임물 취급업</li> <li>■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가목 7)내지 9)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li> </ul>	준주거지역 이면부 및 일반 주거지역

주) 1.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적용

2) 권장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공연장, 학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li> <li>■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li> </ul>	홍익대학교 주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소매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결혼관련 의류 상점 (※상기 결혼관련용도란 웨딩드레스, 한복의 판매 또는 대여점에 한함)</li> </ul>	아현동 웨딩거리 일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li> </ul>	양화로변 업무기능 특성화 지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li> </ul>	신촌로 및 양화로변	
변경	1	전층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공연장, 표구점, 학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li> <li>■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li> </ul>	홍대앞 서교로변
		1층 전면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서점, 휴게음식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li> </ul>	
	2	전층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li> <li>■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li> </ul>	양화로변 업무기능 특성화 지역
		1층 전면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li> </ul>	
	3	전층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li> <li>■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li> </ul>	동교동 로터리주변 (준주거지역)
		1층 전면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li> </ul>	
지하층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ul>	전지역	

주)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시 층별 권장용도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주차장 면적은 제외)

3) 지정용도

구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서교동 354-5외 3필지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적용조건	비고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준주거지역	60% 이하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2) 용적률

구분	용도지역		접도조건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기정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2m이상	300%	500%이하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변경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12m이상	300%	
12m미만				250%	4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m이상	250%	350%이하	
			8m미만	250%	3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00%	3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3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25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200%이하		
서교동 354-5외 3필지 (가구번호: NC-12)		-	285%	485%이하		

주) 1. 용도지역 상향지역의 허용용적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산식적용  
 2. 공동개발 등에 의해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 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계획된 지침을 적용  
 3. 서교동 354-5외 3필지는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서고 제 2013-137호)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용적률 - 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이후 타 용도로 건축물 용도 변경 불가

3) 건축물 높이 : 변경없음

구분		높이계획	비고
근린상업지역		80m 이하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 층수제한을 동시 적용
준주거지역	간선변	60m 이하	
	이면부	30m 이하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		30m 이하	

다.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변경 없음

구분	위치	계획	비고
건축선	간선가로변 (4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5m	지침도 위치 표시
		•건축한계선 3m	
	간선가로변 (20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3m	
	내부가로 (4m 이상 도로)	•건축한계선 2m	
•건축한계선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외관 등

■ 기 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li> <li>•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 유도</li> <li>•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li> </ul>	
건축물 외관	측면 이격공지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담장 등으로 차폐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li> <li>•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li> </ul>	
기 타 사항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간판 설치 유도</li> <li>•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li> </ul>	
	담장 및 옹벽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li> <li>•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li> </ul>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시만 인정	
	중수도 시스템	•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li> <li>•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등 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라 조성</li> </ul>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기준	• '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 및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용	-	
건축물 형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규제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연접 대지에 기존 건축물들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1층 개구부 높이는 기존 건축물들의 1층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건축물 외관	외벽면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소재의 사용	권장
	측면 이격공지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폐 •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야간경관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에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방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건축설비의 노출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설치 금지	
	탑상형 건축물	• 폭 25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을 권장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규제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시설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물 또는 대지 안에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담장 및 옹벽의 설치	• 담장허물기 권장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 옹벽은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친화	자연지반 보존	• 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권장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녹색 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중수도설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른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른 것을 권장	
	신·재생 에너지사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에너지 절약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을 권장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따른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따른 것을 권장	
생태면적률	• 건축물 신축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라 건축 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	규제	

주) 1. 그 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마포구 디자인 기본계획' 및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용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기 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 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 차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 조성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li> <li>- 기조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li> <li>-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li> <li>-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li> </ul> </li> </ul>	
공 개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li> <li>•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li> <li>•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li> <li>• 1개소 최소면적 45㎡이상 조성</li> <li>•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li>•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li> <li>• 공개공지 위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위치 우선 준수</li> </ul>	
쌈지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li> <li>•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적 20㎡ 이상</li> <li>• 인접 대지에 공지가 조성된 경우 인접대지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li> <li>•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li> <li>•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li>• 쌈지형공지 위치가 권장된 경우 권장위치 우선 준수</li> </ul>	
침상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결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li> <li>•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li> </ul>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6m 이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 기존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 차도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6m 미만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li> <li>- 기존 차도와 단차없이 조성</li> </ul> </li> <li>• 조성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li> <li>- 기초성된 공공부문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li> <li>-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li> <li>-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조성</li> </ul> </li> </ul>	지침도 위치표기
공 개 공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도로변 각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설치</li> <li>•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li> <li>• 2개소 이내로 설치, 최소폭 5m이상</li> <li>• 1개소 최소면적 45㎡이상 조성</li> <li>•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li>•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li> </ul>	지침도 위치표기
쌈지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도로변 각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li> <li>• 최소폭 4m 이상, 최소면적 25㎡ 이상</li> <li>• 인접 대지의 쌈지형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li> <li>• 보행공간은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li> <li>•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li> </ul>	
침상형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출입구 등의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대지의 공개공지는 침상형으로 설치 가능</li> <li>• 계단, 경사로 등에 의하여 공공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li> </ul>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의 통행을 위해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li> <li>•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공하며, 신축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는 경우 나중 에 설치하는 건축주는 선시공된 재료 및 색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시공 해야 함</li> </ul>	지침도 위치표기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구간 내 대지 로 차량진입을 불허함</li> </ul>	지침도 위치표기
주차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부에 면한 대지가 이면부로의 차량진입이 불가할 경우 계획된 주차출입 구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공동개발 등에 따라 이면부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우 간선부 주차출입구는 폐쇄된 것으로 본다.</li> </ul>	지침도 위치표기

4. 인센티브 운용 계획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기정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획지 계획	획지단위 개발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n=1→α=0.1, n=2~3→α=0.2 n=4~5→α=0.3, n=6이상→α=0.4 (n=획지내 필지수)
	획지 교환 획지 분할	획지교환 (분할) 가능선 준수시		기준용적률×0.2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필지→α=0.1 • 3~4필지→α=0.15 • 5필지이상→α=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건축연면적)×0.2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필로티 구조 α=0.5 • 침상형 구조 α=1.0 • 개방형 구조 α=1.2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 구조 α=0.5 • 개방형 구조 α=1.2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 구조 α=0.5 • 개방형 구조 α=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 보행 통로	지상형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 구조 α=0.5 • 개방형 구조 α=1.0
			지하형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 구조 α=0.5 • 개방형 구조 α=1.0	
건축물 형태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준수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서울시 옥상녹화기준 적합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1	서울시기준 준수시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서울시기준 준수시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4.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 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5. 지하형 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와 연계시에 부여

■ 변경 - 적용기준A(양화로변)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α • 일부준수 n=2→α=0.1, n=3이상→α=0.2 • 전체준수 : α= 0.3적용 • 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 α+ 0.1	
		적정개발규모유도	기준용적률×0.1 • 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필지	
		맞벽건축	기준용적률×0.1 • 20m이상 가로에 접한 필지 중 공동개발(권장)계획 미준수 필지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구조 : α = 1.5 • 개방형구조 : α = 3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권장위치 준수	기준용적률×0.05 • 권장위치 준수시 별도적용	
	건축물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α	• 건축연면적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제외) • α= 0.5
		1층 전면부 권장용도	특정층 권장용도 준수시 전층 권장용도 인센티브에 가중치 추가 (1개항목 준수시: α+0.1, 2개항목 준수시: α+0.2)	• 전면부폭의 1/3이상 접할 경우 인정
		지하층권장		• 최소면적 200㎡이상 및 해당층 바닥면적의 30%이상 만족시 인정
	도시경관 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준용적률×0.2 • 지중화 관련시설수용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2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1 • 공동개발(지정)필지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 • 간선가로 및 이면가로변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조성대상 필지(도면에 표시) • 필로티구조 : α = 1 • 개방형구조 : α = 2	
의무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 필로티 및 주차장 면적 제외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적 제외 • 기준용적률×0.05이내	
		중수도설치	기준용적률×0.04 • 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관리시설설치 (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0.05 •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기준용적률× α • 1등급 : α=0.08 • 2등급 : α=0.05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에너지저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 주) 1. 미관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적 및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면적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전면부 및 지하층) 인센티브 적용은 권장용도면적(특정층 권장용도 면적포함)이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적 및 법정 조경면적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내공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적건축물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 변경 - 적용기준B(서교로변)

완 화 기 준		완 화 내 용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times\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준수 : <math>\alpha= 0.05</math>적용</li> <li>전체준수 : <math>\alpha= 0.1</math>적용</li> <li>60㎡미만의 과소필지 포함시 : <math>\alpha+ 0.05</math></li> </ul>
		적정개발규모유도	기준용적률 $\times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개발계획 되지 않은 단일 필지</li> </ul>
		맞벽건축	기준용적률 $\times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m이상 가로에 접한 필지 중 공동개발(권장)계획 미준수 필지</li> </ul>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로티구조 : <math>\alpha = 0.2</math></li> <li>개방형구조 : <math>\alpha = 0.5</math></li> </ul>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alpha$	
	건축물 권장용도	전층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times\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연면적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제외)</li> <li><math>\alpha= 0.1</math></li> <li>전면부족의 1/3이상 접할 경우 인정</li> <li>최소면적 200㎡이상 해당층 바닥면적의 30%이상 만족시 인정</li> </ul>
		1층 전면부 권장용도	특정층 권장용도 준수시 전층 권장용도 인센티브에 가중치 추가 (1개항목 준수시: $\alpha+0.1$ , 2개항목 준수시: $\alpha+0.2$ )	
		지하층권장		
	도시경관 개선	가로지장물 수용	기준용적률 $\times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중화 관련시설수용</li> </ul>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times 0.05$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2$	
의무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로티 및 주차장 면적 제외</li> </ul>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li> </ul>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로티형으로 조성된 면적 제외</li> <li>기준용적률 <math>\times 0.05</math> 이내</li> </ul>
		중수도설치	기준용적률 $\times 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li> <li>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li> </ul>
		빗물관리시설설치(저류,침투,이용)	기준용적률 $\times 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빗물저류탱크용량이 건축면적<math>\times 0.05</math> 또는 대지면적<math>\times 0.02</math> 이상 설치</li> </ul>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times 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li> </ul>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기준용적률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등급 : <math>\alpha=0.08</math></li> <li>2등급 : <math>\alpha=0.05</math></li> <li>※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너지저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li> </ul>

- 주) 1. 미관지구 건축선 의무 후퇴면적 및 차량출입구 조성부분은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면적산정시 제외  
 2. 특정층 권장용도(1층 전면부 및 지하층) 인센티브 적용은 권장용도면적(특정층 권장용도 면적포함)이 건축연면적의 20%이상 도입시 인정(주차장면적제외)  
 3. 공개공지 의무면적 및 법정조경면적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내공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4. 환경친화적건축물 항목 중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인센티브 산정시 제외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교1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일대	-	증6,735.9	6,735.9	6필지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1) 서교1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위치	◦마포구 서교동 395-43외 5필지	
면적	◦6,735.9㎡	
토지이용	◦합정역세권의 대규모 부지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지역 활성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판매·업무·문화집화·숙박 등 복합개발 유도	
용도지역	◦현재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합정역세권의 합리적 토지이용과 계획적 복합개발 유도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의 혼재로 인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합정역세권 합리적 토지이용 및 공공기여 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및 기반시설 부담 계획기준 준용	
용도지구	◦변경없음 : 중심지미관지구(양화로변 20m), 방화지구(양화로변 12m),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이면도로 확장 등 적정 기반시설설치 검토	
용도	◦권장 및 불허용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의 간선부 용도기준에 따름 (권장용도:양화로변 업무기능특성화 지역 / 불허용도: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전면블럭) ◦양화로 보행활성화를 위해 양화로변 1층 전면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준주거지역(기준/허용) : 250%/350% ◦제2종일반주거지역(기준/허용) : 200%/200%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준용
	높이	◦준주거지역 : 6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30m 이하
기타	건축선	◦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 지정 - 양화로변 건축한계선(5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2m)
	차량출입 금지구간	◦주간선도로 양화로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화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공개공지	◦양화로변 결절점 공개공지 위치지정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조성계획 제시
운용기준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권한 :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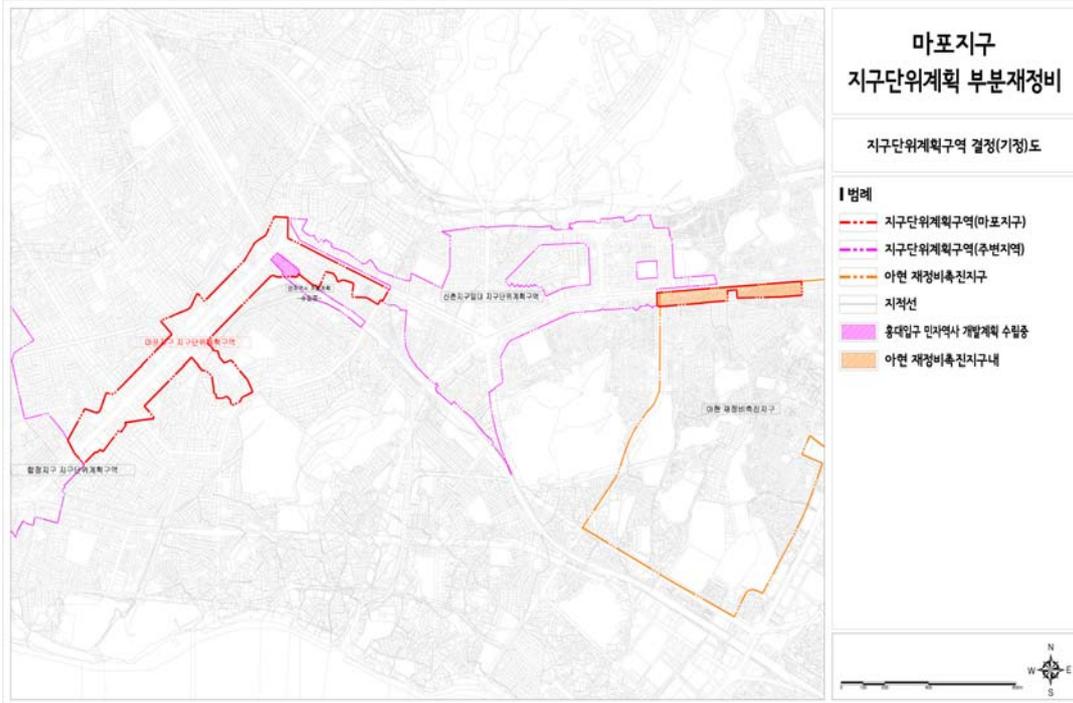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가능선, 필지교환가능선 포함)
2.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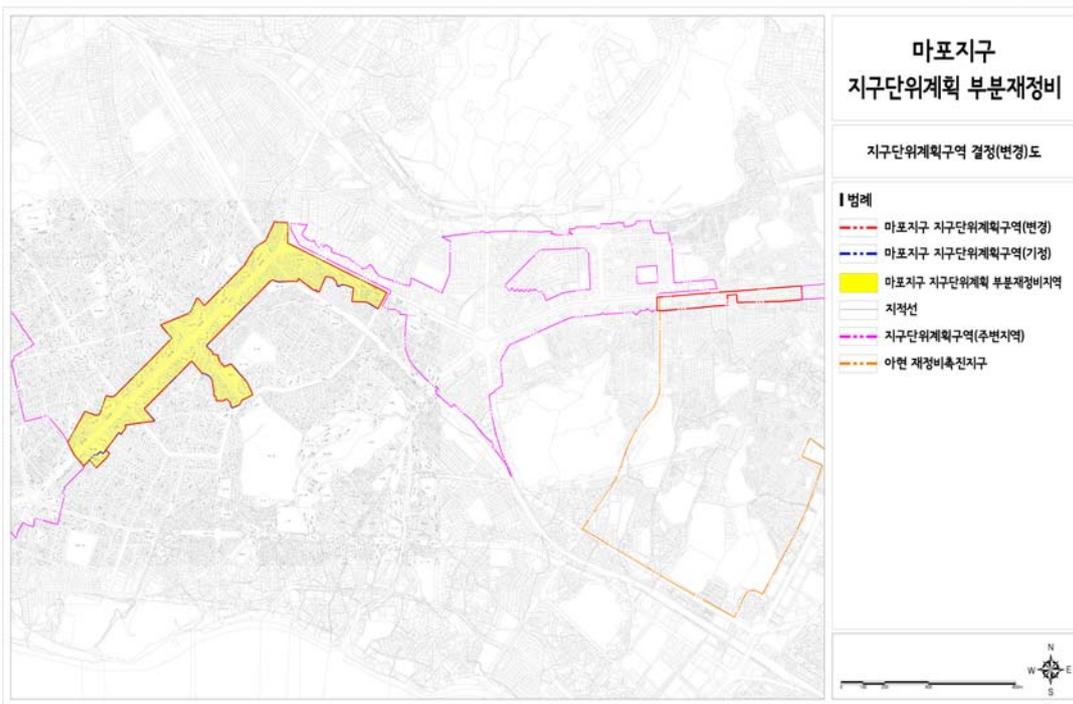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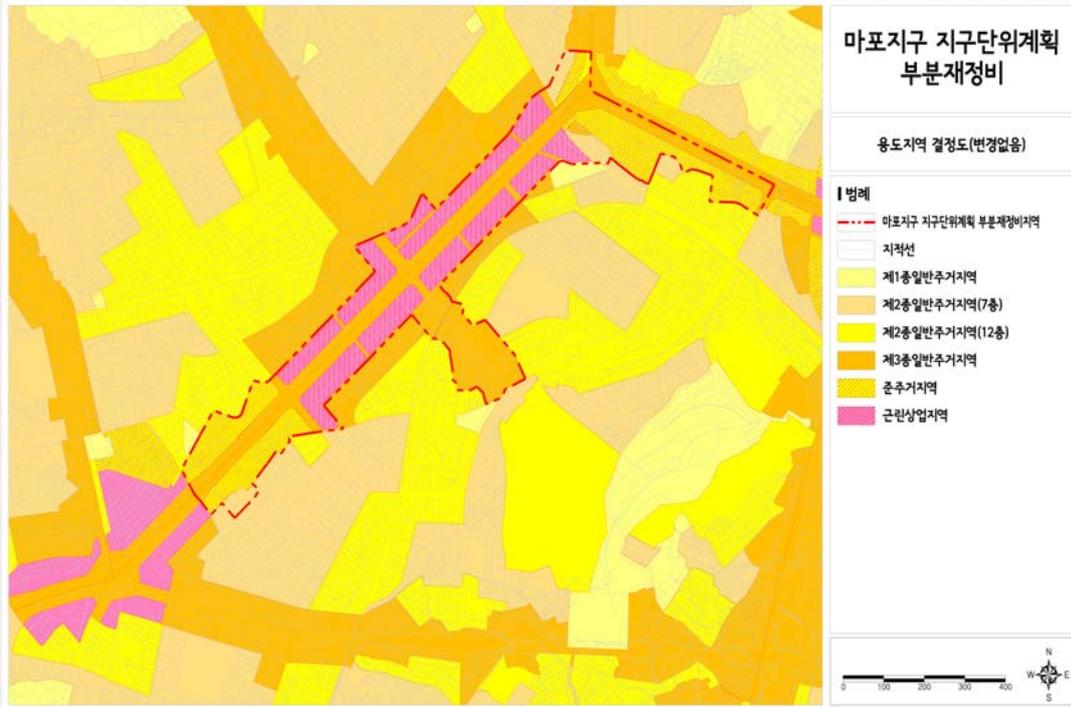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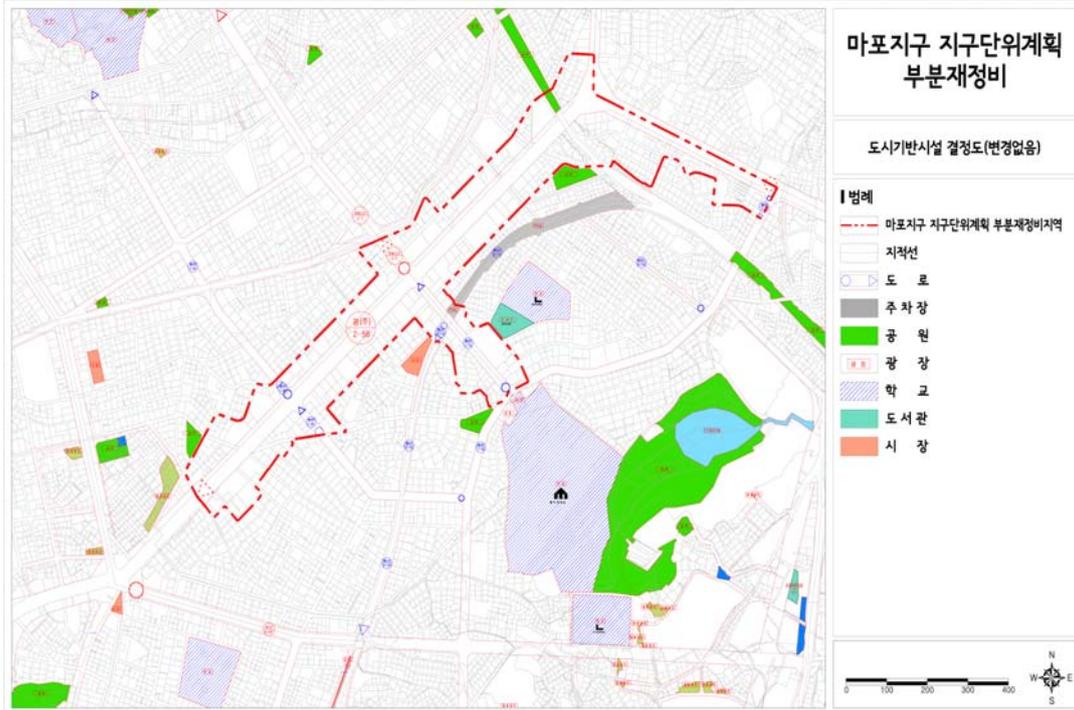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58호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목동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목동 919-7, -8부지에 대해 당초 토지 조성 목적을 유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당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열람기간 : 일간신문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2133 - 7081)  
서울특별시 양천구 균형발전과(☎ 2620-3531)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 없음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변경 없음
    -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
      -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신설)
        -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19,172.9	19,172.9		
신설	특별계획 3구역	목동 919-7, 919-8	-	증)19,172.9	19,172.9		

- (2)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신설) : 생략(열람장소 비치)
- 4. 세부조서 및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 비치)
- 5. 의견제출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균형개발과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열람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5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처분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3. 11. 14 ~ 2013. 11. 27(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내용	일시 및 장소	처분법규
(주)에스엠진흥건설 대표 신만후	건축공사업 01-2226	서울 송파구 삼전동 182-14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영업정지	2013.12.02.(월) 16:30 도시안전과 청문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3. 공고내용

- 가.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나. 진술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 다. 준비서류 : 참석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 참석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 (02) 2133-8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63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직인 등록 사유 : 일상경비출납원 과별 지정
2. 직인 등록 일자 : 2013. 11. 7.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건설총괄부 기획예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13. 11. 7.	
	건설총괄부 서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cm×1.8cm		2013. 11. 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64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0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 명	주 소		
김광동	경기도 평택시 허명굴길 2*, 2**호 (포승읍)	일시: 2013-10-13 10:40 장소: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대로 내용: 제한 폭 0.28m 초과	과태료:30만원

4. 공고기간 : 2013.11.14 ~ 2013.11.28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13.11.29 ~ 2013.12.18일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20일)**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붙임 의견진술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도로법 제10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 의견제출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담당자: 이상하(전자우편:sang5870@seoul.go.kr)
    - 전화번호: 02-2040-0322,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68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5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전공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일시 : 2012-10-02 10:20 장소 : 서울숲 앞 부근 도로 내용 : 경기06도8956차량 축하중 제3축 1.1톤 초과	과태료 50만원 부과

-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4.1.31.
  - 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2, 1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6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처분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 1. 공고기간 : 2013. 11. 14 ~ 2013. 11. 27(14일간)
-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연번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법규
						일시 및 장소	
1	씨엔에이치종합건설(주) 대표 이승우	건축공사업 01-0324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8-9(201호)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영업정지	2013.12.04.(수) 16:30 도시안전과 청문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2	희성건설(주) 대표 임종식	토목건축공사업 01-0277	서울 송파구 방이동 44-3 편대토퍽스빌딩 11층 1107호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말소	2013.12.09.(월) 13:30 도시안전과 청문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3. 공고내용
  - 가.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나. 진술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 다. 준비서류 : 참석자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 참석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 (02) 2133-8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70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2〕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일 : 2013년 11월 14일
2. 처분대상 : 28개 업체 (별첨)
3. 행정처분내용 : 사업정지 30일  
- 사업정지 기간 : 2013년 11월 15일 부터 2013년 12월 14일 까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등) 미달
5.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6. 유의사항 : 계속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행정처분 됩니다.
7. 기타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첨)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업체**

(사업정지 30일)

연번	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보험만료일
1	3795	(주)더캡틴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빌딩 208호	김**	2013-03-29
2	3776	타이거국제물류(주)	강남구 삼성로84길 23, 효령빌딩 201호(대치동)	최**	2013-03-02
3	3768	국제해운항공(주)	강서구 송정로 32-1 부영빌딩2층 (공항동)	여**	2013-02-10
4	3749	(주)코파스로직스	강남구 개포로24길 25, 두솔빌라 2층 303호 (개포동)	민**	2013-01-12
5	3748	(주)유니온티앤에스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청호빌딩 807호 (방이동)	박**	2013-01-16
6	3604	나우엔투비(주)	양천구 오목로 320-2, 청석빌딩 101호 (목동)	김**	2013-03-08
7	3585	(주)투케이로직스	마포구 홍익로5길 31, 금성빌딩 304호 (서교동)	김**	2013-01-24
8	3378	(주)엔에이에스항공해운	강서구 금남화로 91-12 인현빌딩 4층 (방화동)	이**	2013-02-22
9	3309	(주)다원해운항공	마포구 양화로 175, 마젤란21오피스텔 1008호 (동교동)	김**	2013-01-30
10	3199	(주)에스케이에스로직스	송파구 오금로 111, 세기빌딩 803호 (방이동)	채**	2012-12-02
11	3052	피앤비(주)	마포구 월드컵로 98, 서현빌딩 2층 (서교동)	이**	2013-03-21
12	3049	(주)마이지엘에스	강남구 논현로76길 7 제임스빌딩 4층 (역삼동)	김**	2013-03-07
13	3028	(주)미래스피드해운항공	중구 퇴계로 180-9, 4층 (필동1가)	윤**	2013-02-09
14	2720	(주)씨엠에스로지스틱코리아	구로구 경인로20나길 30 이좋은집오피스텔 1530호 (오류동)	조**	2013-03-16
15	2471	(주)건일해운항공	강서구 금남화로 91-12, 인현빌딩 4층 (방화동)	김**	2013-01-05
16	2468	(주)가나케이에이전시	서초구 효령로 335, 대호프레조빌 205호 (서초동)	이**	2012-12-31
17	2306	월천통상해운(주)	중구 남대문로7길 19 삼구빌딩 1405호 (소공동)	최**	2013-02-18
18	2301	한국이청로지스틱스(주)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내수동)	왕**	2013-03-04
19	2088	(주)승민트랜스월드	강서구 공항대로 426, VIP오피스텔 5층 19호	오**	2013-03-05
20	2075	(주)세종에어앤씨	강서구 등촌로51길 23 (등촌동)	양**	2012-12-06
21	1863	(주)엔더블유익스프레스	강서구 공항대로 417, 아네스빌딩 6층 (등촌동)	조**	2013-01-08
22	1708	(주)위덱스해운항공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장교동)	윤**	2013-04-22
23	1656	(주)정상종합물류	강서구 국회대로7길 182 (화곡동)	윤**/ 고**	2012-11-05
24	1643	미래해운항공(주)	마포구 월드컵북로 56, 태근빌딩 2층(성산동)	박**/ 여**	2013-01-09
25	1518	송원엔터프라이즈(주)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을지로1가)	노**	2012-12-12
26	1372	하이스트로직스(주)	중구 남대문로1길 34, 범화빌딩 707호 (북창동)	황**	2012-11-09
27	1161	(주)에이팩코리아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9, 원성빌딩 3층(서초동)	곽**	2013-04-24
28	897	(주)가우트랜스	강서구 강서로68길 23 (등촌동)	권**	2013-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7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처분 공시송달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실시 및 영업정지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 및 영업정지 의견제출통지 기한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의견제출통지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1	200481	(주)엠엠씨테크놀로지	홍승익	서울 강남구 역삼로120, 4층 (역삼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청문(등록취소)
2	201185	(주)푸른정보통신	김재성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9길 19, 5층 (서초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청문(등록취소)
3	201218	오버컴(주)	김광식	서울 용산구청 파로132,나진19동3층좌열37 호(가열300호) (한강로2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	청문(등록취소)
4	310153	(주)인스프리트	이창석	서울강남구영동대로517,2502호 (삼성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5	112466	이씨엠아시아아이티 에스(주)	최영규	서울강서구허준로217,203-2호 (가양동, 가양테크노타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6	201510	(주)한국네트인	김광훈	서울 금천구 가산동 426-5 월드메르디앙벤처2차 901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7	201510	(주)지엠전력	김병운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6, 4층 (송파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8	200831	(주)대성신호	천민기	서울 서초구 땀마을2길 7 (내곡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9	110789	(주)에스테크윈	송영훈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214-1 (화곡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10	113145	(주)휴텍이일	박태환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2로115,3차113 호 (가산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11	110817	(주)남선통신공사	남선우	서울 광진구 자양로 54, 2층 (자양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12	201048	(주)한국아이오테크	이진수	서울 강남구 언주로 647, 6층 (논현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13	111367	(주)이지씨앤씨	조영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802호(상암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청문(등록취소)
14	200769	(주)대한아이앤씨	임해곤	서울 관악구 봉천로 393,39봉천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개월
15	112607	(주)디아이네트웍스	나영철	서울 성북구 종암로 25길 21, 1층(종암동)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3개월
16	110618	(주)빅토리정보기술	김옥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29, 1층 2~3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개월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공고기간 : 2013. 11. 14. ~ 11. 28.
4. 청문실시 및 영업정지 의견제 제출 기한
  - 청문실시 : 2013.11.28.(금) 10:00~17:00
  - 영업정지 의견서 제출 기한 : 2013. 11. 28(금)
  - 장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02-2133-2897,FAX 2133-1074)
  - 부서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신경철 전자우편 shin1204@seoul.go.kr
  - ※ 처분의 감경 :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사항을 보완시 예정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7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1	서울레저산업(주)	서동식	2013.10.02	서울130054	서초구 강남대로 213, 지하1층(양재동)	520,020	신규등록
2	(주)정훈종합건설	김광석	2013.10.02	서울130055	금천구 서부샛길 606, 에이동 2064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	500,000	신규등록
3	에이치에스건설공영(주)	김용오	2013.10.16	서울130056	용산구 효창원로 155, 3층 (효창동, 우도빌딩)	965,000	신규등록
4	(주)한흥	한현석	2013.10.21	서울130057	강남구 봉은사로 430(삼성동)	300,000	신규등록
5	한국콘텐츠진흥원	홍상표	2013.10.22	서울130058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06,347,717	신규등록
6	(주)벽안개발	강영미	2013.10.24	서울130059	강남구 테헤란로 313, 1411호(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300,000	신규등록
7	희원산업개발	이진우 성낙윤	2013.10.28	서울130060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406호(서초동, 엘지서초에클라트)	900,000	신규등록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 /폐업사유	비 고
8	(주)티시스	김기유 강태덕	2013.10.25	서울130061	중구 장충단로8가길 1, 지하1층(장충동1가)	2,290,930	신규등록
9	처인레저(주)	최규완	2013.10.30	서울130062	마포구 마포대로 45, 14층 (도화동, 일진빌딩)	300,000	신규등록
10	리오파크산업개발(주)	최상희 현승남	2013.10.01	서울100056	성동구 왕십리로33길 4, 1층(하왕십리동)	사업종료	폐업
11	스타프리빌(주)	구백서	2013.10.08	서울120029	강남구 선릉로108길 9, 4층(삼성동)	사업종료	폐업
12	(주)아이오엔디	김수창	2013.10.14	서울100082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4층(여의도동)	사업실적 없음	폐업
13	(주)제이알제10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권영철	2013.10.16	서울130008	강남구 연주로 431, 8층(역삼동, 삼봉빌딩)	사업종료	폐업
14	우석하우징(주)	원필욱	2013.10.17	서울110066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9, 104호(용답동)	사업종료	폐업
15	정은건설(주)	이영직	2013.10.24	서울090080	중구 다산로 56, B102호(신당동)	사업종료	폐업
16	(주)글로스타개발	허양도	2013.10.24	서울110078	종로구 동호로38길 24(종로5가)	사업종료	폐업
17	(주)남정디앤피	송오근	2013.10.29	서울090003	강남구 남부순환로377길 6, 4층(도곡동)	개발사업 종료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8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3. 11. 14 ~ 2013. 11. 27(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일시 및 장소	법적근거
씨티엘건설(주) 대표 최태랑	건축공사업 10-1243	서울 송파구 오금동 130-8 경신빌딩 301호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말소	2013.12.06.(금) 13:30 도시안전과 청문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 (02) 2133-8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8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해 처분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로 청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3. 11. 14(목) ~ 2013. 11. 28(목)  
2. 공고대상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 내용	예정 처분
예화건설(주) 대표 : 맹춘태	건축공사업 01-2886	서울 중랑구 묵동 169-10 묵동신도주상복합아파트	시정명령 불응에 대한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건설업 등록말소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

4. 공고내용

- 가. 청문일자 : 2013. 11. 29(금). 10: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비서류 : ①참석자신분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인감도장, ④대리인선임통지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⑤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⑥기타 이견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 (02) 2133-8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82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헬씨 라이프	서울 제756호	전두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1길 12, 3층 (역삼동, 조앤리빌딩) (☎ 02-6349-4483)	소재지 ('13.11.06)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18, 2층,5층(대치동, 갑신빌딩)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1길 12, 3층(역삼동,조앤리빌딩)
				전화번호 ('13.11.06)	02-522-4481	02-6349-448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민생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8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해 처분근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일 내에 의견서 제출로 청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3. 11. 14(목) ~ 2013. 11. 28(목)
2. 공고대상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 내용	예정 처분
(주)티탄건설 이희승	건축공사업 01-2462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7-5 삼각한아이원플러스 406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	건설업 영업정지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

4. 공고내용

가. 청문일자 : 2013. 12. 02(월). 10: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비서류 : ①참석자신분증, ②법인인감증명서, ③법인인감도장, ④대리인선임통지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⑤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⑥기타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 (02) 2133-8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노원구고시 제2013-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89호(2006.8.2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 2013-24호(2013.6.27)로 고시 완료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66-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 편입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66-5번지 일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다. 면 적 : 803㎡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4. 12. 3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변경)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월계동 566-5	진	172	172	선우원빈	노원구 공릉동 106 호성화운트빌 310-702	선우석빈	노원구 공릉동 743 한보 아파트 102-801	권리내용 근저당 설정	빈
2	월계동 567-2	진	1	1	김문진	서울 도봉구 미아동 62-3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반등출장소)	"	경
3	월계동 568-2	대	385	385	송운택	노원구 중계동 360-15 건영아파트 309-906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중계동지점)	"	임
4	월계동 산108-22	임	206	206	(주)이신일 세기개발	노원구 월계동 70-6				
5	월계동 산108-23	임	2,947	39	서울시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월계동 566-5	담장	철제	24m	선우원빈	노원구월계로296-14 (월계동)							
2		바닥포장	콘크리트	158㎡									
3		정원석	석재	20m									
4		수목	회양목	20m									
5		수목	감나무	2주									
6		옹벽	콘크리트	10m									
7	월계동 568-2	건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층:근생 2층:주거))	철근콘크리트 (1층:76.88㎡, 2층:76.88㎡)	153.76㎡	송운택	노원구노원로22길7기 , 309동906호(중계동, 건영아파트)	하나은행	서울중구을지 로1가101-1 (중계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8		베란다	철근콘크리트 (2mx7m)	1식									
9		계단	철근콘크리트 (1.5mx7m)	1식									

연번	소재지 지번	물간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0		작업선반 (6단*2열)	각파이프 200*60*350cm	1개	김용성	노원구월계로294 (월계동)					
11		작업선반 (2단*6열)	각파이프 760*120*350cm	1개							
12		작업선반 (2단*2열)	각파이프 250*200*350cm	1개							
13		작업선반 (2단*2열)	각파이프 230*210*350cm	1개							
14		작업선반 (4단)	각파이프 90*60*200cm	1개							
15	568-2	작업선반 (3단*3열)	각파이프 300*110*350cm	1개							
16		작업선반 (3단)	철제앵글 650*30*450cm	1개							
17		작업선반 (3단)	각파이프 170*50*150cm	1개							
18		작업선반 (4단)	합판 200*30*120cm	1개							
19		전동셔터	스테인리스 3m*4m	2개							
20		휴게실	2m*2m	4㎡							

연번	소재지 지번	물간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1	568-2 월계동	난방시설 (휴게실)	전기판넬/방수 시트/은박시크	1식	김용성	노원구월계로294 (월계동)				
22		화장실	1.5m*3m	4.5㎡						
23		바닥방수	우레탄 13.4m*10.3m	138㎡						
24		건축자재	배관/잡철물	1식						
25	568-2 월계동	가추	각파이프/ 판넬(100mm)	47㎡	김용성	노원구 월계로 294				
26		작업선반 (2단)	각파이프 1080*200*400cm	1개						
27		작업선반 (1단)	각파이프 410*390*230cm	1개						
28		작업선반 (3단)	철제앵글 400*50*300cm	1개						
29	568-2 월계동	건축자재	스트로폼등	1식	김용성	노원구 월계로 294				
30		건축자재	pvc파이프/부속	1식						
31		건축자재	단열재	1식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령(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2	월계동 568-2 1층 외부	작업신반	파이프등 1190*1400*600cm 데크플레이트(820 *550cm2개)	1식	김용성	노원구 월계로 294					
33		바닥포장	콘크리트	147㎡							
34		옥상방수	에폭시	86㎡							
35		야적장조명	진등	1식							
36		보안시설		1식							
37		간판	철제	8m*2m							
38		작업신반	철제 260*1000*400cm	1개							
39		바닥포장	보도블럭	9㎡							
40		섯터	알루미늄 6.4m*4m	1개							
41		배수시설	트렌치	0.3m*30m 0.3m*12m							
42		응벽	시멘트	1.25m*13.6m*두께0.3m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용(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43	2층 주거 월계동 568-2	신발장	목제	2m*3m*0.6m	김용성	노원구 월계로 294				
44		수납장	목제	2m*3m*0.6m						
45		내장단열시설 (열반사단열제)	온돌이	1식						
46			계단 샷시	7m(L)*4m(H)						
47		기초 (베란다샷시)	2m*7m	1식						
48		웬스	망(철제)	25m						
49		수목	은행나무	2주						
50		수목	고욤나무	2주						
51		수목	앵두나무	2주						
52		수목	등나무	1주						
53		전기시설	공영용	1식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54	월계동 산108-22	수목	향나무	12주	(주)이십일세기개발	강남구역신동702-10 안암타워1709호				
55		수목	주목	5주						
56		수목	은행나무	1주						
57		수목	청단풍	1주						
58		수목	목련	4주						
59		수목	사철나무	20주						
60		수목	개나리	20m						
61		수목	철쭉	5주						
62		수목	회양목	15주						

영업권 실 조 서

- 사업명 :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 실시계획인가 : 노원구고시 제2013-24호(2013.6.27)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업종	영업내용	권 리 자			비 고
					상 호	성 명	주 소	
1	노원구 월계동568-2	영업권	건축자재 도·소매	현장/철물점 납품	대흥종합건설사	김용성	월계로296-14(월계동)	

◆ 서초구고시 제2013-1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초구고시 제2012-26호(2012.4.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되고, 서초구고시 제 2012-116호(2012.12.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서초구 고시 제 2013-77호(2013.7.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한 내곡동 화훼단지 진출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당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3058번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 12-72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서울강남보급자리지구(화훼단지 진출입로) 도로개설사업

다.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 폭원 12m, 연장 57m(교량설치 L=28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사업본부장 구분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40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2.12.6 ~ 2013.10.30
- 변경 : 2012.12.6 ~ 201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자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권리종류	권리자주소	성 명
1	내곡동	1-3058	도	3,755	327	국	국토해양부			
2	내곡동	1-1745	도	24	17	국	국토해양부			
3	내곡동	1-849	도	37	5	국	국토해양부			
4	내곡동	1-2389	천	2,582	181	공	서울시			
5	내곡동	산12-721	도	3,599	185	국	국토해양부	공유 (1/4지)	서초동 산 90-1 우성아파트 5동 601호	홍기득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3-10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34호(1983.09.0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호(2012.01.19)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강남구고시 제2012-21호(2012.3.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강남구 개포동 175-4번지, 달터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3423-62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5-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달터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 210㎡

라. 사업시행자

- 당 초  
성명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변 경  
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기간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2년 12월 31일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14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강남구 개포동 175-4	공원	17,658.1	210	서울특 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남구 개포동 175-4	무허가건물	목재(94.38㎡)	1	주거	강순선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6길 25, 201호(개포동, 산호빌라)			

◆ 강남구고시 제2013-10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3호(2009.7.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재정비)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8-1번지 외 8필지에 대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 남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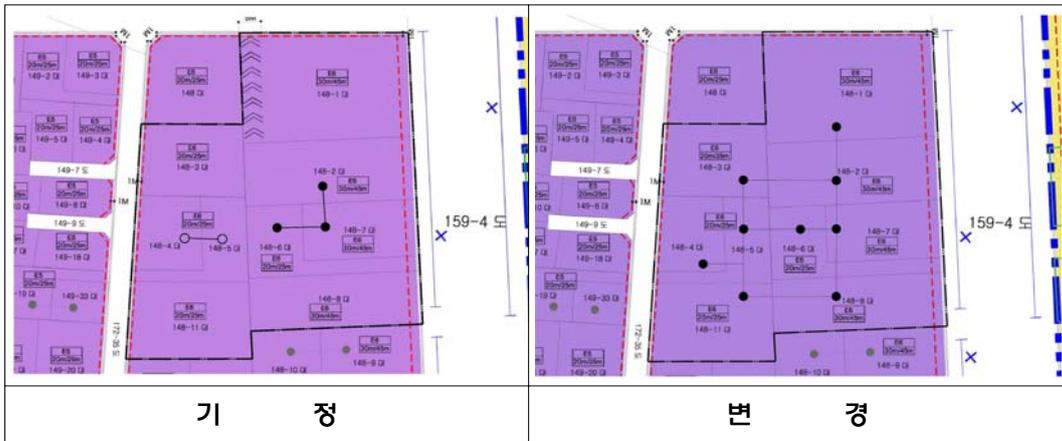
-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대한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구			공 동 개 발				비 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 치	대지면적(㎡)	계획면적(㎡)		
신설	E6	9,108.2	기정	삼성동 148-1대	1,329.9	-	•공동개발 지정 (기공동개발)	
				148-2대	780.7	1,667.8		
				삼성동 148-6대	414.8			
				148-7대	472.3	701.2		
				삼성동 148-3대	549.9			•공동개발 권장 (적정개발규모유도)
				삼성동 148-4대	363.9			
				148-5대	337.3	-		-
			삼성동 148-8대	662.2	-	-		
			삼성동 148-11대	689.0	-	-		
			변경	148-1대	1,329.9	•공동개발(지정) •보차혼용통로 폐지		
				148-2대	780.7			
				148-3대	549.9			
				148-4대	363.9			
				삼성동 148-5대	337.3		5,600.0	
148-6대	414.8							
148-7대	472.3							
148-8대	662.2							
148-11대	689.0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4. 관계도면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 :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13-9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196호(1979.05.1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6호(2004.7.1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1호(2006.10.19)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42호(2013.10.0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9-3일대 서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의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며,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9-3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2) 사업의 명칭 : 서일대학교 강의동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 토지면적 : 기정 22,411.1㎡ → 변경 24,509.7㎡  
 연 면 적 : 기정 60,203.3㎡ → 변경 71,598.9㎡  
 건축면적 : 기정 7,998.5㎡ → 변경 8,918.9㎡  
 건축물 규모 : 지하4층, 지상11층

라. 사업의 시행자 : 학교법인 세방학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권리

구분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현황	비고
기 존 부 지	1	37-1	학교용지	5,929.0	5,929.0	-	학교법인 세방학원	
	2	49-3	학교용지	14,226.0	14,226.0	-	학교법인 세방학원	
	3	53-1	학교용지	494.6	494.6	-	학교법인 세방학원	
	4	53-21	학교용지	1,139.5	1,139.5	-	학교법인 세방학원	
	5	1322-14	구거	641.0	622.0	19.0	중랑구	

구분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현황	비고
소계				22,430.1	22,411.1	19.0		
추가 부지	9		전	121.0	121.0	-	학교법인 세방학원	
	10		대	572.0	572.0	-	학교법인 세방학원	
	11		대	586.0	586.0	-	학교법인 세방학원	
	12		대	331.0	331.0	-	학교법인 세방학원	
	13		대	488.6	488.6	-	학교법인 세방학원	
소계				2,098.6	2,098.6	-		
총계				24,528.7	24,509.7	19.0		

사. 관계도서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부터 14일

아. 관련도서 : 생략 (중량구 건축과 비치도서와 같음(2094-2293))

◆ **성북구공고 제2013-1042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8호(2013.05.2)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조성계획 변경(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4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산2-1번지 일대(오동근린공원)

나. 오동근린공원 면적 : 1,532,959.4m<sup>2</sup>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오동근린공원내 동덕여대 기숙사 신축)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산1-62, 하월곡동 산2-88

- 규 모 : 건축면적 1,328.38m<sup>2</sup>, 연면적 9,081.30m<sup>2</sup> 층수 지하2층/지상4층

- 주요시설 : 기숙실 152실, 주차대수 38대, 열람실, 강당, 세미나실 등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920-3795)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괄표(지구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계	1,532,959.4	352,076	25	19,052.52	43,757.54	138	1,532,959.4	353,562.5	26	20,380.90	52,838.84	160	증 1,487㎡
“가”지구	665,190	193,263	11	9,591.76	22,003.86	69	665,190	193,263	11	9,591.76	22,003.86	69	
“나”지구	241,948	40,984	1	1,249	5,574	25	241,948	40,984	1	1,249	5,574	25	
“다”지구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2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2	
“라”지구	183,403	68,206	11	5,183.99	7,033.00	2	183,403	69,693	12	6,512.37	16,144.30	24	증 1,487㎡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1. “가”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합 계	665,190	193,263	11	9,591.76	22,003.86	69	665,190	193,263	11	9,591.76	22,003.86	69	665,190	193,263	11	9,591.76	22,003.86	69			
기	52,077	52,077					52,077	52,077					52,077	52,077							
반	36,995	36,995					36,995	36,995					36,995	36,995							
시	200	200					200	200					200	200							
설	14,882	14,882					14,882	14,882					14,882	14,882							
조경 시설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휴양 시설	13,658	13,658	1	44.80	44.80	1	13,658	13,658	1	44.80	44.80	1	13,658	13,658	1	44.80	44.80	1			
유희 시설	1,655	1,655					1,655	1,655					1,655	1,655							
운동 시설	7,012	5,582				31	7,012	5,582				31	7,012	5,582				31			
교양 시설	51,508	51,508	4	3,284.59	8,625.08	1	51,508	51,508	4	3,284.59	8,625.08	1	51,508	51,508	4	3,284.59	8,625.08	1			
편익 시설	9,632	9,632	4	1,928.92	2,235.64	1	9,632	9,632	4	1,928.92	2,235.64	1	9,632	9,632	4	1,928.92	2,235.64	1			
관리 시설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1,829	1,829	1	547.40	1,372.33				
녹지 / 기타	470,497						470,497						470,497								
공원시설물 (법정40%)	(193,263㎡ / 665,190㎡) × 100% = 29.05 %																				
간폐물(10%)	(9,591.76㎡ / 665,190㎡) × 100% = 1.44%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운동시설물 (법정 20%)	(8,260㎡ / 193,263㎡) × 100% = 4.27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기)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 축 물(㎡)	연면적 (기)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665,190	185,401	11	9,591.76	22,003.86	69				665,190	185,401	11	9,591.76	22,003.86	69						
	소 계			52,077	52,077								52,077	52,077										
	도로		전지역	36,995	36,995								36,995	36,995										
	오동교		미아4동 산35-1, 25-1	200	200								200	200										
			가	10개소	14,882	14,882							14,882	14,882										
			가-1	변동 산28-6, 산28-9, 23,87, 87-189, 89-3, 95-7,627-1,	(2,873)	(2,873)							(2,873)	(2,873)										
			가-2	변동 92,93-2	(33)	(33)							(33)	(33)										
			가-3	변동 산28-6	(14)	(14)							(14)	(14)										
			가-4	변동 산28-6	(300)	(300)							(300)	(300)										
			가-5	변동 산28-6, 산28-3, 120-1, 120-6, 121	(11,316)	(11,316)							(11,316)	(11,316)										
		가-6	변동 916	(127)	(127)							(127)	(127)											
		가-7	변동 93	(54)	(54)							(54)	(54)											
		가-8	변동 산28-6	(79)	(79)							(79)	(79)											
		가-9	변동 92,628	(58)	(58)							(58)	(58)											
		가-10	변동 산28-6	(28)	(28)							(28)	(28)											
		소 계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57,322	57,322	1	3,786.05	9,726.01	35							
조 경 시 설	월영연못	나	변동 산28-6	12,526	12,526							12,526	12,526											
		다	2개소	3,971	3,971							3,971	3,971											
		다-1	변동 산28-6, 28-3	(2,829)	(2,829)							(2,829)	(2,829)											
		다-2	변동 산28-6 외 5필지	(1,142)	(1,142)							(1,142)	(1,142)											
		라	변동 산28-6 외 5필지	3,598	3,598							3,598	3,598											
		미러폰드	①	변동 120-1 외 3필지	2,400	2,400						2,400	2,400											
			②	변동 산28-3	386	386						386	386											
		점핑분수																						

구분	시설명	범 경 진						범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조 경 시 설	저류지	마	반동 산28-6	467	467																
	아생초하원	바	반동 산28-6 산28-7	11,070	11,070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지하2층 지상2층	3,786.05	9,726.01		
		사	2개소	21,664	21,664																
	잔디마당	사-1	반동 산28-6	(13,228)	(13,228)																
		사-2	반동 산28-6 외 6필지	(8,436)	(8,436)																
	장포원	아	반동 산28-6 120-1	1,167	1,167																
	낙수대	③	반동 산28-6	73	73																
	월광폭포	④	반동 산28-6	-	-		철골 인강암			1										1	
	월광대	⑤	반동 산28-6	-	-		철골 석재			1										1	
	월영대	⑥	반동 산28-6	-	-		철골 석재			1										1	
	진동장자	⑦	반동 산28-6	-	-					2										2	
⑦-1		반동 산28-6	-	-		목재			(1)										(1)		
⑦-2		반동 산28-6	-	-		목재			(1)										(1)		
파고라	⑧	반동 산28-6	-	-		목재			13										13		
조 형	⑨	반동 산28-6	-	-		마구조			1										1		
파고라	⑩	반동 산28-7	-	-					10										10		
환 경 조 형물	⑪	반동 산28-10	-	-					4										4		
조형화본	소 계			13,658	13,658	1	44.8	44.8	1										4		
휴 양 시 설	자	11개소	2,621	2,621					13,658	13,658									1		
	자-1	반동 산28-6	(364)	(364)					2,621	2,621									44.8		
	자-2	반동 산28-6	(303)	(303)					(364)	(364)											
	자-3	반동 산28-6	(126)	(126)					(303)	(303)											
	자-4	반동 산28-10	(215)	(215)					(126)	(126)											
	자-5	반동 산28-10	(188)	(188)					(215)	(215)											
자-6	반동 산28-10	(333)	(333)					(188)	(18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휴게소		자-7	번동 산28-10	(137)				자-7 번동 산28-10	(137)												
		자-8	번동 산28-10	(545)				자-8 번동 산28-10	(545)												
		자-9	번동 산28-10	(200)				자-9 번동 산28-10	(200)												
		자-10	번동 산28-10	(80)				자-10 번동 산28-10	(80)												
		자-11	번동 산28-10	(130)				자-11 번동 산28-10	(130)												
		카	9개소	10,408				카 9개소	10,408												
		카-1	번동 산28-6	(780)				카-1 번동 산28-6	(780)												
		카-2	번동 산28-6	(146)				카-2 번동 산28-6	(146)												
		카-3	번동 산28-6	(72)				카-3 번동 산28-6	(72)												
		카-4	번동 산28-6	(419)				카-4 번동 산28-6	(419)												
		테크센터		카-5	번동 산28-6	(7,735)			카-5 번동 산28-6	(7,735)							지상 1층		44.80	44.80	
카-6	번동 산28-6 산28-3			(966)			카-6 번동 산28-6 산28-3	(966)													
카-7	번동 산28-10			(79)			카-7 번동 산28-10	(79)													
카-8	번동 산35-64			(92)			카-8 번동 산35-64	(92)													
카-9	번동 산28-3			(119)			카-9 번동 산28-3	(119)													
타	5개소			629			타 5개소	629													
타-1	번동 산28-6			(49)			타-1 번동 산28-6	(49)													
타-2	번동 산28-6			(268)			타-2 번동 산28-6	(268)													
타-3	번동 산28-6			(41)			타-3 번동 산28-6	(41)													
타-4	번동 산28-6, 92			(195)			타-4 번동 산28-6, 92	(195)													
수법센터				타-5	번동 산28-6, 628	(76)			타-5 번동 산28-6, 628	(76)											
		㉔	전지역	-			㉔ 전지역	-													
		㉕-1	번3동 산28-10일대				㉕-1 번3동 산28-10일대								목재 (플라스틱)						
		소 계		1,655				1,655													
		정 자		1,655				1,655													
		소 계		1,655				1,655													
		어린이 놀이터		파	3개소	1,655			파 3개소	1,655											
				파-1	번동 산28-6	(482)			파-1 번동 산28-6	(482)											
				파-2	번동 산28-1	(458)			파-2 번동 산28-1	(458)											
				파-3	번동 산28-10	(715)			파-3 번동 산28-10	(715)											

구분	시설명	범 경 진						범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층)	바닥면적	건축물(㎡)	공적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층)	바닥면적	건축물(㎡)	공적물(기)	
운동시설	소계			7,012	5,582					31										31	
	체력 단련장	하	1개소	310	310																
		하-1	범동 산28-10	(310)	(310)																
	대목적 운동장	거	2개소	1,068	1,088																
		거-1	범동 산28-1	(491)	(491)																
		거-2	범동 산28-1	(577)	(577)																
		너	7개소	3,476	3,476																
		너-1	범동 산28-10	(585)	(585)																
		너-2	범동 산28-10	(537)	(537)																
		너-3	범동 산28-10	(561)	(561)																
배드민턴장		너-4	범3동 산28-87	(519)	(519)																
		너-5	범3동 산28-8	(426)	(426)																
		너-5	범3동 산28-71	(426)	(426)																
		너-6	범3동 산35-65 산 28-88	(848)	(848)																
체력단련 시설	소계	㉓	전지역	2,158	728					31										31	
	구한옥	1	범동 93-1일대	800	800																
	문화센터	2	범동 산28-6	4108	4108																
교양시설	미술관	3	범동 산28-6	1,187	1,187																
	야생화원																				
	단풍 식물원	더	범동 산28-10일대	33,610	33,610																
교양시설	회무원	머	범3동 산28-8	11,803	11,803																
	무대 조형물	㉔	범동 산28-6	-	-					1										1	

구분	시열명	법 경 진						법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열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열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편 의 시 설	소계			9,632	9,632	4	1,928.92	2,235.64	1											
	주차장	머	반동 산28-6	3,026	3,026															
	주차장	버	반동 산28-6	125	125															
	주차장	서	반동 산28-6	226	226															
	전망대	4	반동 산28-6	2,169	2,169	철골 철근조	지상3층	852.79	1,075.03											
	레스토란	5	반동 산28-6	3,082	3,082	철근조 지상1층	지상1층	487.90	487.90											
	글레스 파빌리온	6	반동 산28-6 120-1	446	446	철근조 지상1층	지하1층 지상1층	381.95	466.43											
	아이의 화장실	7	반동 산28-6	558	558	철근조 지상1층	지상1층	206.28	206.28											
	경사형엘리베이터	⑤	반동 산28-6							1										1
	관 리 시 설	소 계			1,829	1,829	1	547.40	1,372.33											
방문자 센터		8	반동 산28-9임	1,829	1,829	철근조	지하1층 지상2층	547.40	1,372.33											
녹지 및 기타				470,497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2. “나”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41,948	40,984	1	1,249 5,574	25	241,948	40,984	1	1,249 5,574	25
기	24,932	10,727				24,932	10,727			
반	23,416	9,211				23,416	9,211			
시	1,516	1,516				1,516	1,516			
설	-	-			13	-	-			13
조경 시설	641	641			2	641	641			2
휴양 시설	2,776	2,776				2,776	2,776			
유희 시설	4,632	4,632			10	4,632	4,632			10
운동 시설	19,797	19,797	1	1,249 5,574		19,797	19,797	1	1,249 5,574	
교양 시설	2,411	2,411				2,411	2,411			
편의 시설	-	-				-	-			
관리 시설	186,759					186,759				
녹지 / 기타										
공원시설율 (법정40%)	$(40,984\text{㎡} / 241,948\text{㎡}) \times 100\% = 16.93\%$									
건폐율(10%)	$(1,249\text{㎡} / 241,948\text{㎡}) \times 100\% = 0.52\%$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운동시설율 (법정 20%)	$(6,352\text{㎡} / 40,984\text{㎡}) \times 100\% = 15.5\%$ $(6,352\text{㎡} / 40,984\text{㎡}) \times 100\% = 15.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번						번						비고					
		경			전			경			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 계		241,948	40,984		1	1,249	5,574	25			241,948	40,984		1	1,249	5,574	25	
	소 계		24,932	10,727								24,932	10,727						
	도로		23,416	9,211								23,416	9,211						
	광 장	가	4개소	1,516	1,516						가	4개소	1,516	1,516					
		가-1	번2동 신27-108일대	(318)	(318)						가-1	번2동 신27-108일대	(318)	(318)					
		가-2	번2동 신27-117일대	(217)	(217)						가-2	번2동 신27-117일대	(217)	(217)					
		가-3	번2동 신27-8일대	(91)	(91)						가-3	번2동 신27-8일대	(91)	(91)					
		가-4	번2동 신27-8일대	(890)	(890)						가-4	번2동 신27-8일대	(890)	(890)					
		소 계		-	-					13			-	-					13
	조 경 시 설	파고라	①							13		전지역							13
소 계			641	641					2	나	3개소	641	641					2	
휴 양 시 설	휴게소	나	3개소	641	641					나	3개소	641	641						
		나-1	번2동 신27-120일대	(393)	(393)					나-1	번2동 신27-120일대	(393)	(393)						
		나-2	번2동 신27-8일대	(90)	(90)					나-2	번2동 신27-8일대	(90)	(90)						
	나-3	미아9동 신25-1일대	(158)	(158)					나-3	미아9동 신25-1일대	(158)	(158)							
	②	전지역							2	②	전지역							2	
	정 자	②-1	미아9동 신25-50일대						(1)	②-1	미아9동 신25-50일대								(1)
	②-2	미아9동 신25-1일대						(1)	②-2	미아9동 신25-1일대								(1)	

구분	시설명	법 경						법 경						공작물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유 회 시 설	소 계	다	4개소	2,776	2,776																
		다-1	미이9동 산25-43일대	(446)	(446)																
		다-2	번2동 산 27-108일대	(1,000)	(1,000)																
		다-3	번2동 산27-5일대	(950)	(950)																
인 등 시 설	소 계	다-4	미이9동 산25-28일대	(380)	(380)																
		라	2개소	4,632	4,632															10	
		라-1	미이9동 산25-52일대	(2,320)	(2,320)																
		라-2	미이9동 산34-2일대	(701)	(701)																
교 양 시 설	소 계	마	미이9동 산25-46일대	(515)	(515)																
		바	번2동 산25-1일대	(1,096)	(1,096)																
		전지역																			
		전지역																			
교 양 시 설	소 계	1	번2동 산27-108일대	1,720	1,720																
		사	미이9동 산25-1일대	538	538																
		아	번2동 산 122-55일대	921	921																
		자	번2동 산 122-42일대	3,888	3,888																
교 양 시 설	소 계	차	번2동 산 122-10일대	12,730	12,730																
		전지역																			
		전지역																			
		전지역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후				공적물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적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연면적	공적물 (기)
필요시설	소계			2,411	2,411							2,411	2,411							
	약수터	카	번2동 123-4일대	(164)	(164)						카	번2동 123-4일대	(164)	(164)						
		타	4개소	2,247	2,247					타	4개소	2,247	2,247							
	주차장	타-1	번2동 신27-120일대	(500)	(500)					타-1	번2동 신27-120일대	(500)	(500)							
		타-2	미이9동 신25-32일대	(307)	(307)					타-2	미이9동 신25-32일대	(307)	(307)							
		타-3	번3동 산 27-108일대	(940)	(940)					타-3	번3동 산 27-108일대	(940)	(940)							
	복지 및 기타			186,759							186,759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서

3. “다”지구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2	442,418.4	49,623	2	3,027.77	9,146.68	42		
기	32,272	21,589					32,272	21,589						
반	31,017	20,334					31,017	20,334						
시														
설	1,255	1,255					1,255	1,255						
조경 시설	-	-				4	-	-				4		
휴양 시설	1,243	1,243				4	1,243	1,243				4		
유희 시설	3,696	3,696					3,696	3,696						
운동 시설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4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4		
교양 시설	-	-					-	-						
편익 시설	4,579	4,312					4,579	4,312						
녹지 / 기타	378,845.4						378,845.4							
공원시설물 (법정40%)	$(49,623\text{㎡} / 442,418.4\text{㎡}) \times 100\% = 11.22\%$				$(49,623\text{㎡} / 442,418.4\text{㎡}) \times 100\% = 11.22\%$				$(49,623\text{㎡} / 442,418.4\text{㎡}) \times 100\% = 11.22\%$					
건폐율(10%)	$(3,027.77\text{㎡} / 442,418.4\text{㎡}) \times 100\% = 0.68\%$				$(3,027.77\text{㎡} / 442,418.4\text{㎡}) \times 100\% = 0.68\%$				$(3,027.77\text{㎡} / 442,418.4\text{㎡}) \times 100\% = 0.68\%$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 련시설·노인복지회관·보육 시설·운동시설물 (법정 20%)	$(18,783\text{㎡} / 49,623\text{㎡}) \times 100\% = 37.85\%$				$(18,783\text{㎡} / 49,623\text{㎡}) \times 100\% = 37.85\%$				$(18,783\text{㎡} / 49,623\text{㎡}) \times 100\% = 37.8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번						번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합계			442,418.4	49,623		2	3002.3	9,154.12	42						2	3002.3	9,154.12	42			
	소계			32,235	21,589																	
	도로		전지역	31,017	20,334																	
	광 장	가	4개소		1,255	1,255																
		가-1	번2동 148-383일대		(177)	(177)																
		가-2	번2동 산12일대		(103)	(103)																
		가-3	번2동 산25-2일대		(124)	(124)																
		가-4	미아동 산1-5일대		(379)	(379)																
	휴 게 소	가-5	번2동 산5일대		(472)	(472)																
		①	전지역		-	-																
소계			6개소	1,243	1,243																	
나				1,243	1,243																	
나-1		번2동 산20-1일대		(608)	(608)																	
휴 양 시 설	나-2	미아3동 산25-14일대		(143)	(143)																	
	나-3	번2동 336-2일대		(124)	(124)																	
	나-4	번2동 산25-2일대		(135)	(135)																	
	나-5	번2동 314일대		(126)	(126)																	
	나-6	미아9동 산25-21일대		(107)	(107)																	
	①	전지역		-	-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일반 시설	소 계			21,783	18,783		2	3,027.77	9,146.68	34						2	3,027.77	9,146.68	34	
	체력 단련장	라	미아3동 산25-14일대	621	621															
	다목적 운동장	마	4개소		16,054	13,054			(441)	(441)								(441)	(441)	
		마-1	번2동 산23-1일대		15,000	12,000			(441)	(441)	4	마-1	번2동 산23-1일대	15,000	12,000			(441)	(441)	4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2	번2동 산5일대	266	266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마-3	번2동 산17일대	545	545					
	마-4	번2동 산23일대		243	243						마-4	번2동 산23일대	243	243						
	체력 단련 시설		전지역							30		전지역								30
	배드민턴장	바																		
		바-1																		
바-2																				
바-3																				
바-4																				
바-5																				
종합 운동장	사	번동 산23-1일대		3,688	3,688			1,778.49	7,141.27		사	번동 산23-1일대	3,688	3,688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지하3층 지상2층	1,778.49	7,141.27		
	아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1,249.28	2,005.41		아	번2동 산17-8일대	1,420	1,420	SRC조	지하1층 지상2층	1,249.28	2,005.41		
편의 시설	소 계			4,579	4,312															
	약수터	아	4개소	382	382						자	4개소	382	38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약수터	아-1	번2동 산16일대	(83)	(83)						자-1	번2동 산16일대	(83)	(83)							
		아-2	번2동 산14-1일대	(178)	(178)						자-2	번2동 산14-1일대	(178)	(178)							
		아-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자-3	번2동 산17-1일대	(57)	(57)							
		아-4	번2동 산23-14일대	(64)	(64)						자-4	번2동 산23-14일대	(64)	(64)							
편익시설	주차장	자	6개소	4,197	3,930					차	6개소	4,197	3,930								
		자-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차-1	번2동 317일대	(2,037)	(1,770)								
		자-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차-2	번2동 315-15일대	(282)	(282)								
		자-3	번2동 314일대	(604)	(604)					차-3	번2동 314일대	(604)	(604)								
		자-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차-4	번2동 23-14일대	(368)	(368)								
		자-5	미아3동 산25-38일대	(695)	(695)					차-5	미아3동 산25-38일대	(695)	(695)								
		자-6	미아동 산1-5일대	(211)	(211)				차-6	미아동 산1-5일대	(211)	(211)									
				378,417.4	-						378,417.4	-									
	복지 및 기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4. “라”지구(성북지역)  
가.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83,403	68,206	11	5,183.99	7,033.00	2	183,403	69,693	12	6,512.37	16,114.30	24	증 1,487㎡
기	24,381	24,381					23,628	23,628					감 754㎡
반	21,612	21,612					20,859	20,859					감 754㎡
시	2,769	2,769					2,769	2,769					변경무
설													
조경시설							-	-				16	변경무
휴양시설	2,636	2,636	1	200	200		3,095	3,095	1	200	200		증 459㎡
유희시설	4,760	4,760		650	650	2	4,760	4,760		650	650	2	변경무
운동시설	31,896	31,896	2	3,247.99	3,893.00		31,954	31,954	2	3,247.99	3,893.00	6	증 58㎡
교양시설	1,046	1,046	1	504	1,512		2,769	2,769	2	1,832.38	9,081.30		증 1,723㎡
편익시설	2,767	2,767	3	172	368		2,767	2,767	3	172	368		변경무
관리시설	720	720	4	410	410		720	720	4	410	410		변경무
녹지,기타	115,197						113,711						감 1,487㎡
공원시설율 (법정40%)	$(68,272㎡ / 183,403㎡) \times 100\% = 37.19\%$												
건폐율(10%)	$(5,183.99㎡ / 183,403㎡) \times 100\% = 2.83\%$												
도서관·문화관·청소년 수련시설·노인복지관· 보육시설·운동시설율 (법정 20%)	$(32,942㎡ / 68,272㎡) \times 100\% = 48.30\%$ $(33,000㎡ / 69,693㎡) \times 100\% = 47.3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번						전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합계	소계			183,403	68,206		11	5,183.99	7,033.00	271								12	6,512.37	16,114.30	24	증 1,487㎡		
	도로			24,381	24,381																	감 754㎡		
기반시설	휴게광장	가	상월곡 산1-62	1,135	1,135																			
		나		1,634	1,634																			
	진입광장	나-1	하월곡 산2-1	(385)	(385)																			
		나-2	월곡 산2-87	(705)	(705)																			
		나-3	월곡 산2-87	(472)	(472)																			
소계																				16	신설			
조경시설	육각정자																				1	신설		
	평의자																				15	신설		
	없음																							
	소계			2,636	2,636		1	200	200														증459㎡	
휴양시설	소공원	다	장위 산3-104	1,213	1,213																			
		1	장위 산3-120 장위 산3-101	540	540		1	200	200															
	노인정	라		883	883																			
		라-1	장위 산3-104	(418)	(418)																			
휴양시설	휴게소	라-2	하월곡 산2-1	(210)	(210)																			
		라-3	상월곡 산1-62	(205)	(205)																			
	라-4	하월곡 산2-14	(50)	(50)																				



구분	시설명	변경										변경										비고
		전					후					전					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소계	전망대			2,767	2,767		3	172	368				2,767	2,767		3	172	368		감746㎡		
		4	상월곡 산1-47	545	545		1	64	128		4	상월곡 산1-47	545	545		1	64	128				
주거장	음수대	카		140	140								140	140								
		타			2,082	2,082							2,082	2,082						감587㎡		
		타-1		하월곡 산2-1	(702)	(702)							타-1	하월곡 산2-1	(702)	(702)						
		타-2		하월곡 산2-1	(337)	(337)							타-2	하월곡 산2-1	(337)	(337)					감 741㎡	
		타-3		장위동 산3-92	(326)	(326)							타-3	장위동 산3-92	(326)	(326)						
		타-4		장위동 산3-86	(493)	(493)							타-4	장위동 산3-86	(493)	(493)						
		타-5		월곡 산2-36	(70)	(70)							타-5	월곡 산2-36	(70)	(70)						
		타-6		하월곡 산2-1	(154)	(154)							타-6	하월곡 산2-1	(154)	(154)					증 154㎡	
		5			159	159		2	108	240		5		159	159		2	108	240			
		화장실		5-1		(24)	(24)		1	(24)	(24)		5-1		(24)	(24)		1	(24)	(24)		
5-2				하월곡 산2-124	(135)	(135)		1	(84)	(216)		5-2		(135)	(135)		1	(84)	(216)			
관리사무실		6		720	720		4	410	410		6		720	720		4	410	410				
		6-1		하월곡 산2-1	(540)	(540)		1	(264)	(264)		6-1		(540)	(540)		1	(264)	(264)			
		6-2		상월곡 산1-41	(108)	(108)		1	(74)	(74)		6-2		(108)	(108)		1	(74)	(74)			
		6-3		하월곡 산2-14	(36)	(36)		1	(36)	(36)		6-3		(36)	(36)		1	(36)	(36)			
창고	창고	7		(36)	(36)		1	(36)	(36)		7		(36)	(36)		1	(36)	(36)				
				115,197									113,711								감1,487㎡	

다. 도로조서  
“가”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14,527	37,095 (4,685)				
당초	대로	3류	1	25	445	(3,325)	도시계획도	8-221, 공원경계	83,공원경계	
당초	중로	3류	3	12	175	(1,360)	도시계획도	바-4	광장 가-9	
당초	소계				2,878	13,834				
당초	소로	3	1	5	456	1441	연결로	광장 가-1	산책로 75	
당초		3	2	5	499	2490	연결로	소로 3-3	광장 가-6	
당초		3	3	6	135	924	연결로	녹지	광장 가-1	
당초		3	4	4	94	495	연결로	야생초화원	소로 3-3	
당초		3	5	4	9	37	연결로	주차장 버	소로 3-4	
당초		3	6	4	45	648	연결로	소로 3-2	소로 3-3	
당초		3	7	4	37	152	연결로	소로 3-6	미술관	
당초		3	8	5	494	2502	연결로	소로 3-14	소로 3-3	
당초		3	9	3	81	241	연결로	미술관	소로 3-11	
당초		3	10	3.6	48	116	연결로	소로 3-8	소로 3-11	
당초		3	11	4.5	51	217	연결로	소로 3-9, 10	소로 3-2	
당초		3	12	4	247	982	연결로	휴게소 가-5	휴게소 가-2	
당초		3	13	4	223	878	연결로	광장 가-6	소로 3-1	
당초		3	14	4.5	91	424	진입로	광장 가-6	소로 3-8	
당초		3	15	6	368	2287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어	
당초	소 계				11,029	18,576				
당초	산책로		1	2.5	270	53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4	
당초			2	2.9	29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	
당초			3	1.5	127	186	산책로	산책로 2	산책로 10	
당초			4	1.5	157	228	산책로	산책로 3	운동시설 너-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5	1.5	3	7	산책로	산책로 4	파고라	
당초			6	1.5	43	60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2	
당초			7	1.5	13	32	산책로	산책로 4	운동시설 너-4	
당초			8	1.2	32	41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9	1.2	21	54	산책로	산책로 4	산책로 10	
당초			10	1.5	255	387	산책로	산책로 12	전망대	
당초			11	1.5	22	33	산책로	산책로 12	운동시설 너-4	
당초			12	2	289	508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5	
당초			13	1	78	97	산책로	휴게시설 자-8	운동시설 너-6	
당초			14	1.3	54	75	산책로	운동시설 너-6	산책로 15	
당초			15	1.5	110	170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시설 자-6	
당초			16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7	
당초			17	1.5	201	344	산책로	산책로 15	부지경계	
당초	산책로		18	2	56	111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17	
당초			19	1.5	19	38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7	
당초			20	1.2	21	29	산책로	산책로 17	운동시설 너-5	
당초			21	1.2	115	13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2	1.2	38	44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3	2	4	9	산책로	산책로 22	운동시설 너-5	
당초			24	1.2	24	29	산책로	산책로 17	휴게소 자-6	
당초			25	1.5	20	30	산책로	산책로 10	휴게소 자-5	
당초			26	1.5	230	344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12	
당초			27	1.5	107	160	산책로	광장 가-7	산책로 134	
당초			2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27	산책로 134	
당초			29	1.5	16	29	산책로	산책로 134	산책로 30	
당초			30	1.5	25	41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29	
당초			31	1.5	2	3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32	2	29	48	산책로	산책로 34	부지경계	
당초			33	1.5	7	11	산책로	녹지	산책로 34	
당초			34	1.5	185	265	산책로	데크쉼터 카-2	산책로 31	
당초			35	1.5	172	254	산책로	저류지	소로 3-12	
당초			36	1.5	27	37	산책로	저류지	광장 가-3	
당초			37	2	48	99	산책로	광장 가-3	데크쉼터 카-4	
당초			38	1.5	49	7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39	1.5	87	129	산책로	데크쉼터 카-4	데크쉼터 카-5	
당초			40	1.5	100	150	산책로	소로 3-12	산책로 35	
당초			41	1.2	45	90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2	1.2	44	53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3	1.5	18	28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44	2	16	32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5	
당초	산책로		45	2.8	31	89	산책로	산책로 43, 44	소로 3-1	
당초			46	1.5	21	32	산책로	산책로 48	산책로 45	
당초			47	1.5	33	69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 46	
당초			48	2	57	118	산책로	산책로 49	소로 3-1	
당초			49	2	46	92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0	2	52	1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51	2	69	111	산책로	광장 가-1	방문자센터	
당초			52	2	8	15	산책로	산책로 53	소로 3-3	
당초			53	2	49	10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54	2.5	15	37	산책로	소로 3-8	구한옥	
당초			55	1.2	25	28	산책로	구한옥	광장 가-2	
당초			56	2	33	66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6	
당초			57	1.5	93	141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9	
당초			58	1.5	24	34	산책로	산책로 57	수변쉼터 타-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산책로		59	1.5	16	25	산책로	산책로 57	산책로 58	
당초			60	2	5	9	산책로	소로 3-8	광장 가-9	
당초			61	1.5	40	67	산책로	산책로 57	월영연못	
당초			62	2.3	6	15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3	
당초			63	1.5	118	176	산책로	광장 가-9	소로 3-8	
당초			64	1.5	14	20	산책로	산책로 63	월영연못	
당초			65	1.5	12	18	산책로	월영연못	월영연못	
당초			66	2	7	15	산책로	소로 3-6	월영연못	
당초			67	1.5	24	39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소로 3-6	
당초			68	1.5	34	51	산책로	수변쉼터 타-4	수변쉼터 타-5	
당초			69	2	17	33	산책로	수변쉼터 타-2	수변쉼터 타-1	
당초			70	1.8	6	10	산책로	소로 3-8	산책로 69	
당초			71	2.4	4	11	산책로	소로 3-8	수변쉼터 타-1	
당초			72	1.2	39	46	산책로	소로 3-10	창포원	
당초			73	1.2	40	48	산책로	창포원	산책로 74	
당초			74	2	52	106	산책로	창포원	소로 3-11	
당초			75	2	198	457	산책로	소로 3-13	광장 가-4	
당초			76	2.6	5	13	산책로	소로 3-11	소로 3-2	
당초			77	1.5	15	36	산책로	소로 3-2	월영연못	
당초			78	2	19	40	산책로	산책로 35	데크쉼터 카-3	
당초			79	1.5	72	107	산책로	문화센터	광장 가-6	
당초			80	1.5	118	177	산책로	광장 가-8	산책로 79	
당초			81	1.5	80	122	산책로	광장 가-8	전망대	
당초			82	1.5	7	10	산책로	광장 가-8	문화센터	
당초			83	2	27	54	산책로	소로 3-14	광장 가-6	
당초			84	2	39	78	산책로	소로 3-14	데크쉼터 카-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산책로		85	1.5	32	45	산책로	산책로 86	어린이놀이터 파-1	
당초			86	1.5	67	100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87	
당초			87	2	362	656	산책로	부지경계	휴게소 자-1	
당초			88	2	35	73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0	
당초			89	1.5	40	57	산책로	산책로 90	다목적 운동장 거-2	
당초			90	1.5	223	335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87	
당초			91	1.5	87	129	산책로	산책로 90	산지	
당초			92	2.5	305	61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99	
당초			93	1.5	160	243	산책로	산책로 92	중로 3-1	
당초			94	2	199	401	산책로	산책로 96	산책로 92	
당초			95	1.5	63	95	산책로	산책로 94	산책로 99	
당초			96	2	180	369	산책로	산책로 97	부지경계	
당초			97	2	72	164	산책로	녹지	산책로 99	
당초			98	1.5	38	57	산책로	산책로 98	산책로 97	
당초			99	2	548	1096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120	
당초			100	1.5	208	310	산책로	산책로 87	산책로 98	
당초			101	1.3	191	272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87	
당초			102	1.5	245	363	산 책 로	산책로 87	휴게소 자-3	
당초			103	2	53	99	산 책 로	휴게소 자-4	산책로 70	
당초			104	1.5	85	127	산 책 로	휴게소 자-4	운동시설 너-8	
당초			105	1.2	35	40	산 책 로	산책로 104	운동시설 너-8	
당초		106	1.2	55	66	산 책 로	운동시설 너-8	산책로 108		
당초		107	1.2	20	28	산 책 로	산책로 106	운동시설 너-8		
당초		108	1.5	120	173	산 책 로	휴게소 자-2	운동시설 너-1		
당초		109	2	332	567	산 책 로	산책로 108	녹지		
당초		110	1.5	173	260	산 책 로	휴게소 자-2	산책로 99		
당초		111	1.5	25	38	산 책 로	운동시설 너-1	산책로 10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12	1.5	37	60	산책로	산책로 111	산책로 109	
당초			113	2	73	123	산책로	산책로 109	운동시설 너-1	
당초			114	1.2	26	31	산책로	산책로 115	산책로 113	
당초			115	1.5	43	65	산책로	산책로 113	운동시설 너-2	
당초			116	1	7	10	산책로	운동시설 너-2	산책로 117	
당초			117	1	25	25	산책로	녹지	산책로 109	
당초			118	1.2	99	115	산책로	산책로 109	산책로 120	
당초			119	1.2	143	173	산책로	산책로 121	산책로 118	
당초			120	1.8	270	383	산책로	녹지	산책로 121	
당초			121	1	48	48	산책로	산책로 119	산책로 109	
당초			122	1.5	104	152	산책로	산책로 120	녹지	
당초			123	1.2	132	17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4	1.5	75	111	산책로	산책로 123	데크쉼터 카-7	
당초			125	1.5	24	46	산책로	산책로 123	산책로 124	
당초			126	1.2	15	19	산책로	산책로 122	산책로 121	
당초			127	1	40	40	산책로	녹지	부지경계	
당초			128	2	126	256	산책로	산책로 99	운동시설 너-7	
당초			129	1.5	38	67	산책로	산책로 128	부지경계	
당초			130	1.5	26	38	산책로	산책로 99	부지경계	
당초			131	2	77	167	산책로	산책로 99	산책로 133	
당초			132	2	186	407	산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133	2	113	227	산책로	산책로 132	산책로 96	
당초			134	2.3	341	7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 18	
당초			135	2	166	316	산책로	소로 3-8	소로 3-8	

다. 도로조서  
“나”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5,089	9,211 (14,205)				
당초		소 계			605	(11,828)				
당초	종로	1류	1	20	571	(11,420)	도시계획도	습지생태원 차	주차장 타-2	
당초		3류	1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주차장 타-3	
당초		소 계			827	1,500 (2,377)				
당초	소로	3류	1	6	250	1,500	시설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2	
당초		3류	2	6	577	(2,377)	도시계획도	주차장 타-3	어린이놀이터 다-1	
당초		소 계			3,657	7,711				
당초	산책로		1	2	214	428	산책로	번2동 산27-121	어린이놀이터 다-3	
당초			2	2	129	2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	
당초			3	4	150	600	산책로	광장 가-3	어린이놀이터 다-3	
당초			4	2.3	275	632	산책로	광장 가-3	번2동 산27-108	
당초			5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4	
당초			6	2	78	156	산책로	주차장 타-4	휴게소 나-2	
당초			7	2	23	46	산책로	광장 가-4	휴게소 다-2	
당초			8	2	351	702	산책로	휴게소 나-2	산책로9	
당초			9	2	264	528	산책로	광장 가-3	체력단련장 라-1	
당초			10	2	79	158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1	산책로9	
당초			11	2	216	432	산책로	보태닉가든 자	산책로9	
당초			12	2	70	140	산책로	산책로1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3	2	43	86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9	
당초			14	2	55	110	산책로	소로 3-2	체력단련장 라-1	
당초			15	2	193	386	산책로	산책로21	보태닉가든 자	
당초			16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7	1.5	24	36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산책로18	
당초			18	1.5	86	129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9	2~2.5	39	88	산책로	중로 1-1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20	2	321	64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4	산책로18	
당초			21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3	
당초			22	2	42	8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3	2	21	42	산책로	산책로26	체력단련장 라-1	
당초			24	2	22	44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6	
당초			25	2	143	286	산책로	관목원 사	산책로26	
당초			26	2	133	266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1	
당초			27	2	18	36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9	
당초			28	2	87	174	산책로	소로 3-2	산책로29	
당초			29	2	130	260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5	
당초			30	4	80	318	산책로	습지생태원 차	보태늪가든 자	
당초			31	1	73	73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번2동 산27-108	
당초			32	1	13	13	산책로	광장 가-1	번2동 산27-108	

다. 도로조서  
“다”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544	20,334 (10,683)				
당초		소 계			659	(8,118)				
당초	중로	3류	1	12~15	625	(7,710)	도시계획도	산1-4,공원경계	산13-1,공원경계	
당초		3류	2	12	34	(408)	도시계획도	광장 가-1	산책로57	
당초		소 계			777	4,376 (2,565)				
당초	소로	1류	1	10	190	1,900	진 입 로	번2동 637-7	번2동 산25-8	
당초		1류	2	11	20	220	진 입 로	소로 1-1	다목적운동장 마-1	
당초		2류	1	9	285	(2,565)	도시계획도	중로 3-2종점	산책로1종점	
당초		2류	2	8	282	2,256	시설연결로	소로 3-1종점	중로 3-2시점	
당초		소 계			8,108	15,958				
당초	산책로		1	2	619	1,238	산책로	광장 가-5	미아3동 산13-6	
당초			2	2	90	180	산책로	광장 가-5	산책로1	
당초			3	2	122	244	산책로	광장 가-5	부지경계	
당초			4	2	37	74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2	산책로5	
당초			5	2	144	28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6	2	155	31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7	2	300	60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6	
당초			8	1.5	57	86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7	
당초			9	2	41	82	산책로	광장 가-2	산책로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10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당초			11	2	182	36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12	
당초			12	2	545	1,0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13	2	208	416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2	
당초			14	2	72	144	산책로	산책로13	배드민턴장 바-3	
당초			15	2	163	326	산책로	산책로31	배드민턴장 바-3	
당초			16	2	58	116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7	2	52	104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15	
당초			18	2	203	406	산책로	산책로31	약수터 아-3	
당초			19	2	169	318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20	
당초			20	2	520	1,040	산책로	산책로15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1	2	63	126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22	
당초			22	2	158	31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12	
당초	산책로		23	2	107	214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1	
당초			24	2	36	72	산책로	산책로23	배드민턴장 바-2	
당초			25	2	76	152	산책로	산책로20	산책로23	
당초			26	2	61	122	산책로	산책로20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7	2	292	584	산책로	산책로29	산책로20	
당초			28	2	122	244	산책로	배드민턴장 바-4	어린이놀이터 다-2	
당초			29	2	335	670	산책로	산책로18	산책로37	
당초			30	2	87	17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당초			31	2	14	28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32시점	
당초			32	2	47	94	산책로	산책로31	산책로29	
당초			33	2	18	36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0	
당초			34	2	73	146	산책로	휴게소 나-3	산책로35	
당초			35	2	169	338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7	
당초			36	2	150	30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0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37	2	454	908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28	
당초			38	2	40	80	산책로	산책로40	산책로37	
당초			39	2	38	76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40	
당초			40	2	549	1,098	산책로	종합체육관(사)	산책로54	
당초			41	1.5	96	144	산책로	소로 1-1	광장 가-4	
당초			42	1.5	28	42	산책로	소로 1-1	휴게소 나-4	
당초			43	2	115	230	산책로	휴게소 나-5	어린이놀이터 다-5	
당초			44	1.5	143	215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5	
당초			45	1.5	119	179	산책로	산책로40	부지경계	
당초			46	1.5	14	21	산책로	산책로45	다목적운동장 마-4	
당초			47	1.5	20	3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마-4	부지경계	
당초			48	2	50	100	산책로	산책로49	산책로40	
당초			49	1.5	95	143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당초			50	1.5	19	29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48	
당초			51	2	45	90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52	
당초			52	2	99	198	산책로	산책로48	산책로53	
당초			53	2	36	72	산책로	산책로54	어린이놀이터 다-4	
당초			54	2	96	192	산책로	산책로37	휴게소 나-2	
당초			55	2	63	126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다-2	체력단련장 라-1	
당초			56	2	14	28	산책로	산책로55	휴게소 나-1	
당초		57	2.3	186	427	산책로	중로 3-2	미아3동 산25-38		
당초		58	2	81	162	산책로	미아3동 산25-38	휴게소 나-6		

다. 도로조서  
“라” 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820)	21,612				
변경					(4,030)	20,859				
당초	중로	소 계		15	(28)	(420)				
당초		2	1	15	28	420	간선도로	부지서측	부지동측	
당초	소 계				2,341	17,936				
변경					2,231	16,536				
당초	소로	1	3	10	276	2,760	주진입로	부지남서측하단	주차장	
당초		1	4	10	80	800	주진입로	소1-3	부지남측하단	
당초		1	5	10	120	1,200	주진입로	부지남측하단	부지남측경계	
당초		1	6	10	156	1,560	주진입로	부지남측하단	주차장	
당초		1	9	10	490	4,900	주진입로	소3-8	주차장	
당초		1	10	10	140	1,400	주진입로	소1-9	축구장	
변경										폐지
당초		3	2	6	200	1,200	주진입로	부지동측경계	소1-3	
당초		3	7	6	50	300	주진입로	부지북측경계	부지서측	
당초		3	8	6	90	540	주진입로	주차장	부지동측	
당초		3	9	6	10	60	주진입로	부지서측경계	소3-18	
당초		3	10	6	50	300	주진입로	소3-9	월곡초등학교앞	
당초		3	11	6	40	240	주진입로	소3-10	놀이터앞	
당초		3	13	4	335	1,340	주진입로	주차장	소3-26	
당초		3	14	4	234	936	주진입로	소3-8	전망대	
당초		3	15	4	50	200	주진입로	소3-32	휴게광장	
당초	3	16	4	50	200	주진입로	부지동남측경계	소3-1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소 계			1,486	3,386				
변경					1,771	3,902.5				
당초	산책로	3	17	3	140	420	산책로	소공원	중2-1	
당초		3	18	3	170	510	산책로	중2-1	소3-1	
당초		3	19	2	55	110	산책로	소3-13	주차장	
당초		3	20	2	60	120	산책로	소3-13	관리사무소	
당초		3	21	2	70	140	산책로	소3-3	테니스장, 휴게실	
당초		3	22	2	35	70	산책로	소1-13	배드민턴장	
당초		3	23	3	82	246	산책로	소3-17	소3-17	
당초		3	24	3	22	66	산책로	소1-6	진입광장	
당초		3	25	2	110	220	산책로	주차장	소3-26종점	
당초		3	26	2	115	230	산책로	소3-14	소3-13	
당초		3	27	2	122	244	산책로	소3-13	소3-26	
당초		3	28	2	65	130	산책로	소3-27	소3-29	
당초		3	29	2	210	420	산책로	전망대	휴게광장	
신규		3	30	1.5	72	107.5	산책로	소3-29		
당초		3	31	2	55	110	산책로	소3-29	소3-32	
당초		3	32	2	110	220	산책로	소1-10	전망대	
신규		3	33	1.0	20	20	산책로			
신규		3	34	2	113	225	산책로			
신규		3	35	1.5	67	100	산책로			
신규		3	36	1.5	58	87	산책로			
신규	3	37	1.5	71	107	산책로				

◆ 강서구공고 제2013-13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7-29호(1997. 2. 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 (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평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3.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아래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사업의 명칭 : 평고개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29-4번지

다. 사업의 규모 : 480m<sup>2</sup>

라.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사무수임자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5.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첨부

아. 열람장소 :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3층 공원녹지과(☎2600-4183)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합계	1필지		480	480							
1	방화동 산129-4	임야	480	480	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 408동 1403호	권경희				
					1/3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신월길 32-11	권명희				
					1/3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충효로 190-5	권광희				

◆ 구로구공고 제2013-1169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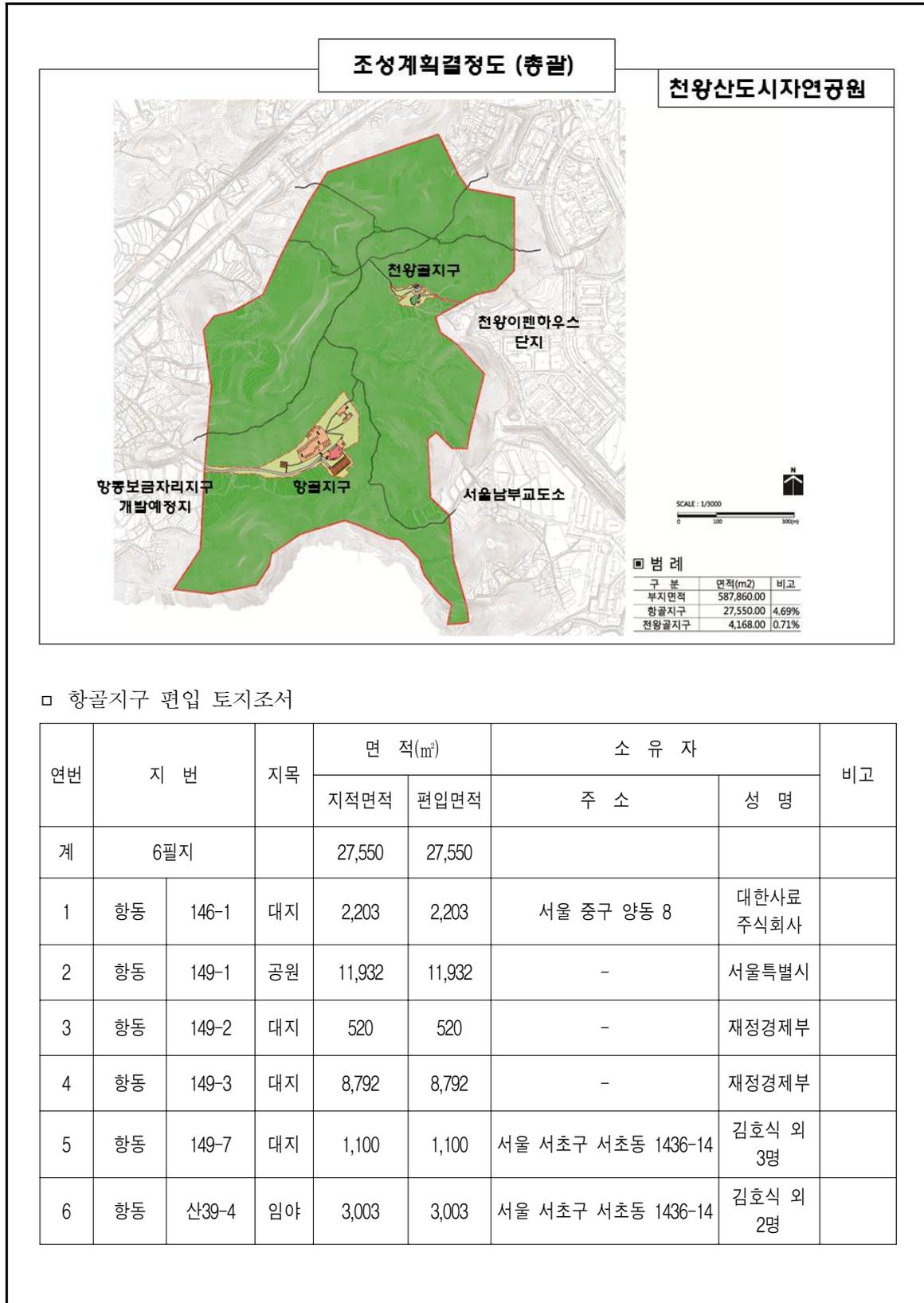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된 구로구 천왕동 산25-1번지 일대 천왕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하고자, 계획(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4일  
구 로 구 청 장

- 가. 공 원 명 : 천왕산도시자연공원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산25-1번지 일대
- 다. 면 적 : 578,860㎡
- 라. 조성계획(안)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천왕산 도시자연공원	구로구 천왕동 산25-1번지 외 11필지	578,860	-	1977. 7. 9.	

- 마. 주요 시설내용
  - 항골 지구(27,550.00㎡)
    - 휴양시설 : 야외캠핑장 4,493.38㎡
    - 전망쉼터 : 1,001.55㎡
    - 정자쉼터 : 325.82㎡
    - 휴게쉼터 : 247.12㎡
    - 유희시설 : 숲속놀이터 884.69㎡
    - 편익시설 : 세면장터 273.00㎡, 주차장 1,200.00㎡
  - 천왕골 지구(4,168.00㎡)
    - 조경시설 : 잔디광장 340.26㎡
    - 휴양시설 : 휴게쉼터 442.94㎡
    - 전망쉼터 : 92.24㎡
    - 교양시설 : 숲속교실 190.65㎡
- 바.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사. 열람기간 : 열람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아.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860-2396)



□ 천왕골지구 편입 토지조서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계	3필지			125,638	4,168			
1	천왕동	173-1	대지	2,440	2,440	-	서울특별시	
2	천왕동	173	답	1,488	1,488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1	함정옥	
3	천왕동	산25-1	임야	121,710	240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	이건우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3-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 3. 점 용 목 적 : 반포수난구조대 신설 관련 육상공사 현장사무실(칸막이식)
- 4. 점용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5. 점 용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16-3
- 6. 점 용 면 적 : 32㎡
- 7. 점 용 기 간 : 2013.11.8 ~ 2013.12.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3-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
- 2. 점용자 성명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 3. 점 용 목 적 : 두모교 보수공사 공정관리 및 안전시공을 위한 현장사무실, 창고, 자재적치장
- 4. 점용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35
- 5. 점 용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90-6
- 6. 점 용 면 적 : 315㎡
- 7. 점 용 기 간 : 2013.11.11 ~ 2014.5.29

**사업소공고**

◆ 마포소방서공고 제2013-6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마 포 소 방 서 장

○ 등 록 대 상

연번	등록번호	업종 (분야)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 재 지	등록일자
1	제마포 2013-5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도합기공 주식회사 (110111-2*****)	한 기 돈 ('56.12.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15, 5층 (서교동, 아이오빌딩)	2013. 11.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701-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3-17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구 로 소 방 서 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법인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 시설설계업 (전기)	제구로2013-15호 (2013.11.06)	(주)한국선급엔지니어링 (110111-5067958)	박 기 진 (1950.10.1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구로동 코오롱 싸이언스밸리2차 1212호)	02-2621 -897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3-18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구로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 시설공사업 (전기)	제구로2013-16호 (2013.11.08)	삼우방재(주) (110111-4649343)	김은희 (1972.09.19)	서울 구로구 경인로 54길 4, 비동 에이4층 414호 (구로동, 구로유통상가)	02-3674 -011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13-23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등록일자
제영등포 2013-4호	소방시설 관리업	(주)지어이앤씨	홍천화 (55.1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 디지털타워 402호 (영등포동 8가) (☎02-2655-9301)	2013. 11.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02-2678-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3-21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초 2013-16호	일반소방 시설설계업 (전기분야)	주식회사 반석기술단 (110111-5259571)	이상일 (71.07.01)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10길 18-4, 301(양재동,영진빌딩)	2013. 11.12.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13-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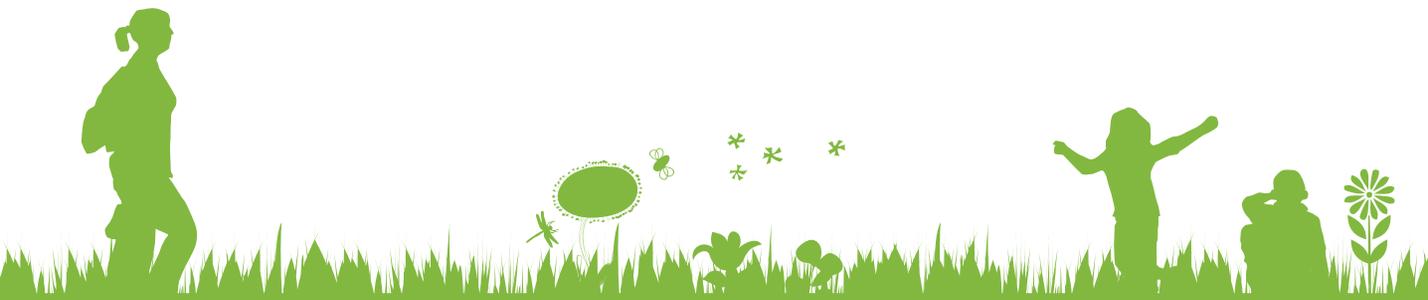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송 파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울송파 2013-01호	소방시설관리업	한성소방	이승현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28-22(방이동,지하)	2013.11.11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431-4109)으로 연락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